

核問題 關聯 南北高位級會談 代表接觸

主要爭點에 대한 雙方 主張 比較表

— 『韓半島 非核化共同宣言』 및 『核統制共同委 構成·運營合意書』 採擇過程 中心으로 —

1993. 6.

統 一 院

(南北會談事務局)

- 본 책자는 1991년 12월 26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3차례에 걸쳐 진행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과 1992년 2월 19일부터 동년 3월 14일까지 7차례에 걸쳐 진행된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시 제기된 주요쟁점에 대한 쌍방 발언내용을 회의록에서 발췌하여 대비한 것임.
- 쌍방 발언아래 괄호내의 표기는 출처를 표시한 것으로 앞에 부분은 회의종류와 착수를, 뒤의 숫자는 회의록 페이지를 표시한 것임.

〈범 례〉

(비핵화 2차-p.20) :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을 위한 제2차 대표 접촉 회의록 20페이지

(핵통위 3차-pp.20~22) :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을 위한 제3차 대표접촉 회의록 20~22페이지

목 차

I.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과정

1. 기본문제	3
가. 『비핵화』, 『비핵지대화』 문제	3
나. 남북 시범사찰문제	11
2. 『공동선언(안)』 문제	14
가. 핵무기의 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	14
나.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	22
다. 비핵화 검증문제(대상, 절차, 방법)	23
라. 발효문제	47
마. 수정·보충문제	61
3. 기 타.....	63
가. 북측의 국제핵사찰 수용문제	63
나. 핵전쟁가상 전쟁연습 중지문제	78
다. 화학·생물무기 제거문제	83

II.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과정

1. 기본문제	87
가. 『비핵화공동선언』 해석문제	87
나. 시범사찰문제	105
2. 『합의서(안)』 내용문제	110
가. 서 문	110
나. 구성문제	112
다. 기능문제	119
라. 운영문제	152
마. 발효절차문제	164
3. 기 타	170
가. 사찰규정채택 시한부여문제	170
나. 공동발표문제	184

※ 부록

1.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2.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3.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관련 공동발표문
4. 『핵통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 관련 공동발표문

I.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과정

1. 기본문제

가. 「비핵화」, 「비핵지대화」 문제

우 리 측	북 측
<p>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이같은 우리측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해 귀측은 오직 「비핵지대화 공동선언」 주장만으로 일관하면서 핵위협 제거 운운을 이유로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비현실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p> <p>나는 귀측의 「비핵지대화」 주장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측의 입장을 밝혀두고자 함.</p> <p>우선 귀측 제안 제1조는 우리측 「비핵화 공동선언」 제1항 『남과 북은 핵 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하며, 핵무기를 제조, 보유, 저장, 배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에 모두 포괄되어 있음.</p> <p>귀측 제안 제2조는 지난 9월 27일 부시 미국대통령의 해외 전술핵무기 전면철수 선언에서 전함, 잠수함, 항공기 적재 핵무기 등을 모두 철수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이미 근원적으로 해소된 문제임.</p> <p>다시 말하면 한반도 지역을 드나드는 미국의 함정과 항공기들에는 핵이 적재되지 않게 되었으며, 따라서 귀측이 핵적재 비행기·함선의 통과, 착륙, 기항 문제를 거론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임.</p> <p>귀측 제안 제3조 중 핵우산 문제는 지난 1968년 핵무기비확산조약 체결과정에서 핵보유국이 동 조약에 가입한 핵비보유국에게 제공키로 한 합법적인 국제안전보장장치의 일환인 동시에, 1968년 6월 유엔</p>	<p>조선반도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초 안)</p> <p>북과 남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아세아와 세계의 안전에 이바지하며 나라의 평화통일에 유리한 전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p> <p>제1조 북과 남은 핵무기를 시험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고 소유하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는다.</p> <p>제2조 북과 남은 조선반도와 그 령내에서 핵무기의 배비를 금지하며 핵무기를 적재했거나 적재했을 수 있는 비행기와 함선들의 령공 또는 령해 통과, 착륙 및 기항을 금지한다.</p> <p>제3조 북과 남은 자기 지역에 핵무기의 전개, 저장을 허용하거나 《핵우산》의 제공을 받는 그 어떤 협약도 다른 나라와 체결하지 않는다.</p> <p>제4조 북과 남은 조선반도와 그 령내에서 핵무기와 핵장비가 동원되거나 핵전쟁을 가정한 일체 군사연습을 하지 않는다.</p> <p>제5조 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남쪽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와 미군을 철수시키고 핵기지를 철폐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p>

우 리 측	북 측
<p>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55호를 통해서도 그 근거가 확립된 것임.</p> <p>귀측은 동 제안 제4조에서 「핵전쟁을 가상한 일체의 군사연습을 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측은 핵무기와 핵장비를 동원하는 군사연습을 실시한 사례가 없으며 앞으로도 실시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 둠.</p> <p>귀측 제안 제5조와 제6조 중 미국의 핵무기 철수문제는 앞서 말한 우리측의 비핵화 정책 및 핵부재 선언으로 이미 그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졌고, 핵기지 철폐와 확인문제는 귀측이 핵무기 존재여부 확인을 위한 시범사찰에 동의해 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며,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우리와 미국간의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것으로서 귀측이 관여할 문제가 아닌 것임.</p> <p>귀측 제안 제7조 대외적 조치문제는 1978년과 1982년의 유엔 군축 특별총회에서 비핵국가에 대한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이 공개 천명된 바 있기 때문에 귀측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핵위협을 가하려 하지 않는다면 주변 핵보유국의 핵우산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임.</p> <p>이상에서 나는 귀측의 「비핵지대화 공동선언」안의 비현실성과 무의미함을 각 조항별로 설명드렸음.</p> <p>이로써 귀측의 「비핵지대화 공동선언」안은 어느 조항도 핵문제</p>	<p>제6조 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남쪽에 있는 미국핵무기의 전면적이고도 완전한 철수와 핵기지의 철폐를 공동으로 확인하고 국제조약상 요구에 기초한 핵 동시사찰의무를 리행하며 조선반도와 비핵지대화를 내외에 공포한다.</p> <p>제7조 북과 남은 미국과 조선반도주변의 핵무기소유국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핵위협을 하지 않으며 조선반도비핵지대의 지위를 존중할 데 대한 대외적조치를 취한다.</p> <p>제8조 북과 남은 이 선언의 리행을 위한 공동기구를 선언발표한후 빠른 시일안에 내온다.</p> <p>제9조 이 선언은 북과 남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 <p>※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91.12.11, 서울)에서 북측제시</p>

우 리 측	북 측
<p>해결을 뒤로 미루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게 되었음.</p> <p>(비핵화 1차—pp.23~25)</p> <p>우리측의 「한반도 비핵화 등에 관한 공동선언」은 이미 제5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제시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상기시키고자 함.</p> <p>한반도의 비핵화 등에 관한 공동선언(안)</p> <p>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이 땅에서 화학·생물 무기를 제거함으로써 조국의 평화통일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며, 『핵무기의 확산방지에 관한 조약』을 준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여 자기측 지역내에서 존재하는 모든 핵관련 시설과 물질에 대한 전면적인 국제조사를 받을 것을 수락하면서, 기존 국제조약상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하며 핵무기를 제조, 보유, 저장, 배비, 사용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p>「비핵화 등에 관한 공동선언」을 귀측에서 내놓은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우선 공동선언에 대해서, 오늘 대표접촉인데, 그래도 이 문제를 조선반도를 비핵지대화하고 이렇게 하자면 또 비핵화하자면 옹당히 타결책을 찾기 위한 이와같은 각도에서 문제를 연구하고, 서로 절충하고, 양해하고, 타협하고 이런 입장에 서야지, 이미 5차고 위급회담에서 들고 나왔던 것 한 자도 안고치고 고스란히 이렇게 들고 나오면 무엇이 해결되겠는가?</p> <p>(비핵화 1차—p.31)</p> <p>귀측에서 내려간 중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하게 되면 이것은 모순된 주장을 한 것이 있음. 예를 들면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가 하면 핵무기를 적재한 비행기, 함선들이 영공, 영해 통과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기항, 착륙을 금지한다고 우리 조항으로 내놓은 것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이쪽에 지난 시기도 그렇고 앞으로도 핵무기를 실은 비행기가 다니지 않을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넣으나마나함. 우리가 사실이야 그럴 입장이라면 조항을 넣어도 됨.</p>

우 리 측	북 측
<p>3. 남과 북은 화학·생물 무기의 전면적 제거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이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준수한다.</p> <p>4. 남과 북은 쌍방이 보유하는 핵시설과 물질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과는 별도로 상기 조항들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남과 북의 모든 군사시설과 민간시설 그리고 물질과 장소에 대하여 쌍방이 합의하는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하며 사찰의 대상은 상대측에서 선정한다.</p> <p>5. 남과 북은 4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쌍방이 합의하는 별도의 기구에서 협의·결정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1차—pp.19~20)</p>	<p>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겠지만 귀측이 너무도 고집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입장 밝히자 이것임. 그러나 이것은 모순된 주장임. 이것만은 여기서 명백히 하고 넘어간단 말임. 그럴 일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째서 우리 선언초안에다가 넣지 못하겠느냐. 이런 모순된 말씀을 하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넘어가는 것임.</p> <p>마찬가지 핵우산에 대한 것, 이 문제도 모호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입장이 이제 나가기 때문에 더 논평하지 않겠음.</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1차—pp.34~35)</p> <p>제5차북남고위급회담에서 우리는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문건으로서 우리는 9장으로 된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초안」을 내놓았고 또 귀측에서는 5개항으로 된 「조선반도의 비핵화 등에 관한 공동선언초안」을 제기했음.</p> <p>이 두개안을 대비해 놓고 보면 우리 안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철저히, 그리고 완전무결하게 실현하자는 것이고, 귀측의 안은 우리 제안의 한 부분을 반영해서 조선반도를 비핵지대화 하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음.</p>

우 리 측	북 측
	<p>우리는 우리측이 이미 제기한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 초안」이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귀측의 제안과 또 귀측이 지금까지 제기한 의견들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새로운 안을 내놓기로 하였음.</p> <p>우리의 새로운 안은 쌍방사이에 대처하고 있는 기본 차이점을 없애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음. 우리의 새로운 안은 우선 선언 제목을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으로 하자는 것임.</p> <p>원래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철저히 없애자면 비핵화를 할 것이 아니라 비핵지대화 하여야 하나 우리는 핵문제 해결에서 돌파구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 비핵화라고 표기하도록 수정을 가했음.</p> <p>그리고 우리 선언초안 중에서 귀측이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는 핵우산과 관련한 문제, 그리고 핵무기를 적재한 비행기, 함선들의 영공·영해통과, 착륙·기항문제와 관련한 조항들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내용들을 삭제했거나 수정을 가했음.</p> <p>이것은 우리에게 있어 중대한 양보이고, 핵문제를 어떻게 하든 해결해 보려는 우리의 진지하고 성의 있는 입장을 그대로 보여준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1차—pp.38~39)</p>

우 리 측	북 측
<p>귀측이 제시한 안을 고려해서 조정한 우리측의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함.</p> <p style="text-align: center;">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안)</p> <p>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조국의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과 북은 핵무기를 시험, 제조, 보유, 배비, 사용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는 모든 군사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하여 쌍방이 합의하는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 발효후 1개월 이내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남과 북은 「핵무기의 확산방지에 관한 조약」을 준수하고 북은 조속한 시일내에 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여 모든 핵관련 시설과 물질에 대한 전면적인 국제사찰을 받는다. 7.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2차-pp.19~20)</p>	<p style="text-align: center;">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초안)</p> <p>북과 남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조선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북과 남은 핵무기의 시험, 생산, 반입,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않는다. 2. 북과 남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북과 남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 4. 북과 남은 조선반도 남쪽에 있는 미국 핵무기의 전면적이고도 완전한 철수와 핵기지철폐를 공동으로 확인하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한다. 5. 북과 남은 핵공격을 가상한 일체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을 하지 않는다. 6. 북과 남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이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빠른 시일안에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7. 이 공동선언은 북과 남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1차-p.41)</p>

우 리 측	북 측
<p>우리의 비핵화 공동선언안이 지난번 5차회담때 낸 것과 왜 같은 것을 갖고 나왔느냐 하는 얘긴데, 그것은 귀측이 과거에 제기한 비핵지대화안에 대한 대응으로써 우리가 비핵화 공동선언안을 내놨는데, 거기에 대한 귀측의 반응이 여태 없었음. 오늘 처음 나온 것임.</p> <p>알겠습니까? 우리의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해서 지난 5차회담에서 귀측의 반응이 전혀 없었음. 오늘 처음 나온 것임. 그렇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우리가 반복 강조하는 썸이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1차-p.47)</p> <p>우선 귀측이 제시한 안과 관련해서 저희들의 평가를 잠깐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귀측이 지금까지 비핵지대화 주장을 철회하고 우리측 안에 동의해 나온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함.</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2차-p.18)</p> <p>귀측도 잘 알다시피 남북 쌍방은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핵문제를 협의하</p>	<p>오늘 귀측에서 비핵화선언, 지난 5차회담때 나온 선언을 그대로 들고 나왔음. 우선 그 선언 자체를 놓고 보면, 상당한 정도로 어떤 의미에서는 유감스럽고, 또 가만 듣고 보면 실망스러운 것도 있음.</p> <p>지금 이 어느때인가 하는 것을 우리 마주 앉은 대표들이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지금 우리가 5차회담을 통해서, 민족사적인 합의서가 채택된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역사적 전환기임.</p> <p>따라서 우리들 사이의 대화도, 낯은 틀, 낯은 입장과 자세에서 대담하게 탈피해야 됨. 우리가 이미 귀측에서, 서울에서 있는 5차회담때 명백히 말씀드린바 있음. 남북사이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놓고, 그것이 통일이라는 한 길로 나가는 길에서 제기되는 문제라면, 하나의 민족을 만드는 길에서 제기되는 문제라면, 양보를 하거나 절충하는 문제를 절대로 굴복으로 생각하지 말라. 수치로 생각하지 말라. 우리 이런 문제를 제기했음.</p> <p>그런데 어째서 귀측에서는 이번 핵문제를 다루는 이 역사적인 대표 접촉에 아무런 태도변경도 없이, 그대로 오늘 여기 나왔느냐. 여기에 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함.</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1차-pp.45~46)</p> <p>12월 18일에 전화통지문과 관련해서 이 비핵지대화 문제를 협의한다, 저희들 견해는 우리가 대표접촉에 그때 임선생 참가했고 이동복선생도</p>

우 리 측	북 측
<p>기 위해 대표접촉을 갖기로 합의』하고 이를 「공동발표」 하였음.</p> <p>그런데 귀측은 지난 12월 18일 우리측에 보내온 전화통지문에서 마치도 「비핵지대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대표접촉을 갖는 것인양 사실을 왜곡하였는 바, 이는 남북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우리 대표들의 사명에 비추어 볼 때 온당치 못함을 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비핵화 1차—pp.25~26)</p>	<p>참가했는데, 그때 공동보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앞으로 대표접촉에서는 그리고 쌍방이 내놓은, 북에서 내놓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 초안과 또 남측이 내놓은 「한반도의 비핵화 등에 관한 공동선언」 이 초안을 앞으로 대표접촉에서 계속 토의하자. 이런식으로 토의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우리 명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리다가 그 대표들도 뭐 길게 그렇게 하겠느냐. 간단하게 핵문제라고 하자. 그래서 동의를 했음.</p> <p>그런데 우리가 핵문제하면 여기서 기본은 무엇인가. 조선반도를 비핵지대화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됨.</p> <p>물론 귀측은 비핵화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이것다 해결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와같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이것을 귀측에서 전화통지문 오는데서도 이것을 뭐라 뭐라 했고, 또 이제 발언에서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 지금 사실을 왜곡했다느니 온당치 못하다느니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 되겠느냐. 우리의 이해는 그로부터 출발하는 것임.</p> <p>그래서 우리는 핵문제와 관련한 이와같은 대표접촉을 하자는 것임. 그런데 전화통지문에서는 이 문제가 기본이 아니겠는가 해서 그렇게 보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쓸 것이 없겠다고 이렇게 이해함.</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1차—pp.36~37)</p>

나. 남북 시범사찰문제

우 리 측	북 측
<p>남북한 동시 시범핵사찰을 실시하는 문제임.</p> <p>우리측은 지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우선적 조치의 하나로 상호 상대방이 선정하는 자기측 지역의 군사 및 민간시설에 대한 동시 상호사찰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음.</p> <p>또한 시범사찰의 대상으로 우리는 귀측의 순천비행장과 영변에 있는 핵시설들을 선정하고자 하며, 귀측은 우리측의 군산비행장이나 또는 그밖에 귀측이 선정하는 군사시설과 민간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음.</p> <p>아울러 우리는 시범사찰의 내용과 방법을 빠른 시일안에 협의·결정하여 1992년 1월 31일 이전에 시범사찰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음.</p> <p>우리의 동시 시범핵사찰 제의는 우리측 지역내의 핵무기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사찰과 귀측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귀측의 주장을 수용한 것인 만큼 귀측은 당연히 그리고 즉각 우리측 제의를 받아들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함.</p> <p>우리측은 과연 우리 대한민국내에 미국의 핵무기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귀측이 직접 확인해 보고 또 귀측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우리측이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최선의 방법으로 시범</p>	<p>우리는 남조선에 미국의 핵무기가 벌써 수십년동안 와서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철거한다는 말은 없이 『이제는 핵무기가 없다』하고 부재선언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음.</p> <p>사실은 우리가 이해가 간다면 언제 얼마나 내 갔나, 이렇게 되어야 이해가 되겠는데 현재 내 갔다는 말은 없고, 남조선에 핵무기가 들어왔다는 자료는 있는데 나갔다는 자료는 없고, 그런데 12월 18일 현재 『어디에도 없다』.</p> <p>그러니까 우리 사실 이해가 안감. 그렇지만 우리가 1차 대표접촉때 이야기 하다시피 최고당국자가 발표한 이상 부재선언 내용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데 비핵지대화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되어 있고 이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내갔다는 미 군사기지에 가 봐야 되겠다. 가보는데 남측이 지적한대로 시범사찰 말씀한다면 남측이 제안한 군산비행장이나 하나 보고, 군산비행장이든지 또하나 지정을 해본다. 이렇게 말할게 아니고.</p> <p>아, 남쪽에 미국의 핵무기가 군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 알고 있는데 군산의 거야 뭐 또 치웠을 수도 있죠. 내갔을 수도 있고, 그 내갔다는 것을 우리 믿을 수 있습니다. 군산 와 보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군산 하나 보고 다른것 하나 찍는다고 해서 우리</p>

우 리 측	북 측
<p>사찰 실시를 제의하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쌍방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회복하자는 것임.</p> <p>시범사찰이 1992년 1월 31일까지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 구체적 시행방법에 대한 합의가 빠른 시일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함.</p> <p>(비핵화 1차-pp.22~23)</p> <p>남북 사이에 상호시범사찰을 실시하여 핵무기가 존재하는지 또한 핵무기개발계획을 기도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우선 확인하는 문제 등을 제기했음.</p> <p>우리는 귀측이 남녘땅에 핵무기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직접 검증해 보기를 원하는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고자 함.</p> <p>그래서 남북 쌍방간에 상대방 지역의 군사 및 민간시설에 대한 동시상호사찰을 시범적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1월말까지 실시할 것을 제의했던 것임.</p> <p>이렇게 해서 현장확인을 통해서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임.</p> <p>물론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되면 상호사찰이 제도화 될 수 있고, 수시로 상호사찰을 실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실현되기 앞서 우선 급선무로, 선결적인 사항으로 1월말까지 시범사찰을 실시</p>	<p>의혹이 풀리겠습니까. 우리 의혹이 안 풀린단 말임.</p> <p>그러기 때문에 본다면 남쪽에 있는 모든 미국핵기지 이것을 가서 봐야 되겠다. 봐야지, 우리로서는 한두개 봐서는 안됨.</p> <p>그러나 남쪽으로서도 우리 영변에 와서 보게 되면 제각 풀릴 수 있어요. 그 풀릴수 있다 말임. 그러니까 또 거긴 또 뭘 해당도 안되는 순천비행장을 잡아놓고 이걸 일반군사대상에 대한것, 이것은 앞으로 북남군사공동위원회에서 토론해 가지고 군축단계에서 필요하면 또 보면 되겠는데.</p> <p>아 핵문제와 관련되어 우리는 또 순천비행장 결부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시범사찰이라는 자체가 내용 대상 자체가 이렇게 아주 애매하게 제기됐고. 또 우리야 한두개 비행장을 봐서는 안 되겠고, 다 나가 봐야 되겠는데 이런 입장임.</p> <p>그러면 귀측에서 한번에 다와 볼 수 있겠는가. 아 백개면 백곳, 우리 한번에 다 나가 볼수 있음. 그것은 걱정하지 마시기바람. 말하자면 비핵화에 대한 것, 이것 서로 신의있게 실현하고 잘하자면 전면사찰을 해야 되겠다. 핵기지에 대한 것, 우리로서 의심 자꾸 그러는 영변에 대한 그 핵시설에 대한 것을 자꾸 거론하시니까 보여주겠다는 것임.</p> <p>그래 우리는 우리가 의심을 품고 있는 미국 모든 군사기지에 대한 것,</p>

우 리 측	북 측
<p>하자는 것임.</p> <p>귀측이 동의한다면, 시범사찰을 1월 이내에 실시하자는데 동의만 한다면, 즉각, 시범사찰 실시문제를, 구체적인 절차문제를 다음 접촉에서 논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함.</p> <p>(비핵화 2차-pp.17~18)</p>	<p>핵기지에 대한 것은 다 나가 봐야 되겠음.</p> <p>이렇게 되는 것이지 뭐 시범으로 한다 하게 되면 남측에서는 의혹이 풀릴 수 있지만, 남측에서는 와 보게 되면 영변하고 순천보겠다. 순천 떼버리면 영변을 보신다고 해서 의혹이 풀리겠지만 내로서는 군산비행장 하나 보고 그렇다고 다른 것 한개 더 본다고 해서 의혹이 절대 풀릴 수 없음. 그러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 봐야 됨</p> <p>(비핵화 2차-pp.74~76)</p>

2. 「공동선언(안)」 내용문제

가. 핵무기의 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

우 리 측	북 측
<p>우리의 1항은 귀측의 1항과 내용이 동일한 것임. 단누7 용하는 용어가 약간 다를 뿐인데, 이를테면 「저장, 배비」라는 개념에 귀측이 말하는 「반입」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임. 「저장, 배비」에 귀측이 추가해서 언급하고 있는 「반입」이라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반입」이라는 용어를 더 추가하지 않았음.</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2차—p.21)</p> <p>생산하고 제조하고가 이게 차이나는 표현임.</p> <p>그 다음에 귀측에서 「반입」이라는 것이 더 있고, 그리고 나서는 『보유, 저장, 배비, 사용하지 않는다』같은. 그러면 우선 두가지 문제가, 두가지 용어상에 문제가 있음.</p> <p>하나는 「생산」이나 「제조」나 하는 문제이고 「반입」이라는 용어를 추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임.</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2차—p.31)</p> <p>「반입」이라는게 무슨 뜻인가?</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2차—p.32)</p>	<p>조선반도를 비핵화 하자면 「반입」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넣는게 어떨겠는가? 그렇게 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도 상당히 좋겠고, 자체로 생산하고 저장하고 이것 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부터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반입」을 넣어 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음.</p> <p>그 다음에 무슨 「제조」나 「생산」이나 하는 문제는 그것은 문구사항 이니까 그것은 그렇고, 「반입」을 넣는게 비핵화의 성격에 맞는 공동 선언이라는게 명백히 두드러지지 않겠느냐.</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2차—p.32)</p> <p>핵무기를 외부에서 끌어들이는 것.</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2차—p.32)</p>

우 리 측	북 측
<p>외부에서 끌어들이지 않고 보유, 저장이 가능한가? (비핵화 2차-p.32)</p>	<p>그렇게 된다면 보유, 저장은 그런 논법으로 하게 되면 『생산하지 않는다』우리 표현대로 하면. 『생산하지 않는다』를 하나 넣으면 「보유·저장」은 『생산하지 않는다』하면 보유, 저장 못하니까. (비핵화 2차-p.32)</p>
<p>생산하지 않고도 외부에서 생산한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보유, 저장할 수 있는 것임. (비핵화 2차-p.32)</p>	<p>그렇기 때문에 『생산하지 않고』, 『반입하지 않고』하는 문제가 주하다 이 말임. (비핵화 2차-p.32)</p>
<p>보유, 저장 그러면 보유, 저장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생산돼서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보유, 저장속에는 물론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됨. 그런데 생산은 왜, 「생산이나 저장」를 왜 거기다 넣어야 되느냐, 생산이나 제조는 보유·저장하고의 별개의 개념으로 생산해서 여기다 보유, 저장 안하고 중국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북에다 갖다 놓을 수도 있단 말임. 그래 생산 행위는 우리가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반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유, 저장에 반입은 자동적으로 들어가 있음. 반입이 안되면 보유, 저장이 안 됨 (비핵화 2차-pp.32~33)</p>	<p>비슷한 말 같지만, 사실상 그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인 차이가 있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저장이라는 의미에서는 제조해서 저장하는 것도, 반입해서 제조하는 것도 있음. 그런데 거기서는, 제조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제조, 생산」이라는 말을 넣는다는 이의가 없다고 그랬음. 저장의 다른 요소인 반입이라는 문제도 시원하게 넣으면 좋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말하자면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것, 선언하는게 좋음. 이 반입이라는 조항이 없으면 다시 이땅에 그 누구든지 핵무기를 끌어 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그렇기 때문에 반입까지 넣어서, 우리가 여기다가 「시험, 생산, 반입, 보유, 저장, 배비」 모두, 반입까지만</p>

우 리 측	북 측
<p>남북간에 우리가 만드는 합의서라는 것이 모자라는 것은 물론 나쁘고, 남아도 좋지 않음. 남는다고 하는 것은 남은 것 자체가 불필요한 의미를 생산해 가지고 남과 북을 피차 불필요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음.</p> <p>지금 반입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않는다』 말예요. 그러면 「보유, 저장, 배비」를 피해가지고 반입돼서 어디가 있겠습니까, 반입되어 가지고 어디가 있겠지요. 보유하지도 않고, 저장하지도 않고, 배비하지도 않는데, 그러면 반입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언어임. 그 불필요한 언어를 뭐하러 여기서 설정하겠느냐 그 말임.</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2차—p.34)</p>	<p>일곱가지 원칙인 데요. 비핵화에 관한 일곱가지 대원칙을 규정하는데 참으로 좋음.</p> <p>물론 지금까지 일본 같은 나라는 3원칙은 규정하고 또 무슨 구라파에서는 4원칙도 있지만, 이것도 우리가 가장 철저하게 비핵화를 실현하는 의미에서 반입이라는 두 글자를 넣으면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는 않다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2차—pp.33~34)</p>
<p>생산, 반입 두마디만 넣고 나머지는 다 빼면 됨, 그럼 간단하게 다 해결됨, 『핵무기를 생산, 반입하지 아니한다』 두가지 두단어로 하자</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2차—p.34)</p> <p>나중에 우리가 조문별로 토의하면서 그 문제가 나올텐데. 가령 지금 5항에 『핵공격을 가상한 일체의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을 하지 않는다』하는 귀측의 조항하고도 이것이 연관되어 있음.</p> <p><u>뭐냐하면 왜 귀측에서 반입이라는 단어를 꼭 넣으려고 그러느냐,</u></p>	<p>불필요성을 논한다면, 생산과 반입 이것이 으뜸에 나와되고, 생산과 반입 안한다. 원래 이 두 측면이 매우 중요하단 말임. 생산과 반입 안한다. 이것이 철저히 규제돼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따라가지고 사람들의 이해를 보다 두텁게 하고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배비도 안하고, 저장도 안하고, 사용도 안한다고 하지 않는가, 원래 생산도 안하고, 저장도 안하면 핵무기가 없지않은가?</p> <p>없기 때문에, 동북선생 말씀대로 하게 되면 뭘 갖다 사용하며, 뭘 갖다 배비하고, 뭘 갖다 저장하느냐 이렇게 되지 않는가, 그렇기</p>

우 리 측	북 측
<p>과거에 반입이 됐다 하는 것을 일방으로 하여금 시인시키는 효과를 가져올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 담겨 있다 이말임.</p>	<p>때문에 우리가 원칙적으로 놓고 볼 때는 생산과 반입을 중지하는 문제는 명백히 규제하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문제들 저장이라든가 보유라든가 사용 안한다는 이렇게 하는게 이것이 좋음.</p>
<p>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를 생산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도, 그 이상의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담을 수 있는 항목들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왜 누가 들어도, 왜 반입이 여기 들어가느냐.</p>	<p>그래서 우리는 남북관계를, 특히 핵문제에 대한 것 상당한 정도로 서로 많은 의구심을 가지면서 해온 것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북남관계에서는 보다 철저하게, 이렇게 놓고, 만약에 반입을 금지한다고 넣어놔야 그 뭐 불편할게 서로 없음 우리 반입 안하겠음. 우리 반입 안하겠고, 또 반입한 것도 없고, 앞으로 남쪽에서 반입 안하고, 반입 안할 의지라면 놓자 그것임.</p>
<p>어느 일방이 과거에 『아! 이것으로 반입했다는 것을 시인했다』하는 소위 선전자료를 만들어 내는 효과를 노리고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중대한 문제를 우리가 제기 안할 수가 없단 말임.</p>	<p>그래서 원래 좋기는 생산하지 않고, 반입하지 않고, 이것을 앞에 놓고 나머지 쪽 이렇게 하면 좋다고 봄.</p>
<p>(비핵화 2차—pp.36~37)</p>	<p>(비핵화 2차—pp.34~35)</p> <p>여기에 들어간 뭐 우리가 보유하지 않고, 저장하고, 배비하지 않는다 이것은 비핵화를 철저히 막자는 의미에서 우리 넣는 것임.</p> <p>그런데 동북선생이 무슨 말씀 했는고 하나까, 저장이라는게 있다, 저장, 배비는 두길을 통해서 실현됨. 하나는 자체생산을 통해서 실현될 것이고, 하나는 반입을 통해서 실현될 것임.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길을 다 막자고 이 명문화하자는데야 무슨 이의가 있겠는가.</p> <p>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핵문제를 놓고 말하면 이 반입으로 부</p>

우 리 측	북 측
<p>생산이나 제조냐 하는 문제인데, 비슷한 용어지만 흔히 쓰이는 것은 제조라는 것은 어떤 것을 모양을 갖춰서 하나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생산은 그런 것을 여러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음.</p> <p>그래서 제조도 좋고 생산도 좋지만 제조가 더 중요한 개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p>	<p>터 시작됐음. 그러기 때문에 반입이라는 두글자는 반드시 넣어야 할 것임. 이것이 근본문제임.</p> <p>(비핵화 2차—p.36)</p> <p>이땅에 핵무기가, 누구도 모르게 또 슬슬슬 들여 오는 것 막자, 앞으로도 영원히 그다음에 그 위험한 것, 위험 천만한 것 만들지 말자. 하는 것을, 두가지 내용을, 제조하지 말자. 반입하지 말자.</p> <p>이렇게 규정하는데 크게 나쁘게 있는가?</p> <p>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슨 다르게 선전전에 쓰자는 게 없음. 우리는 다만 앞으로 이것 민족앞에 내놓을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하자고 선언했다 이것 내던지면 되지, 이것 때문에 남이 이때까지 반입했던 것 인정했소,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 그렇게 안 써먹겠음. 이것은 우리가 선언하는 것이란 말임.</p> <p>(비핵화 2차—p.38)</p> <p>우리는 제조라는 개념을 그렇게 안쓴단 말임. 우리는 뭐 다 생산, 우리 북에서는 필 그렇게 제조한다, 그것은 사실대로 말하는데 우리 출판물로 보셨으면 잘 아실것ियो. 우리 뭐를 제조한다는 개념을 그렇게 잘 안쓰고, 개념상 같지 않은가, 우리는 생산한다. 뭐 공작기계 생산한다, 생활필수품 생산한다.</p> <p>(비핵화 2차—p.39)</p>

우 리 측	북 측
<p>제조나 생산이나 뭐 넓게보면 같은 뜻임. 생산은 많은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제조는 ...</p> <p>(비핵화 2차—pp.38~39)</p> <p>우리가 같은 뜻을 갖는데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 그럴때는 그것이 우리가 같은 뜻으로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조」라고 하면 영어로 말하면 「메뉴팩추어」(manufacture)임. 「생산」은 「프로덕션」(production), 영어로는 아주 큰 의미 차이가 있음. 「메뉴팩추어」는 지금 우리 입대표께서 설명하신 그대로고 「프로덕션」은 양의 개념임.</p> <p>그러면 우리가 한반도를 비핵화하는데 있어서 핵무기라는게 양산개념을 아님. 이게 무슨 미·소도 아니고 말이야, 우리가 만든다면 그저 한 두개 만들어서 서로 공갈치고, 협박하고 하는데 쓸려고 그런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메뉴팩추어」의 개념이 더 정확함.</p> <p>그것은 바꾸고 할 성격의 것이 아님.</p> <p>(비핵화 2차—pp.39~40)</p>	<p>그러니까, 공작기계도, 공작형태로 만드는 것, 그러나 『공작기계 제조한다』 이렇게 안 한다고. 다 생산하는 개념으로 통용함 북에서는 ...</p> <p>그러면 우리 「제조」라는 개념을 받아 주겠는데, 「반입」이라는 개념을 받아주구려. 그것 바꿔치우고, 우리 「제조」를 받아주겠는데 반입이라는 것을 써넣고, 그렇게 타결해 넘어가자. 그렇게 바꿔치기 하자.</p> <p>(비핵화 2차—p.40)</p> <p>「반입」이라는 것을 금지해야 철저한 비핵화가 되는 것임. 그반입할 생각이 없으면 「반입」을 넣어야 되는 것은 명백한데,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반입」을 넣고, 「생산」하지 말고 「제조」로 하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자.</p> <p>(비핵화 2차—pp.40~41)</p>

우 리 측	북 측
<p>그러니까 가령 『시험, 제조, 생산, 보유, 저장, 배비, 사용』 그건 좋음.</p> <p>(비핵화 3차—p.19)</p>	<p>첫번째 조항에서 이쪽에 「제조」나, 「생산」이나 하는 문제, 이것 뭐 필요하게 되면 「제조」와 「생산」 두개 다 넣으면 어떻겠는가?</p> <p>그것은 왜냐하면 라틴아메리카의 무슨 핵무기금지와 관련한 조약을 보니까 「제조」, 「생산」 다 넣었음.</p> <p>그러면 「제조」, 「생산」 다 넣어가지고 보면 더 철저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되겠으니깐, 그런 식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것 내려가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있음.</p> <p>(비핵화 3차—p.16)</p>
<p>두가지 경우가 다 제조하고 생산이 의미가 다르고, 그다음에 <u>접수</u> 하고 <u>반입</u>은 편의주의를 적용시킬 수 있는 용어가 아님. 그러니까 제조, 생산 합의한대로 그냥 다 표기함.</p> <p>(비핵화 3차—p.98)</p> <p>반입이란 말은 우리 왜 피하느냐 하는 것을 누누이 설명을 해 드렸는데, <u>반입</u>이라고 하는데 <u>묘한 뉘앙스</u>가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이다 하는걸 누누이 말씀했음.</p> <p><u>접수</u>는 우리가 받지 않는다는 것임. 우리가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임.</p> <p>(비핵화 3차—p.99)</p>	<p>1조에 대한 것 문안을 읽기전에 절충안을 한번 내보내겠음.</p> <p>이제 귀측의 「제조」가 있고 우리가 「생산」 있음. 그래서 이걸 우리 편은 「생산」으로 하고 귀측 초안은 「제조」로 하고 이렇게 하면 혹시 안되겠는지?</p> <p>이것 왜 그러냐 하면 우리한테 「제조」라는 개념은 그렇게 쓰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생산」으로 하고, 귀측은 「제조」로 이렇게 편의주의적으로 하면 안되겠는가? 그렇게 하고, 한가지 더 다음에 우리는 「반입」으로 하고, 귀측은 접수 아닌가. 이것도 편의주의적으로 ….</p> <p>그래서 귀측 문건은 접수로 하고, 우리 문건은 반입으로 하고, 사실 『어디 접수해 온다』 좀 그래, 그래 혹시 이렇게 하면 안되겠는가 내 의견들을 이 문안 읽기 전에 이야기하는 것임.</p>

우 리 측	북 측
	<p>그 <u>접수하고</u> 반입을 한번 설명을 해주겠는가? 접수라는 개념하고 반입이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좀 해보시겠는가?</p> <p>귀측의 접수라는거는,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핵무기가 절대 조선반도로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개념임.</p> <p>조선 경외에서 조선 반도의 밖에서 우리 조선반도의 아낙으로 반입을 끌어들인다, 반입하지 못한다 하면 끌어들이지 못한다 이소리임.</p> <p>「접수하지 않는다」가 외부로부터 우리는 끌어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개념은 같은 개념임. 같은 개념을 눌러놓고, 『1. 북과 남은 핵무기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않는다』</p> <p>(비핵화 3차—pp.97~99)</p>

나.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

우 리 측	북 측
<p>우리는 남과 북이 핵무기를 제조, 보유, 저장, 배비,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하여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을 것을 명문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음.</p> <p>이것은 핵무기 개발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조치인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1차—p.20)</p> <p>우리측이 제의한 「한반도 비핵화 등에 관한 공동선언」안을 수락하여 핵재처리 및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명할 것을 촉구함.</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1차—p.23)</p> <p>『제3항,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우리의 비핵화 공동선언의 핵심적인 부분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검토해서, 다음 회담때 진척시켜 나가기로 함.</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1차—p.42)</p>	<p>우리의 새로운 선언초안에는 귀측의 주장을 고려해서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을데 대한 문제와 핵에너르기 평화적 이행문제를 강조해서 우리 선언초안을 짚어 넣었음.</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1차—p.39)</p>

다. 비핵화 검증문제 (대상, 절차, 방법)

우 리 측	북 측
<p>4항은 검증조항으로서 귀측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동시사찰 개념을 수용·발전시켜서 군사시설과 민간시설 모두를 포함해서 쌍방이 합의하는 방법에 의해서 동시상호사찰하자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다르다 뿐이지 그 기본적인 내용은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2차-p.21)</p> <p>『남과 북은 한반도에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는 모든 군사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하여 쌍방이 합의하는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이것은 남북간에 상호사찰을 의미함. 국제기구의 사찰하고 관련없는 얘기임. 별도의 것을 의미하는 것임.</p> <p>그런데 귀측의 안은 4항 『북과 남은 조선반도 남쪽에 있는 미국 핵무기의 전면적이고도 완전한 철수와 핵기지철폐를 공동으로 확인하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한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한다.』는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앞에 온 것이나 뒤에 온 것이나 그것은 같음.</p>	<p>귀측의 4항중에, 『상대측이 선정하는 모든 군사 및 민간시설에 대하여』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남쪽에 나가서 한다면 이렇게 해야될 이와같은 형편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음. 그러나 뭐 모든 민간시설까지 다하고 싶지 않음.</p> <p>우리쪽에는 핵무기가 아예 반입된 것도 없고 생산된 것도 없고 하니까, 우리쪽에 들어와서 군사시설 본다, 민간시설 본다, 이것이 옳지 않음. 통하지 않음.</p> <p>우리도 남쪽에 나가 보는 경우에는 핵기지, 핵무기를 저장, 이것을 보겠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귀측에서 미국의 핵무기가 다 없다고 하는 조건하에서 그럼 있는가, 없는가 나가보자, 이런 의도에서 썼던것임.</p> <p>그러나 귀측이 모든 군사, 민간시설 이렇게 하게되면 이것은 우리 벌써 전번에 합의된 사항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여기에 검증문제가 있음. 이 문제 제 12 조에 이렇게 되어 있음.</p> <p>『북과 남은 불가침의 이행과 담보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p>

우 리 측	북 측
<p>그런데 유독 『남쪽에 있는 미국 핵무기의 전면적이고도 완전한 철수와 핵기지 철폐를 확인하는 것』만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임.</p> <p>우리가 이 비핵화선언을 하는 목적은 한반도 북과 남을 통털어서 비핵화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임.</p> <p>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디까지나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할때라야 이것이 비핵화선언으로서의 체제에도 맞고 내용에도 충실해진다 하는 것임. 또 하나 이제 북측안에 보면 『남쪽에 있는 미국핵무기의 전면적이고도 완전한 철수와 핵기지 철폐를 공동으로 확인한다.』해서 이것은 그야말로 있지도 않았던 일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 놨음. 그러니까 마치 남쪽에 미군의 핵무기가 있어서 철수했다. 하는 사실을, 말하자면 남북이 합동으로 공동으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공동으로 석명하게 만드는 이런 표현인데, 이것은 있을 수 없음.</p> <p>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이 핵문제에 관해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얘기해야 되니까, 이것은 가령 우리가 벌써 여러차례 얘기했지만 남쪽에 핵무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찰방법을 통해서 확인하자. 그러면 확인되면 확인의 결과를 통해가지고, 없으면 그만이지. 그것이 우리 목적이지. 이것을 갖다가 꼭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목을 비틀어 가지고 말이지, 무슨 비명소리 비슷하게 「있다», 이</p>	<p>월 안에 북남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북남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문제, 다량 살육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문제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등, 군사적 신뢰조성,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 추진한다.』 이것 검증문제가 있음.</p> <p>이 검증문제를 모든 군사시설, 뭐 민간시설 이런 것은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여기서 토론해 가지고 할 문제고 우리가 여기서 사찰문제는 핵과 관련한 사찰, 핵무기와 관련한 사찰 이것을 규제해 넣어야 됨. 이것 여기 합의서 채택된게 있는데, 이것하고 혼탕시켜 놓고 하기는 하자는 거예요. 군사시설 등 볼것 보자 앞으로 군축단계에서, 그것은 합의되어 가지고 보자 그런건데, 여기다가 넣을 성격은 못 된다. 우리한테 와서 지금 앞으로 군축단계에서 군사시설 볼 것은 보여 주기로 합의하자는 것임.</p> <p>그러나 여기서 핵무기 문제와 관련한 사찰에서야 무엇때문에 이렇게 비대하게 성격에 맞지 않게 넣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비핵화선언의 성격에 맞게 사찰문제도 규제하는게 좋지 않느냐 또 그렇게 돼야한다. 이걸 의미한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2차 -pp.44~45)</p>

우 리 측	북 측
<p>런 것을 시인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겠다. 그러면 이것은 비핵화 선언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갖는 문제가 됨. 그러니까 이것은 잘 좀 심사숙고를 해주시기를 간청함.</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2차 - pp.41~43)</p> <p>핵무기가 있었다고 한 사람도 없었고 없었다고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 그런 상태를 우리가 벗어날 수 없음.</p> <p>다만 있는지 없는지 와서 보시라, 이런 말씀임. 그리고 또 없다고 그랬고, 우리 대통령께서 『한반도의 어느 곳에도 핵무기는 이시간 현재 없다.』그러셨단 말임.</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2차 - p.43)</p> <p>저희 안의 4항에 이렇게 되어있음.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서』다른 목적이 아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서, 상대측이 선정하는 모든 군사시설과 민간시설』이것은 비핵화와 관련된 군사시설과 민간시설이지, 절대로 다른 군사시설과 민간시설이 아님.</p> <p>그러니까 비핵화와 관련없는 군사시설, 민간시설을 상대방이 선정할 수 없는 것임. 그래서 쌍방이 합의하는 방법으로 사찰하자는 것이지 어느 일방이 지금 내놓은 방법으로 사찰 하자는게 아님.</p>	<p>우리가 여기에 내놓은 것. 『북과 남은 조선반도 남쪽에 있는 핵무기의 전면적이고도 완전한 철수와 핵기지 철폐를 공동으로 확인하며』이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신경을 쓰시면서, 이제 핵무기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귀측이 이렇게, 여기 현재 내놓은 것 이것 얼마나 모순 되는가?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그런데 우리측에 와서 검증한다면, 아 그럼 영변 보이겠다는 거야 예를들면, 우리한테 다른 군사시설 무엇때문에 보겠다, 하겠느냐 이것은 앞으로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보이겠다, 군축단계에서 신뢰적 군축단계에서 이때 보이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넣겠느냐 이거란 말임.</p> <p>그러나 우리 내놓은 것은 우리의 이해로부터 출발해서 미국의 핵무기 철거, 핵기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공동으로 확인하는 문제, 우리 지금까지 주장하던거고, 그러나 쌍방사이에 의무를 지우는 식으로 이렇게 모든 군사시설, 쌍방이 상대방이 선정하는걸 이렇게 다 모든 군사시설, 민간시설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감</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2차 - pp.46~47)</p> <p>우리 4조는 두가지 문제를 담고 있음. 하나는 그쪽에서 인정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존재했던 미군핵무기철수, 핵기지철폐</p>

우 리 측	북 측
<p>그러니까 우리 표현이, 지금 우리 최대표께서 걱정하시는데로 우리 남북합의서 12조에 있는 일반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과정에서 나오는 검증하고는 완전히 별개다 하는 것이 명백하게 건의돼 있는데 그것하고 혼동하시면 안됨.</p> <p>『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는 모든 군사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하여』이 「모든」이라는 뜻은, 이 「모든」이라는 단어 때문에 전체를 얘기하는게 아님. 『어떤 군사시설이든지』하는 뜻이지, 어떤 군사시설, 그러니까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떤 군사시설이든지, 민간시설이든지 상대측이 요구할 때는 사찰을 하자는 의미임.</p> <p style="text-align: center;">(비핵화 2차 - pp.45~46)</p> <p>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거론하고 있고 서로 의견이 거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비핵화선언 초안 1항, 2항, 3항이 있음.</p> <p>『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또는 생산』, 「반입」이 들어가던 안 들어가던 1조『보유, 저장, 배비, 사용하지 아니한다.』, 2조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조『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이 3개항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사찰을 하지 않으면 안됨.</p> <p>우리가 어떻게 선언만 가지고 서로를 납득시킬 수가 있는가.</p>	<p>문제에 관한 검증문제가 있음. 왜 우리가 이렇게 넣었는가, 조선반도의 핵무기는 현재는 북에는 없음. 그러나 거기에서 인정하든 안하든간에 남에는 핵무기가 있었음. 또 지금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거기서는 모른다고 하니깐. 그런데 있다는 것을 내가 여러가지 증거로 반증할 수 있음. 9월 27일날 부시 대통령도 전술핵무기 철수문제를 하면서 남조선을 짚었음. 그 뒤에 미 국방장관 체니가 실무적인 해설을 하는데 핵발사수단까지 짚었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종든쌌던간에 남조선에 핵무기가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요, 그러기 때문에 있는 핵무기 철수, 핵기지철폐 문제를 어떻게 보겠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담았음.</p> <p>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북에 핵무기가 있다면 공동의 의무를 지니는 조항을 넣을 수 있음.</p> <p>그러나 우리는 그쪽에도 얘기하지만, 영변에 핵무기 제조시설이, 어제도 동북선생이 얘기했지만 좀 있으면 이게 무슨 될 것 같다. 그 말 자체도 우리한테 핵무기가 없다는 것을 그대로 말하자면 자기 말로서 증명하는 그런 좋은 자료임.</p> <p>실질적으로 우리는 현재 핵무기가 없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핵무기에 대한 문제를 우리 조문에는 하나 넣었음.</p> <p>그 다음에 우리 4조에 두번째 내용은 무엇인가.『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련된 공동검증』문제가 있음. 공동검증 문제 여기에는 말하자면</p>

우 리 측	북 측
<p>그러니까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다 넓은 광범위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지금 우리 최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은 시야를 너무 좁혀요. 자꾸 남조선에 있는 그 미군기지, 미군핵 이것만 생각하신단 말임. 그렇지 않음.</p> <p>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보다 더 폭넓은 그런 우리의 사고가 필요함.</p> <p>그 사고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치가 없어가지고 이게 중립적인 장치이지, 우리 쌍방이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건데, 만약에 북쪽에서 이 비핵화를 검증하는 문제와 상관없는 사찰을 우리가 요구한다고 그럴 때는 안들으면 될 것 아닌가. 이게 표현이 아주 중립적인 표현이지 어디 일방적인 표현이 있는가. 한군데도 일방적으로 빠져 나갈 구멍이 없음</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2차 - pp.47~48)</p> <p>지금 우리가 제시한 이 4항과 관련해서 내가 몇가지 물어 보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에 4항에 제시한 것은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를 예상해서 다 얘기하는 것임. 그래서 앞에 나온 1, 2, 3항 전부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임. 앞으로, 그래서 『핵무기를 시험, 제조, 보유, 저장, 배비,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앞으로 계속지키는가 하는 것을 검증하자는 것이지 과거지사나 현재에 있는 일만 가지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임.</p>	<p>진짜 핵시설들을 평화적인 목적에 이용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문제를 넣자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안은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을 놓고 조문화한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2차 - pp.48~50)</p> <p>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자는 것임. 검증은 사찰을 통해서 함. 여기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비핵화를 위해서라 했지만 여기다 모든 군사, 민간시설 이렇게 넣어 놓으니깐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해야 될 문제가 뒤섞여 있는 감이 나지 않는가.</p> <p>비핵화를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게 벌써 그렇게 되지 않음. 이게 지금 이미 다 합의서 채택됐는데 무엇 때문에 혼탕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되게끔 하겠는가. 우리는 비핵화 검증한다 했으니깐 여기에 명백하지 않은가?</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2차 - p.51)</p> <p>비핵화를 검증한다는 문제 하나임. 그러나 4조에서 명백히 명문화할 것이 뭐인가. 이제 우리가 만들자는 선언이 마치도 미래지향적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우리 선언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도</p>

우 리 측	북 측
<p>그 다음에 2항 『앞으로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하는 것을 서로 검증하자는 것임. 그리고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보유하지 않느냐 도중에 또 가질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남북간에 서로 검증하자는 것임.</p> <p>이렇게 선언만 해놓으면 뭐하느냐. 그것을 지키고 하는 것을 확인하자는 것임. 그래서 물론 믿어야지요. 『상대방을 믿고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 하는 유명한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믿지만 이렇게 일단 합의해 놓는 것은 지키는가 하는 것을 아 믿기 때문이 아니라 믿으면서도 서로 검증하자. 이래야 신뢰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임. 뭐 미군의 핵무기가 있니 없니 이런 문제뿐 아니라 포괄적으로 미래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음. 따라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귀측도 검증을 하자는 것임. 검증하자는데 이의가 없잖은가?</p> <p>(비핵화 2차 - pp.50~51)</p> <p>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자는 것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비핵화를 위해서 세가지를 약속하자는, 선언하는 것 1, 2, 3항임. 이것이 다 검증의 대상이 된다는 것임. 그러면 검증은, 이것은 남과 북이 상호하자는 것이죠. 남과 북이, 국제사찰하고는 관련 없는 문제임. 그러면 언제, 어떻게, 어느 장소에 대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p>	<p>처리하게 돼야 됨.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래서 앞에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를 못 박았다. 그리고 그뒤 4조 앞에는 『미군핵무기 철수, 핵기지 철폐를 공동으로 확인하며』, 뒤에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한다』 명백히 돼 있음.</p> <p>(비핵화 2차 - pp.52~53)</p> <p>우리가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여기서 구체적 사찰 방법도 토론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찰대상에 대한 것 협의를 하는데 그러나 당면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미국의 핵무기철수 의지를 확인해야 되겠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자는 것이고 그 다음 나머지 대상에 대한 것은 비핵화의 성격에 맞게 검증을 하자는 것이고 이렇게 놓지 않았는가?</p> <p>그래서 거기다 대상만 무엇 때문에 모든 『군사, 민간급』 이렇게 넣고, 또 방법문제는 『쌍방이 합의하는 방법으로 사찰한다.』 방법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미뤄 놓고, 대상만을 이렇게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해야 될 성격으로 된거를 여기다 넣어놓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것을 빼자는 거다.</p> <p>(비핵화 2차 - p.54)</p>

우 리 측	북 측
<p>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합의를 봐서 규제를 해놔야 되겠 죠?</p> <p>(비핵화 2차 -pp.52~53)</p> <p>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방향적인, 기본원칙적인 것을 여기에 표시 한것임. 그래서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는 핵시 설이라고 의심나는 군사시설과 핵 민간시설에 대해서 쌍방이 합의하 는 방법』 어떤 방법이라는 거를 이제부터 합의를 별도로 하라는 것 임. 공동위원회에서, 『방법으로 남북간이 상호사찰을 하자』 하는 것 임. 그러니까 현재 것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해서 의심나는 때에는 합 의에 의해서, 합의된 방법으로 하자는 것임.</p> <p>(비핵화 2차 -pp.52~54)</p> <p>이제 사찰문제에 대해서도 남북간에, 북남간에 근본적인 의견차이 가 없음. 다만 의견차이가 어디서 표출되느냐, 내가 아까 반입이라는 표현가지고 얘기했지만 이것 4항에서도 『조선반도의 남쪽에 있는 미 국 핵무기의 전면적이고도 완전한 철수와 핵기지 철폐를 공동으로 확 인』 을 우리한테 시킬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임.</p> <p>또 5항에도 『북과 남은 핵공격을 가당한 일체의 군사행동과</p>	

우 리 측	북 측
<p>군사연습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있다가 토의할 것을 한꺼번에 토의하는 것이 난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언급을 하는데 이것도 『핵공격을 가상한 일체의 군사행동과 군사연습은』 뭐냐? 내가 생각하기에는 북에서 편해요. 그게 소위 무슨 훈련이야? 팀스피리트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 세가지 사항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시인을 받는 것을 여기에다가 꼭 담으셔야 되겠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임.</p> <p>그러면 우리가 남북관계를 풀어가는데 어떻게 건설적이나 하는 것이 의문임. 우리가 남북관계를 풀어가는데 무엇을 할려고 그러는가. 과거에 이 문제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싸워도 절대로 북에서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지 않음. 그러면 어떻게 하실 작정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지금에 입각해서, 지금에 가령, 지금 핵문제 걱정하시는 것 우리 알고있음. 우리도 걱정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핵문제 대해서는 취할 조치는 다 취해서 없단 말이야, 지금. 없다는 것을 일단 믿는다고 받아 주셨고 거기서 출발해야지, 그래 거기서 다시 돌아가 가지고 거기다가 『조선반도의 남쪽에 있는 미국 핵무기의 전면적이고도 완전한 철수와 핵기지 철폐를 공동으로 확인하며』 그러면 우리더러 이것을 시인하라는 얘기인데 시인 됩니까? 시인 안됨. 또 저 무슨 훈련인가? 이 팀스피리트라고 하는 훈련도 똑같은 성격의 문제임.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느냐. 과거의 문제가</p>	

우 리 측	북 측
<p>지고 우리가 씨름을 하면 우리가 1년을 떠들어서 결론이 나겠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점에서 앞으로 나가는 방향에서 우리가 중립적인 표현을 빌어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결론에 도달을 못해요. 그러니까 잘좀 생각하시라고.</p> <p style="text-align: center;">(비핵화 2차 -pp.54~56)</p> <p>그것도 지난번 것에 비하면 많이 좋은 표현인데, 개선된 표현인데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우리 안을 한번 제기함.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그리고 『상대측이 선정하는』 이거는 살고, 이것은 들어가 있고, 『상대측이 선정하는 핵관련시설, 장소, 물질에 대하여』 그 밑에는 같음. 『쌍방이 합의하는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합의하는 절차와 방법』, 「절차」 좋습니다. 그건 뭐 문제 없음. 『절차와 방법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상대측이 선정하는 핵관련시설, 장소, 물질에 대하여 쌍방이 합의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p> <p>지난번에는 우리가 『모든 군사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하여』 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귀측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좀 중립적인 표현으로 하면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 안을 제기함.</p>	<p>원래 이미 조선반도의 핵무기문제는 아무래도 미국의 핵무기가 남조선에 반입된때로부터 출발했다는 우리 견해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관하게 남조선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 철수정형, 핵기지 철폐정형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는게 우리의 일관한 입장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는 거고.</p> <p>그러나 이와같은 표현에 대해서 남쪽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기 또 힘들어한다는 것을, 두차례 대표접촉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함. 그렇다면 전번 접촉때 이동복선생이 『이것 중립적인 표현을 써서 서로 편리하게 좀 할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좀 연구를 해 봤음.</p> <p>여기서 연구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대상들을 쌍방이 합의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함.</p>

우 리 측	북 측
<p>『해당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핵 관련 시설, 물질에 대하여』나 결국 같은 얘기가 되겠음.</p> <p>(비핵화 3차 - p. 23)</p>	<p>이렇게 되게 되면 귀측에서는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그저 여기까지는 같음.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귀측은 『상대측에서 선정한 모든 군사시설, 민간시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는 그저 「해당대상」이라고 이것을 우리가 『모든 군사시설, 민간시설』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 있음.</p> <p>이것을 그저 일반화 해가지고 앞으로 대상되는 구체적인 거는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도록 하고, 우리로서는 선언이니까 이 대상들을 빼고, 여기다 「해당대상」, 나머지는 협의하는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우리는 『쌍방이 합의하는 절차와 방법』, 「절차」를 또 넣었음. 그 「절차」 그렇게 된거고. 이렇게 돼서 양쪽의 의견을 다 충분히 반영한 이와 같은 안으로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안을 하나 제기를 함.</p> <p>(비핵화 3차 - pp. 21~22)</p> <p>앞으로 조직되는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사찰을 하자면 대상에 대한 것이라든가 절차와 방법문제를 그때,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됨. 그러기 때문에 그저 이 문제를 일반화할 바에는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음.</p> <p>우리가 제기한대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상대측이 선정하는』이 문제, 이것은 핵통제위원회에서 상대측에 선정할 수도 있고, 예를들면</p>

우 리 측	북 측
<p>이러면 어떤가? 하나씩 나뉘어지면 어떤가? 『상대측이 선정하는』을 넣던가, 아니면 「해당대상」들을 『핵관련시설, 장소, 물질』로 하던가 어느 하나씩 양보하자.</p> <p>(비핵화 3차 - pp. 24~25)</p> <p>그것은 우리가 사실 이 공동선언 자체가 어쩌면 불필요한걸 우리가 합의하는지도 모름. 그런데 불신이 있기 때문에 합의하는거란 말임.</p>	<p>거기에서 토론해서 결정하게끔 여유를, 여지를 남겨놓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p> <p>그래서 저희들은 아예 여기서는 이렇게 가장 보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규제해 놓으면 핵통제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앉아서 구체적으로 합의되겠으니까. 이게 제일 타당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봤음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서 해당 대상』이다. 그러니까 다른 뭐 대상이 아니라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대상이란 말임. 이렇게 되면 귀측에서 제기하는 식으로 『핵관련시설, 장소, 물질』 이렇게 안해도 이 모든 게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절차, 방법, 이렇게 되니까 모든 것이 명백함.</p> <p>(비핵화 3차 - p. 24)</p> <p>원래 이게 조선반도의 비핵화 검증문제인데, 여기에 원래는 그 무슨 『상대측이 선정하는 대상』또 무슨 『핵관련시설, 물질』이런 것을 표기 안하고도 원래 조문화할 수 있는 문제임.</p> <p>원래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서 쌍방이 합의하는 방법으로 사찰을 진행한다』하면 우리 다 돼요. 원래는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서 쌍방이 합의하는 방법으로 사찰을 진행한다.』하면 다 된다는 것임.</p>

우 리 측	북 측
<p>그 불신을 푸는 첩경은 상대방이 『이것을 보고 싶다』할 때는 보여줌으로 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풀수 있는 것임.</p> <p>그리고 이러한 표현을 여기다 담으면 제3자가 볼 때 『아, 성의를 가지고들 하는구나』하는 것을, 이러한 검증이나 사찰하기전에도 제3자가 볼때는 『아, 합의하는 쌍방이 다같이 그만큼 성의를 가지고 있구나』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표현이 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임.</p> <p>제3자가 볼때 그렇지 않겠는가?</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3차 - p. 25)</p> <p>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번 짚어서 생각하고 넘어 가야할 부분이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문제를 여기서 다루는 목적은 그동안 조성된 불신은, 이것은 씻어버려야 된단 말임.</p> <p>그리고 신뢰를 구축해야 됨.</p> <p>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한 문제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라파에서 있었던 INF협정이라든가 또는 재래식 무기 감축협정에도 이 문제가 『상대측이 보고자 하는 곳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어 있음.</p> <p>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내가 말씀드린 이유 그대로임. 우리가 사실은 사찰한다고 그럴 때 일일이 다 볼 수 있겠는가? 다 볼수는</p>	<p>왜 그런가. 사찰을 하자니까 말하자면 어떤 방법으로 하겠는가하는 문제가 토론돼야 됨.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겠는가 하는게 토론돼야 된다 말임. 또 사찰을 어떤 사람들로 묶어서 하겠는가 하는 제반 문제가 쌍방이 합의하게 되는 문제임.</p> <p>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상대측이 선정하는』, 무슨 까다롭게 이런 말하자면 무슨 『핵관련시설 장소, 대상』안해도 원래 되는 문제임.</p> <p>우리가 자주 불신문제, 오해문제 자꾸 이렇게 다른 의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고 문제를 설정하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쌍방이 합의하는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하면 다임.</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3차 - pp. 25~26)</p> <p>그래서 『상대측이 선정하는』하는 거 우리가 받아 들이기가 여기 현재 적중한 표현이 못 되지 않겠는가. 그것은 전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물론 남쪽에 나가서 우리로서는 봐야 될 부분이 많다고, 우리들 생각은. 미국의 핵시설에 대한 것, 핵기지에 대한 것. 그러나 귀측에서는 우리한테 와 봐야 될 대상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함. 그러기 때문에 『상대측이 선정하는』하면 사실 이렇게 북과 남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뭘 규제해 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좀 찌그러지는 이런 감이 있음.</p>

우 리 측	북 측
<p>없음.</p> <p>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합의를 생산함으로써 해서 남과 북은 물론 제 3자가 보기에 『아, 성의를 가지고 약속하는구나』하는 효과를 우리가 생산해 내면, 그러면 좋으면 좋았지 나쁠 것은 없음.</p> <p>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비교 안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임. 여기다 『상대측이 선정하는』이라는 말을 넣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느냐. 원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김대표가 말씀하신 것은 최소한의 조치로서 옳다 말아야. 그런데 거기다가 『상대측이 선정하는』 표현을 쓰면 누가 보더라도 『아, 이 약속을 하는 쌍방이 정말 성의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는구나』하는 그러한 뜻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3차 - pp.26~27)</p> <p>지금 이 조항중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측이 선정하는』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이 검증문제를 논할 때 이것 가지고 제일 논쟁이 많은 대목임.</p> <p>그래서 앞으로 핵통제공동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일을 시작한다. 할때에도 이 기본원칙이 있지 않으면 굉장히 해결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임. 그래서 기본적으로 와서 보라는 것만 볼 것인가. 상대측이 선정하는 것을 보는 원칙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대원칙을</p>	<p>그리 『상대측』에 대한 것은 이자 임대표선생이 『그럼 그건 빼고 이쪽 나머지 표현들을 쓸 수 없겠는가』하는 문제있음. 그것을 우리 연구를 해보겠음. 그 전에, 그걸 얘기하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은 뭇인가? 『핵관련시설』 빼고 『핵시설과 장소, 물질』이렇게 하자.</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3차 - pp. 27~28)</p> <p>우리 핵통제위원회를 내오자고 합의되지 않았는가. 여기 선언초안에 있는데, 그때 토론할 때 『상대측이 선정하는』 문제가 포함될 수 있고 거기서 우리 합의된 절차대로 하지 않겠는가?</p> <p>그러기 때문에 이제 동북선생도 그러면 『상대측이 선정하는』을 빼고 「핵관련」에서 「관련」 빼고 「핵시설」 이렇게 하는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넘어가야지. 『상대측이 선정하는』 것은 우리가 전번에도 이미 거기에 대한거 설명했고, 내내 설명해 올렸거든 그러나 길게 설명 안했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 자꾸 주장하면 일방적인 주장이 됨. 그러니까 이제 동북선생이 좋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합의된 것으로 해서 그냥 넘어가자.</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3차 - p. 29)</p> <p>이것 오히려 이렇게 박아 놓으면, 더 잘 우리 북과 남의 문제는 민족내부 문제거든.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도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p>

우 리 측	북 측
<p>하나 정해 놓는다는 것은 앞으로의 난관을 해소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합의를 봐야 함. 그러나 기본원칙은 상대측이 선정하는 것을 보느냐. 아니면 보여 줄 사람이 보여 주는 걸 보느냐. 다른 것임.</p> <p>이것은 국제간에도 굉장히 말이 많은 대목이기 때문에 이 대목을 살려야 함. 그래야 북쪽에서도 남쪽에 와서 보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논쟁의 여지를 남기게 됨. 심각하게 생각해 보기바람.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됨.</p> <p>이것 국제사회에서 검증문제 중에서는 이것이 항상 논란이 되어 있는 대목임. 그렇기 때문에 원칙상 이렇게 하자는 원칙을 박아 놓음으로써 신축성을 갖게 되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3차 - pp. 28~30)</p> <p>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은 방법론에 대해서는 『절차와 방법』이것은 협의해가지고 해야 되지만 무엇일, 그러니까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런 원칙이 들어있어야 됨.</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3차 - p.31)</p>	<p>박아 놓으면 이것때문에 말썽이 일어남. 『상대측이 선정하는』 빼 버려도 이것 쌍방이 합의하는 절차가 다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와 방법에 대한 것 우리가 여기서는 뭐 그렇게 핵시설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거든. 앞으로 전문가들에게 맡기게 되면 그 사람들이 더 잘 하겠는데, 뭐 『상대측이 선정하는』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이렇게 제약을 받게끔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된다 말임.</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3차 - p. 30)</p> <p>『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핵시설과 장소, 물질들을 쌍방이 합의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이런 식으로 「핵관련」에서 「관련」을 빼도록 했고 『쌍방이 선정하는』 빼도록 했으니까, 문안을 정리하면 이렇게 됨.</p> <p>그래서 나는 동북선생의 말씀이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점을 찾고 타결하기위한 이와같은 진지한 입장에서 나온 그것이라고 난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우선 이렇게 넘어 가자.</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3차 - p. 31)</p> <p>합의하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워낙 구체적이고 세미적으로 하면 합의가 어려움. 언제나 합의하는게 크게 하면, 합의가 쉬움.</p>

우 리 측	북 측
<p>여기서 두가지 중요한 개념이 들어 있음. 하나는 검증할 대상에 대한 문제 하고, 그 다음에 검증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음.</p> <p>그런데 검증할 대상에 대해서 조금 명확히 해두는 것이 나중에 공동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좋겠다 하는 의견임.</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3차 - p.33)</p>	<p>내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서 쌍방이 합의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하면 남과 북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정리된 문안임.</p> <p>여기에서 『쌍방이 합의하는 방법, 절차로 사찰을 진행한다』하면 거기에서는 호상 상대방이 선정하는 대상도 될 수 있음.</p> <p>『쌍방이 합의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진행한다』하면 첫째는, 대상을 선정해야 된단 말임. 두번째는, 그 대상을 어떤 방법으로 사찰 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결정돼야 된단 말임.</p> <p>셋째는, 그 어떤 절차를 거치겠는가 하는 문제가 결정돼야 됨. 그리고 사찰에 어떤 성원들이 망라되겠는가 하는 것이 결정돼야 됨.</p> <p>이 모든 것은 쌍방이 합의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조문이 그저 이렇게 일반화하면 된단 말임. 거기다 원래 하자면 대상, 사찰, 인원 뭐 이렇게 다 넣을 수야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크게 원칙만 하면 합의하기 쉬움.</p> <p>우리는 원래 여기다 넣자면 어떻게 하고 싶은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남쪽에서 계속 우리를 의심하는 영변, 우리는 영변, 이남에 있는 모든 미군핵시설, 이렇게 대상을 구체화하고 싶습니다. 거기서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뺏단 말임. 생각하다가. 그래서 그저 『해당하는 대상』이라고 일반화 했음.</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3차 - p.33~34)</p>

우 리 측	북 측
<p>네번째 항은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 측이 선정하는 핵시설, 장소, 물질에 대하여 또는 해당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쌍방이 합의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이렇게 하자.</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3차 - p.36)</p> <p>지금 뭐 혼동하고 있지 않는가 싶은데, 이번에 시범사찰과 관련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1항, 2항, 3항 합의 본 것, 앞으로 『핵무기를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핵에너지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하는 약속을 잘 서로 이행하는가, 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일회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님.</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3차 - p.33)</p>	<p>상대측이 선정하는, 이것 우리쪽으로서는 그문제가 명백히 말씀 올린 것은 해당이 안됨.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영변에 대한 것, 귀측에서 계속 의심을 가지면서 사찰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그것 뭐 대상 하나 내놓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또 요전처럼 「시범사찰이다」 하면서 일반 우리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성격, 문제를 결부시켜서 순천비행장을 사찰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래 되면 앞으로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 이거 합의서에 상대방이 선정하는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순천비행장을 사찰 못 받겠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제기 되면 아주 이것 복잡해 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측이 선정하는, 이런 조항은 넣으면 안됨.</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3차 - p.36)</p> <p>그렇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었음. 그런 식으로 벌써 해석할 줄 알았음.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 조항에 대한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짚자고 하여서는, 우리가 원래 짚은게 정확하지요. 종전에 우리가 제기했던 안이, 정확하지만, 귀측에서 그렇게 접수할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양해한건데, 좋습니다. 『북과 남은 조선반도 남쪽에 미국 핵무기의 전면적이고도 완전한 철수와 핵기지의 철폐를 공동 확인한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조선반도에서의 핵문제라는 것은 미국의 핵무기가</p>

우 리 측	북 측
	<p>남조선에 반입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임.</p> <p>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다시 설명 안 하겠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문안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각도에서 우린 제기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제기했던 이 조항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일반화 되어 가지고, 남측에서 그것 뭐 굳이 받아들이지 못 할 이유가 없잖는가? 아 이거 얼마나 좋은가 『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의 검증에 해당대상』 해당 대상에 대한 것은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정하자면 된단 말임.</p> <p>이렇게 잘 들어 갔거든요. 이것 『쌍방이 합의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한다』 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명백한데. 어째서 상대측이 지정한다, 하는 것을 갖다 넣음으로써 핵통제위원회의 기능을 제약 하겠는가.</p> <p>그것은 나중에 넣자 그렇게 딱 제약하지 말자.</p> <p>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핵통제위원회에서 논의, 만든다고 한다면 대상까지도, 그것은 무슨 상대측이 선정하는, 이런 것이 필요 없이도 될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그런 말하자면 조문 정리 위해서, 검증하기 위해서는 상대측, 해당 대상이라는 말이 없이도 그저 『사찰을 진행한다』 이렇게 하면 된단 말임.</p> <p>그렇지만 우리가 그쪽의 표현을 따라 줘서 그래서 해당 된다는 것, 넣었음. 그러면 검증하기 위해서 사찰을 실시한다면 다야, 그 다음 사찰 문제는 핵통제위원회에서 우리가 논의하면 된단 말임.</p>

우 리 측	북 측
<p>우리는 앞으로 이 공동선언에 합의된 내용을 상대방이 잘 지키리라고 신뢰를 하지만, 수시로 필요한 때에 검증함으로써 이 약속을 확실히 지키는 것을 보장하자 하는, 이런 뜻에서 하는 얘기임.</p> <p>현재 당장에 그쪽에서 보고 싶어하는 남쪽에 있다고 보는 핵무기라든가 뭐 이런 것, 한번 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몇년이고 유효한 공동선언이 될텐데, 우리가 약속한 것을 제대로 서로 잘 지키는가 하는 것을 검증하자는 뜻이지. 그래 장기적인 개념에서 보아야 됨.</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3차 - pp. 39~40)</p> <p>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도 이런 문제를 정할 때에 목표 대상물을 정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음. 상대방이 신고하는것, 알려주는 것 와서</p>	<p>이제 우리 최대표가 말씀드린 것은 뭐인가 『상대측이 선정하는 대상』할 때에는 선정하는 대상에 한해서는 핵통제위원회에서 토론, 합의 없이 순수 절차와 방법만을 논의하게 된다 이것임.</p> <p>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딘지 모르게 합당치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저께 동북선생이 가장 중립적인 표현을 써서 납득이 갈 수 있으면 문안을 타결하자 해서 정말 납득이 갈 수 있는 중립적인 표현을 썼음.</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3차 - pp. 37~39)</p> <p>우리가 오늘 대표접촉에서 이것을 잘못 규정해 놓으면 불필요하게 앞으로 이제는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그 불필요한 복잡성을 야기 시키고, 거기서 논쟁거리를 만들어 줄 수도 있음.</p> <p>거기서 이제 토론할때야 아무래도 북에서 뭘, 북에 것을 뭘 보면 좋겠다고 남쪽에서 지정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때 가서 어디 것이 보고 싶다, 이렇게 지정하면 우린 또 가서, 군산 가서 보고 싶다 하면, 군산 비행장 보고 싶다. 이럴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딱 지정하는 것만 한다. 예를 들면, 그런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것은 핵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건데 여기는 이렇게 관련 다 있지만, 상대측에서는 『아니 우리 어디 가보겠소. 신의주 가보겠소』아 신의주,그러면 우리는 핵문제하고 관련있다 하고, 상대측이. 『우리는 신의주도 핵문제하고 뭐 있다』하고 『우리는 가 보겠소』 이렇게 되면 『핵문제하고 관련 없는데</p>

우 리 측	북 측
<p>보십시오, 하는 것만 보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이쪽에서 나 이것 보고싶소? 하는, 이쪽에서 지정하는 것을 가보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전자의 경우가 아니라 후자의 경우, 위주의 체제를 갖추자 하는 약속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념임. 그러면 다 해결되는 것임.</p> <p>그러나 만일 이런 것이 규제가 안되어 있게 되면 나중에 공동위원회에서, 아 우리가 와서 보자는 것만 보지 왜 딴 것을 불려고 그러니까, 하고 논란이 많아짐. 그러나 보라고 그러는 것을 보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보여줄 의사가 있다? 없다를 막론하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가 보는 이런 원칙을 채택하자는 것임. 그게 중요함.</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3차 - pp. 41~42)</p>	<p>뭐때문에 지정하느냐?』 이러니까 피차 우리가 지정하면, 『지정한 것 보여야 되는데, 왜 지정한 것 안 보이냐, 신의주 가보겠다고』 이렇게 되면 이거 불필요한 문제를 상정시키지 않겠는가?</p> <p>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를, 여기서 규제하는 것을 피하자는 것임.</p> <p>그래서 귀측이 정 이것을 이렇게 대상 문제에 대한 것, 만약에 우리가 타결 안 되면 이제 이렇게 하면 안되겠는가? 『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쌍방이 합의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놓으면 안 되겠는가?</p> <p>대상에 대한 것은 핵통제위원회에 넘기기로 하고 하여간 우리가 타결책을 찾는게 좋겠다고 봄.</p> <p>우리는 이렇게 신축성 있게 다 내놔요. 상대측이 지명하는 그와 같은 불합리 하다는데에서 이야기 하는데 왜 임대표는 계속 주장하는지 이해가 잘 안감. 그 대상이라는게, 그러나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남쪽에서 이것을 해당하는,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대상에 안 속하는 것을 자꾸 보겠다고 하면서 불집을 일으킬 수 있음.</p> <p>그것 우리 절대 응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빼자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3차 - p. 41~42)</p>

우 리 측	북 측
<p>최대표 말씀은 지금 신축성이 아니라 축축성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너무 줄이다 보면 남는게 아무것도 없음. 그레가지고는 그 조항이 살아남지 못함.</p> <p>이 『상대측이 선정하는』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독창적으로 내놓은 표현이 아님. 아까 내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INF조약에도 있고, 국제적으로 지금 통용되는 모든, 특히 핵관계 감축조약에는 반드시 상대방이 선정하는, 소위「인스펙팅 사이드」(inspecting side)가 저쪽에 「인스펙티드」(inspected), 그 사찰을 받는 쪽의 사찰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아침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신뢰구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다. 또 그것이 사실은 국제핵감축협상의 사실 본질을 이루고 있음.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표현은 그 표현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결과가 중요한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런 표현 때문에 안심을 하게 된다 이말임.</p> <p>『아! 그만큼 성실하게 나온다』 그러한 뜻에서 이 『상대측이 선정하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은 아침 회담때도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상대측이 선정하는』하고 그 다음에 『해당 대상하고』해가지고 내가 조금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있음. 착오를 일으킨 부분은 착오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취소를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취소하고.</p> <p>지금 이 문제에 대한 견해는 우리 임대표께서 말씀하신 견해가</p>	<p>국제적인 협약, 이런 검증, 무슨 신뢰에서 『상대측이 선정하는』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랬는데, 그런 표현을 쓴 것이 있음.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이행되는 가장 모범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없음. 그게 원래 제대로 안 됐음.</p> <p>왜 안 됐는가 하면 그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 된 것임. 무슨 국제적인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북남관계에서 토의하는 이 마당에서 꼭 무슨 남의 일 갖다가 여기다 넣을 필요는 없겠다, 이거야. 우리나라에서 핵문제에 관련한 사찰대상, 핵문제는 뭘 봐야 돼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속에서 명백히 다 계산하고 있음.</p> <p>그런 조건에서 앞으로 핵통제위원회에서 토론하게 되면 되는 것만큼, 저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찰을 실시한다. 하면 사실 통용될 수 있음.</p> <p>아까도 내가 이야기 했지만 사찰을 실시한다 할 척에 우선 대상이 선정됨.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고 그랬음. 내가 보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와서 바라 하는 것도 있고, 그 두가지 방법을 다 선정하는 의미에서는 구태여 무슨 거기다가 내가 선정하는 문제에서는 사찰대상 그다음에 사찰방법 있을 것이고, 사찰절차가 있을 것임.</p> <p>사찰에 어떤 인원을 동원 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임. 그런 것은 다 핵통제위원회에서 토론하면 됨.</p>

우 리 측	북 측
<p>전폭적으로 옳은 견해임. 또 나도 원래가 그것이 옳은 견해이기 때문에 요전에 그러한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니깐 옳은 견해는 옳은 견해에 입각해서 신중한 검토를 같이 하자.</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3차 - pp. 43~44)</p> <p>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 더 짚어 들 것은 우리 최대표께서 이제 북에는 영변 한 군데가 있고, 남에는 많이 있다고 그러시잖아요.</p> <p>우리가 이 공동선언을 만든 목적은 비단 영변에 국한시켜서 또 남쪽에 지금, 북측에서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몇가지 시설, 이것만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p> <p>이것은 우리가 미래에 대비해서, 미래에는 어떤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약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하는데는 의미가 없다, 사실은 의미가 없음.</p> <p>그 미래, 불특정, 어떤 불특정대상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약속을 해 두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있는일, 또는 과거에 있었던 일만을 가지고 이 약정을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이미 그 약정은 의미가 없는 약정이 되는 것임. 그러니까 미래에 대비해서, 우리가 안심을 하고 우리 후손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항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으나, 그렇게 볼 때에 우리 김대표가 말씀 하셨지만 사실은 『상대측이 지정하는』이라고 하는 그 사찰 대상에 관한 표현은 내가</p>	<p>우리가 선언이기 때문에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진행하고 다른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데 거기에 무슨 모순점이 있으면 말씀해 보기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3차 - pp. 44~45)</p> <p>우선 내가 하나 유감스럽게 생각하는게, 이동복선생이 휴식하기 전에는 『상대측에서 선정하는』 이것을 뵈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휴식하고 돌아와서는 이것을 자기가 잘못 생각했는데 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한데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유감스럽게 생각함.</p> <p>무슨 국제 조약에 어떻게 있든 관계없이, 이것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염두해 두는가. 우리가 이미 5차북남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데, 거기 내부문제 불가침 있지 않은가. 잘못했다가는 그 조항에도 저촉돼 가지고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음. 잘못했다가는 그 조항에도 저촉돼 가지고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음. 복잡해 질 수 있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지금 남쪽에서 미국의 핵무기가 다 나갔다는 소리는 없지만, 하여간 핵무기가 없다고 부재선언 발표했고, 또 우리도 국제조약상의 의무에 따라서, 우리 국제원자력사찰 받을 것은 받자했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양쪽에서 이렇게 다 할 것 같으면, 이 비핵화문제에서 크게 문제시 될 것 없음.</p>

우 리 측	북 측
<p>기억하기에는 그 INF조약의 핵심부분임.</p> <p>그 INF조약이라고 하는것은 지금현재, 핵감축협상에 관한 결과로 만들어진 조약임. 그래 이것은 성공적인 조약임. 성공적인 조약이 될 수 있도록 만든 핵심적인 조항의 하나다 하는 것을 좀 참고하시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3차 - pp.45~46)</p> <p>지금 최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문중에서 이제, 오전회의에서 내가 얘기했던 그 부분하고 좀 변화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시하시는 부분은 제가 그것은 접수함. 유감스럽게 생각함.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상대측이 선정하는』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 담겨져 있는 뜻은 지금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함.</p> <p>또 이것이 과거에 다른 소위 무기감축협상에서, 무기감축협상들이 성공적인 작품을 생산 못한 반면에 INF조약 같은 것은, 성공적인 작품이 될 수 있었던 여러가지 요인중에 한 요인이 바로 이 표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음.</p> <p>그런데 가령 이제 북측에서, 『상대측이 선정하는』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우리는 바라는데 그 정신을 받아 들어가 지고 연구를 한번 해주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3차 - p. 48)</p>	<p>그런데 우리가 그만치 『상대방이 선정하는』이와같은 조항에 대해서는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핵통제공동위원회 있으니까, 이렇게 넘기자고 하는데 굳이 그것을 꼭 넣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선언을, 초안을 합의 안 하자는 것과 같지 않은가?</p> <p>우린 그 문제 그만치 놓지 말자는 건데. 이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자꾸 내부문제에 간섭하는 것처럼 되고, 핵통제위원회에서 오손도손 잘 토론할 수 있는 것도, 이 조항을 들일대면서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이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은 결과가 초래되면 안되겠다고 봄. 그래서 우리 대표들이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타결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임.</p> <p>그래 우리 첫째 조항에 다 규제돼 있지 않은가. 첫째 조항이라는 게, 자 이것 제조하지도 않고, 접수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고, 저장하지 않고, 배비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첫째 조항에 기본원칙적인 문제 다 포함돼 있음.</p> <p>이렇게 된건데 여기다 꼭 『상대측이 선정하는』 이것을 넣자고 계속 이렇게 주장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러면 거기 합의한대로 그 조항 그부분을 들어내고, 쌍방이 합의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한다고 이렇게만 넣어도, 나머지 조항과 결부시켜 놓고 보면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p> <p>여기에 대해서 저는 뭐 국제적으로 어떻다느니, 국제적으로</p>

우 리 측	북 측
<p>좋아요. 그대로 하자.</p> <p>(비핵화 3차 - p.81)</p>	<p>적용되는 것은 적용되는 것이고 북남관계에서, 같은 민족내부문제인데 내부에서 적용되는, 적용하고, 또 핵통제위원회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 일임할것은 일임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왜 그것을 자꾸 강조하느냐. 그래가지고 무엇이 타결되겠느냐 하는 것임.</p> <p>(비핵화 3차 - pp. 46~48)</p> <p>절충안을, 또 하나 내지. 난 이거 남쪽에서 꼭 하라는대로 하니까 이게 또. 잘좀 들어 보시고, 이번에 내놓는 안에 대한 건, 이거는 또다른 이유를 붙이지 말고 그대로 그저 해나가자.</p> <p>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난 양쪽에 대한 것 다 이렇게 받아 들여 가지고 앞부분은 같음. 『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같고 그다음에 『상대측이 선정』 이걸 넣었음. 『상대측이 선정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게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토론해야 되겠으니까 될 협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일방적으로 하면 안되니까 협의를 해야 되겠으니, 이런거를 염두해 두고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북남 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가, 이걸 어차피 하게 될 과업임.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이렇게.그러니까 상대측이, 대상은 상대측이 선정한다.</p>

우 리 측	북 측
	<p>그런데 여기서 쌍방이 토론해가지고 합의한 다음, 합의 안되면 안되겠어요. 합의하고. 이러한 대상들에 대해서 또 핵통제위원회가 절차와 방법을 토론하겠으니까, 여기서 토의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사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그 귀측이 주장하는 『상대측이 선정한』는 것.</p> <p>이걸 여기다 우리 대쪽 양보해 넣었음.</p> <p>그래서 이런식으로 타결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임. 이제 전문가들이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머리 끄덕끄덕 했음.</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3차 - pp. 78~79)</p>

라. 발효문제

우 리 측	북 측
<p>마지막 항에 발효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앞으로 열릴 6차회담에서 서명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 다시 문본을 교환해야 한다면 사안의 긴급성에 비추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것을 좀더 빨리 발효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볼직하다 하는 것이 귀측이 제의한 안에 대한 우리들의 평가임.</p> <p>우리의 5항은 귀측의 6항과 같은 것으로서 단지 『빠른 시일내』라고 귀측이 규제하고 있었던 것을 『1개월 이내』라고 기간을 명시한 것이 다를뿐임.</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2차-p.19)</p>	<p>우리 6항은 『북과 남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이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빠른 시일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그런데 차이점은 우리는 『빠른 시일안에』, 귀측은 『1개월 이내에』. 그래서 「1개월로」 하자. 『1개월 안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공동선언의 리행을 위하여』 『이 공동』의 「이」자를 귀측에서처럼 「이」자 빼겠음.</p> <p>그러니까 『이 공동선언의 리행을 위하여 이 공동』의 「이」자 우리는 있고 귀측은 없는데 우리 크게 양보해서 빼겠음.</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2차-pp.62~63)</p>
<p>발효에 관련된 조항은 근본적으로 귀측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제기하는 것은 서명할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시키자, 이것을 위한 비준절차가 그렇게 복잡할 것도 없고, 꼭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양 총리간에 서명하여 즉각 효력을 발생시키도록 하자 하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2차-p.21)</p>	<p>우리 공동선언 7항에 『이 공동선언은 북과 남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음. 그래서 귀측에서는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p> <p>우리는 이 비핵화 문제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선언에 대한 비준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도에서 우리는 비준절차를 갖다놓은 것임.</p>

우 리 측	북 측
<p>발효와 관련해서 한가지 제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6차 고위급회담, 평양에서 열릴 6차 고위급회담까지 이 발효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속히 발효시켜서 핵통제공동위원회도 가급적 다음 평양회담 이전에 발족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의사임.</p> <p>그 방법 중에, 이것은 우리가 서로 연구해서 검토할 문제입니다만, 하나의 간단한 시안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남북총리가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서명하고 대표접촉을 통해서 문본을 교환함으로써 발효케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2차-p.23)</p> <p>우리의 경우는 이것이 어떤 협정의 형식, 국가간의 조약의 형식, 이런 조약은 반드시 비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지를 나타내는 선언임.</p> <p>그러나 물론 효력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발효에 필요한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님.</p> <p>북측도 아마 비슷하지 않나 해서 조속히 실현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가 수정제안했던 것임.</p> <p>우리가 남북간에 수도 없이 많은 합의서를 생산할 것임. 앞으로도 수도 없이 많은 합의서를 생산할텐데. 우리가 「남북사이의 화해와</p>	<p>총리들이 수표한 날, 서명해 버리는 걸로 발효가 되고 이렇게 되기는 무리가 있고 이런 상황임.</p> <p>그래서 여기다 비준절차를 거쳐야 되겠고, 이미 합의서에 대한 것도 비준했지만 우리는 서울 갔다온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지난 26일에 이야기 했지만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에서 연합해서 비준하지 않았는가.</p> <p>그러나 이와같은 해당한 비준절차는 거쳐야 되겠고 그래서 총리가 서명하는 것만으로 안되겠고 이래서 넣은 것인데 남측 사정도 제 생각에는 이와같이 비준절차를 거쳐야 싶지 않겠느냐.</p> <p>그레가지고 총리가 혼자 해놓은 다음에 비핵화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이러쿵 저러쿵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남측에서 해당한 비준절차를 거치고 우리도 거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공동선언을 이행하는데서 서로 좋고 이렇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넣은 것임.</p> <p>그래서 이렇게 조문을 하나 설정해 넣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임. 다른 의도 없음. 이렇게 어떤 해당한 법적절차를 거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히려 공고하게, 비핵화 공동선언이 중요한 선언인데 이것을 북과 남이 법적으로 고착시켜 놓고 이렇게 해야지, 총리가 혼자 수표해 놓은 것이 되겠느냐 이런 상황이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2차-pp.64~65)</p>

우 리 측	북 측
<p>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사실은 일종의 아주 기본적인 합의서란 말임. 이것을 쌍방이 각기 정중한 그런 비준절차 또는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통해가지고 모셔 놓으면, 그 다음에 이것은 거기에 파생되어 나오는 부속합의문서인데 그 부속합의문서 나올 때마다 복잡한 발효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하는데 대한 많은 회의가 있음.</p> <p>그래서 우리가 소위 기본적인 문건이 그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아주 정식으로 그것도 우리가 조약이나 협정으로 하는 것이 아님. 조약이나 협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남쪽에서도 말이 많음.</p> <p>이것은 조약이나 협정에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또 이것이 여러가지 민족의 여러가지 운명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정중하게 다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비준절차에 준하는 절차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주 궁박한, 궁색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음. 그런데 매사에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그런 뜻임.</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2차-pp.65~66)</p>	<p>앞으로 합의서 채택될 것이 있음. 거기에 따라서 세계 분과위원회가 나오는데 정치분과, 군사분과, 협력교류분과 여기서 토의해서 제기되는 합의서 이것은 대부분이 본회담으로 통하게 되어 있음. 뭐 본회담에서 제기되건, 총리회담에서 제기되건 여기서 할 수 있는 성격문제가 좀 많을 수 있음. 이것은 분과위원회 성격이 아님.</p> <p>첫째는 앞에 동북선생이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다. 그것은 분과위원회 거기에서 토의되는 문제들, 거기서 많은 합의서가 나와야 되겠는데 그 내용성격에 따라서 비준절차를 안 거치고 총리들이 제기해서 비준하면 발효될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동감임.</p> <p>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이렇게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것도 아니고, 이 핵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긴급사항으로 우리가 북남 4차 고위급회담에서 긴급사항으로 제기했던 것이고 또 남쪽에서는 5차회담때 긴급제안으로 제기했던 것이고 이렇게 제기하지 않았는가?</p> <p>매우 중대한 문제로, 민족의 생사운명과 관련되는 문제로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문제를 제기했던 말임. 이와같이 민족의 생사운명과 관련되는 핵문제와 관련되는 것인데 이것을 총리들이 서명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이것은 어느모로 보나 타당성이 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협의를 해 봤는데 이것은 사실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p>

우 리 측	북 측
<p>이게 절대로 우리가 무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점에도 상당히 합리적인 설득력이 있음. 그러니까 조금 더 연구해 볼 테니까 한번 더 연구해 보기 바람.</p> <p>(비핵화 2차-p.67)</p>	<p>비준절차를 거쳐야 되겠다. 우리도 협의를 해 봤음. 이러저러한 법 조항도, 그런 문제를 우리가 비준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떤 것을 비준절차를 거치겠느냐 이렇게 제기됨. 그러니까 연구좀 해 보기 바람.</p> <p>(비핵화 2차-pp.66~67)</p> <p>그것은 질문해도 내 권한에 안 속하고, 해당부문에서 절차를 거치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무슨 시간이 많이 걸리리라고 생각하지 않음.</p> <p>우리가 이번 합의서도 아주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역사적인 합의를 채택했는데 덩동맹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회담도 아주 서둘러서, 사실 우리가 이것 당정간에 조정해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 비준절차 거치는 것 무엇 때문에 해를 넘기겠는가. 상당히 서둘러서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p> <p>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이게 얼마나 시일이 걸리겠는가 그것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좌우간 해당한 우리 부문에서 하겠는데 그러나 많은 시일이야 걸리겠느냐 이런 생각임.</p> <p>우리는 이제 말하자면 핵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고 북과 남 사이에 논쟁거리가 되는 문제고 이게 쟁점인데 이것을 총리서명으로 효력을</p>

우 리 측	북 측
<p>우리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가급적 빨리 효력을 발생했으면 하는 뜻으로 이렇게 표명한 것이고, 귀측은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랬는데. 이것은 귀측의 안에 우리 동의하겠음.</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3차—pp.63~64)</p> <p>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문본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되, 한가지 전제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제6차 평양고위급회담 때는 발효시키도록 하자 하는 것임. 늦어도 2월 18일, 공동선언을 평양고위급회담 때는 발효시키자 하는 것임.</p> <p>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전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그전에 당장 순서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음.</p>	<p>발생시키자. 이것도 남측도 그렇게 나는 설득시키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음. 나도 북에서 설득이 힘든데 그것은 조사해 봤음. 어떤 사람은 『빨리한다는 의미에서 좋습니다. 아, 그게 민족의 생사와 운명이 관련된 문제인데 그게 총리가 서명을 해가지고 그게 발효가 된다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함.</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2차—pp.67~68)</p> <p>『이 공동선언은 북과 남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여기에는 동의하신다는 것 인가?</p> <p>그 다음에 이제 총리들이 언제 서명을 하는가 하는 문제임. 여기서는 우선 동의하시니까 그렇고, 전 지금 그런 상황을 말씀들였는데 제 생각은 이 조선반도의 비핵화 문제가 상당한 정도로 중요한 문제 아닌가, 그런데 이것을 총리들이 이렇게 뒤에서 앉아서 수표하고, 또 판문점 교환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겠느냐.</p> <p>이것은 제6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이번에 서울 나갔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서명한 것처럼, 회담에서 정중하게 우리 내외 인민들 다 지켜보는 가운데 서명하고, 이렇게 하는게 이게 여러모로 보나 옳지 않겠는가.</p>

우 리 측	북 측
<p>오늘 우리가 합의를 본다는 가정하에, 합의를 보면 가서명을 하고 나면 양측 총리가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서명하고 그리고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그리고 2월 18일 평양회담때에는 2월 19일인가? 평양 회담때에는 이것을 발효시키자. 우리 기본합의서와 함께 하는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비핵화 3차-p.64)</p> <p>6차 본회담을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함. 그 다음에 7차 본회담을 언제 할런지 우리가 지금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됨. 그것 뭐 또 두달후에 될지, 한달후에 될지 석달후에 될지 모름.</p> <p>그러나 통상 고위급회담의 성격으로 봐서 2개월 이전에 열릴 가능성은 적음. 대개 빨라봐야 2개월 아니면 3개월 후에 열릴텐데.</p> <p>그 다음에 비핵화공동선언을 지금 최대표께서 말씀하시는 식으로 발효시킨다고 하면 본문이 교환돼야 발효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최대표 말씀대로 하면 이 다음 회담에서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쌍방이 효력에 필요한 절차, 그것은 뭐 각기 다릅니다만, 그래가지고 문본을 교환하게 되면 그 다음 회담으로 넘어간단 말임.</p> <p>그럼 그 다음 회담이 7월이 될지,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 8월이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는 어려우리라고 생각함. 그러니까 이게 평양회담에서 이 문서가 각광을 받아야 된다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p>	<p>또 그것은 우리 대표접촉의 성격과 사명을 놓고 봐도 우리는 6차 고위급회담에다가 이것을 제기하기 위해서 한다고 합의된 것은 없지만, 그러니까 제5차회담에 나갔을 때에는 6차회담전에 특히 12월 31일 전에 빨리 대표접촉을 하고, 그래서 6차회담에 넘길 것을 전제로 하고 시작한 것이 아닌가.</p> <p>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명을 그것 며칠동안 앞당긴다고 해서 뭐 되는 것, 그렇게 한다고 해서 특별한 그런 것도 그런 거구요.</p> <p>그래서 우리 본회담에 그 의의를 부여하고 또 이 문제라는게 매우 북과 남의 온겨레가 중시하는 문제인데 본회담에서 서명하고 이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p> <p>그냥 발효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발효는 우리는 그저 합의서는, 우리쪽에서는 이미 5차 고위급회담에서 채택한 합의서가 우리쪽에서 벌써 다 비준되지 않았는가. 남쪽에서는 아직 비준 못됐지만, 비준절차 거치지 못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비준절차를 거치는 거는 걱정하시지 말라는 말임.</p> <p>우리가 이번 합의서 비준절차를 거치는 것은 우리 벌써 다했음, 26일날. 그렇기 때문에 하시지 말고 이 비핵화선언이라는게 몇십년동안 핵무기를 가지고 북과 남이 여러가지 이렇게 이야기 해오던건데, 본 회담에서 서명하는게 여러모로 보나 이와같이 중대하겠단 이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3차-pp.64~66)</p>

우 리 측	북 측
<p>이견이 없음.</p> <p>그 사실 지난번에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대한 서명이 서울회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서울쪽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었음. 그것 참 평양에서 된 것 보다는 서울에서 이루어진게 아주 즐거운 일이었던 말임. 또 기억에 남는 일이고.</p> <p>따라서 평양에서 회담이 열릴때, 물론 거기서는 발효되는 과정이 또 있겠지만 비핵화공동선언이 평양을 주무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함.</p> <p>그런데 그 방법은 서명은 거기서 안해도 돼요. 서명을 가령 1월중에 날을 우리가 가려가지고, 우리 총리가 그 문본을 만들어 가지고 서명을 해서 판문점에서 교환해 가지고, 한번 다시 서명해 가지고 한번 더 교환하고. 그 다음에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단 말이지.</p> <p>그러고 6차 본회담에서 문본을 교환하면서 발효시키면 평양에서 얼마나 빛이 나는가?</p> <p>이 핵문제라는 엄청난 문제에 관해서 평양에서 이것을 갖다가 그야말로 발효시키는게 그게 옳지, 우리가 지금 문명까지 다 합의해 놓고 앞으로 두달동안 묵였다가 겨우 6차회담에 가서 서명한다.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석달이 될지 념달이 될지 모르는데, 발효에 따른 절</p>	<p>그 문제를 미리 요 전번에도 제기해 줬으면 우리 발효시키는 것 있지 않은가. 비준하는 것. 비준절차를 우선 거쳐야 발효되지 않겠는가. 요전에 내가 이야기 했지만, 비준절차 거치는 자체는 제 자체의 소관이 아니니까 그것은 해당부문에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p> <p>요전에 그 문제를 명백히 해줬으면 올라갔을 때에도 이렇게 거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문제를 협의해 가지고 왔겠는데. 그렇게 돌발적으로 제기하는 것, 내가 여기서 비준절차도, 비준절차에 대한 것. 요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것은 이번처럼 중앙위원회 상설회의에서 연합회의에서 하는 것도 또 최고인민회의에서 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도 있는 건데.</p> <p>예를 들면, 그렇게 하자 하게 되면 이제부터 1월달하고 2월 이것 지금 한달 반 있지 않은가? 한달반 동안 비준절차 되겠는가, 못 되겠는가 하는 문제들도 좀 상관될 수 밖에 없겠음.</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3차-p.69)</p>

우 리 측	북 측
<p>차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를 때에 가서야 이게 발효가 된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 비핵화공동선언을 어떻게 취급하겠는가?</p> <p>악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악의적으로 해석할 것이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음. 그러니까 평양회담을 빛나게 만드는데 우린 찬동함.</p> <p>빛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비핵화공동선언을 반드시 평양회담에서 발효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탄생이 돼야 된다 하는게 우리 입장임.</p> <p>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봄.</p> <p style="text-align: center;">(비핵화 3차-pp.66~68)</p> <p>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음. 왜 받아들일 수가 없느냐 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그러함.</p> <p>우리가 이미 핵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지금 민족의 운명과 관련해서 참 요란스럽게 이 문제를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서둘러서 이걸 했는데, 오늘 문안을 거의 확정하면서, 문안을 확정해 놓고 오늘부터 2월 19일까지면 거의 달포가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때 가서 서명 한다고 그러면 뭣하러 지금 이걸 하고 있느냐 말인가.</p>	<p>절충안 하나 좀 내겠음. 귀측에서 이 공동선언을 빨리 발효시키면 좋겠다. 이와같은 의사인데 우리도 뭐 빨리 발효되는 것 나쁘지 않음.</p> <p>그렇지만 이미 얘기했지만, 서명하는 것만은 의의를 부여하기 위해서 총리들이 본회담때 하는 거 어떻겠느냐 이거고. 그렇다면 절충해서, 우리 6차회담에서 총리들이 서명하고 가장 빠른 시일안에 우리 비준절차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p> <p>가장 빠른 비준 서류 해가지고 대표들이 판문점에서 그 문분을 교환한다. 희망도 고려해서 7차회담에 가서 발효시키고 그렇게 되는데</p>

우 리 측	북 측
<p>또 이것이 귀측에서 잘 짐작하고 있을텐데, 이게 남북간에 지금 여러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사항들하고 맞물려 있음.</p> <p>그걸 갖다가 이렇게 처리하면 전체 구도가 깨져 버린다 말임. 전체 구도가 깨지니까 그 책임을 귀측에서 질 수 밖에 없음.</p> <p>(비핵화 3차—pp.74~75)</p>	<p>아니라 문본교환을 판문점 대표들 사이에 빠른 시일내에 해치우고. 이렇게 하게되면 쌍방의 의사가 다 충분히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p> <p>(비핵화 3차—pp.73~74)</p> <p>2월 18일날에 양측 총리들이 6차 본회담에서 서명하면 이제처럼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평양회담을 빛을 낸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총리들이 본회담 개최하고 민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표하는 게 좋음.</p> <p>발효가 대단히 늦어질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번 합의서 발효시일을 놓고 보면, 사실상 우리가 13일날에 서울서 돌아왔는데, 24일날이 그제 우리가 6기 10차 당중앙회의 전원회의 했음. 이렇기 때문에 불과 우리가 한 10일도 넘지 못했음.</p> <p>그리고 잇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했기 때문에 그 무슨 크게 문제점이 없었음.</p> <p>그렇기 때문에 무슨 발효가 2월 18일날 한다고 해서 한달이나 두달이나 크게 늦어질 것 같지 않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2월 18일날에 역사적으로 평양에서 서명을 하게 하고 가장 빠른 기한내에, 대표들이 판문점에서 문본 교환한다면</p>

우 리 측	북 측
<p>그 문제는 이 비핵화공동선언을 끝내놓고 그 문제는 토의하자. 그 문제는 토의해서 우리가 토의할 수 있는 상당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함. 그 기반위에서 토의하자.</p> <p>그러면 지금 최대표께서 걱정하시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성과있는 토의를 할 수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3차-p.85)</p>	<p>크게 거기서 무슨 사항이 달리질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함.</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3차-pp.75~76)</p> <p>지금 귀측에서는 우리가 내놓은 핵공격을 가상한 군사연습을 하지 않을데 대한 문제있잖은가. 이것하고 귀측 5항하고 같이 들어내자, 이 쪽에 타결되는 조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귀측에서는 지금 귀측이 제기했던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절차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아닌가?</p> <p>우리는 반면에 이 팀스피리트 연습때문에 매해 대화앞에 장애가 조성되고, 이런 문제되는거 우리가 잘 아시지 않는가?</p> <p>그렇다면 우리가 7항에, 현재 7항으로 되어 있음. 7항에 대한 걸 이렇게 양해가 되면 그쪽 것도 우리가 매해 우려가 돼가지고 북남대화가 몇달씩, 반년씩 중단되는 결과가 초래됐는데,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와같은 것은 고려할 수 없겠나 하는 문제가 있음.</p> <p>이것 빨리 발효만 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한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좀 요번에 견해 좀 듣고 싶음.</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3차-pp.84~85)</p>

우 리 측	북 측
<p>지금 우리가 어떤 시점에 와있느냐 하면, 남아 있었던 4항, 5, 6항 그 다음에 귀측 5항, 우리 6항, 그 다음에 우리 6항, 귀측 7항의 그 발효조항 해가지고 이제 다 끝났으니 7항이 남았는데, 7항을 우리가 남겨 놓을 때에 5, 6항 해결문제와 관련해서 7항을, 우리측 안을 받아들여 주시다면 5항, 6항 문제에 대해서는 귀측의 의사를 존중해서 처리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됐음.</p> <p>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축되고 있는 신뢰의 바탕 위에서 생각한다면 이 7항은 우리측 안을 받아들여 주시는 방향으로 논의가 다 끝났단 말임.</p> <p>그런데 지금 새삼 무슨 문제가 나왔냐 하면 팀스피리트 문제가 나왔음.</p> <p>팀스피리트 문제는 같은 결과로 가더라도 우리가 좀 질서있게 할 필요가 있음.</p>	<p>거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고 하나까 7조 발효문제에서 우리가 그쪽의 의견을 고려하는 조건에서 팀스피리트 문제를 그와 결부시켜서 우리에게 그 어떤 담보를 줄 수 있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좀 고려해 보겠음.</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3차-p.85)</p> <p>다시금 내 명백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평양 본회담에서 왜 수표를 하자고 하는가. 핵문제는 우리가 원래 4차회담때 비핵화에 관한 선언을 우리가 이 회담 의정에 원래 긴급제안으로 우리가 상정시켰음.</p> <p>이 총리회담 테두리안에서, 본회담에서 우리가 상정시켰던 그런 안임. 그후 서울 5차회담에서 그쪽에서 좀 때 늦기는 하지만 비핵화 등에 관한 무슨 선언을 우리에게 내놨음.</p> <p>이건 총리 본회담에서 다룰 문제라는 것 우리 같이 인식을 했다는 것을 말해 줌.</p> <p>그런데 우리가 6차회담을 앞둔 이 마당에서 핵문제를 다 다루는 대표접촉이 지금 진행됐단 말임. 그렇기 때문에 명실공히 원래 수표는 본회담에서 하는 것이 좋음.</p> <p>그렇지만 지금 그쪽에서 빨리 발효시키는 문제를 내놨음. 우리도 발효를 빨리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없음.</p>

우 리 측	북 측
<p>그 문제는 상당히 축적된게 있음. 그러니까 그 축적된 바탕위에서 다뤄지면 되니까 그것은 7항을 결정하고, 그래서 비핵화선언 문제 매듭짓고 그리고 그동안 참 우리 사이에서 보다 더 여러 축적된 그 토대위에서 얘기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음.</p> <p>(비핵화 3차—pp.86~87)</p>	<p>그런데 우리로서는 서명을 본회담에서 한다면 그렇게 늦잠을 생각은 없음. 다만 의의가 있게 하고 본회담에서 정식으로 다루게 될 이 문제라는데 대해서는 그쪽에서 부인하지 못할 것임.</p> <p>그래서 평양에서 총리들이 서명을 하게 하고 그저 늦어도 일주일내 발효시키겠음.</p> <p>(비핵화 3차—pp.87~88)</p>
<p>내가 알기에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에 팀스피리트 문제하고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돼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서 대략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도 상당한 대화가 축적돼 있는데 왜 갑자기 그걸 갖다가 옆으로 밀어 제치고 이렇게 갑자기 혼탕을 만들어 버리면 그동안에 서로 신의를 가지고 말이지 얘기하던 부분은 어디가서 찾느냐 말임.</p> <p>(비핵화 3차—p.93)</p>	<p>핵문제와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가 이거는 4차회담 때 우리가 상정시켰던 문제다. 그쪽에서는 5차회담 때 우리에게 호응해서 내놨다.</p> <p>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본회담에서 다뤄야 될 문제다.</p> <p>그런데 우리가 6차회담을 앞둔 이 마당에 대표들이 접촉을 가진다. 이것은 6차회담을 위한 대표접촉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 성숙된 것은 6차회담 총리들이 회담탁에 앉아 서명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p>
<p>그 내용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임.</p> <p>오늘 우리가 문안조정을 끝내고 가서명을 하겠지. 그러면 각기 정본 두 통씩을 마련해서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내년 1월 4일쯤, 판문점에서 한쪽 총리가 자기란에 서명을 하겠지, 두 부를. 그래가지고 판문점에서 책임연락관간에 교환을 하면 우리쪽 문본 두 개는 그쪽으로 넘어가고 그쪽 문본 두 개는 우리한테 넘어 올 것임.</p>	<p>그런데 그쪽에서 발효를 빨리시키는 것이 의의가 있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성의를 발휘해서 일주일내로 하겠다. 이것을 우리가 명백히 했음.</p> <p>그러나 그쪽에서 자꾸 발효문제를 그쪽에서 강요한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 문제도 전반적인 조선반도의 정세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도 말하자면 중지한다 하는 담보를 우리 마주 앉은 네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어떻</p>

우 리 측	북 측
<p>그러면 가져와서 그쪽에서 만든 문본에 우리쪽 서명란에 우리 총리가 서명하고, 우리가 만든 문본에 그쪽 서명란에 연총리께서 서명하고 이래가지고 1월달 10일날 판문점에서 교환하자 그말임.</p> <p>그러면 도로 우리 문안 우리한테 돌아오고 귀측 문안은 귀측한테 돌아가는데 서명이 돼 있는거죠. 그것을 가지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밟자 그말임.</p> <p>발효에 필요한 절차가 밟아지면 2월 19일날 회의에서 이것을 가지고 문본을 교환함으로 해서 발효를 시키자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7항의 소위 이행방도임.</p> <p>그것을 우선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최대표가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합의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팀스피리트 문제하고 토의할 때 연계시켜서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지 않은가?</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3차—pp.94~95)</p>	<p>겠는가. 그말이야 간단한 말인데.</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3차—pp.91~92)</p> <p>팀스피리트가 솔직히 말해서 진행된다면 이 좋은 문건도 발효 못 시킴. 팀스피리트만 진행된다면 기본합의서도 발효 못 시킴.</p> <p>그렇기 때문에 이 발효문제가 팀스피리트훈련하고 별개의 문제가 아님. 특히 팀스피리트 문제는 우리 최대표가 다 얘기했는데 틀림없이 핵공격 훈련이다. 그러는 내가 설명하지 않음. 증명하지 않겠다 말임.</p> <p>여기 군사를 하는 분들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설명 안하겠음. 그렇기 때문에 팀스피리트훈련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핵공격훈련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둘째치고 팀스피리트훈련이 진행되기만 하면 우리가 오늘 한 공동선언문 발효가 못 된다. 합의서도 발효 못 된다.</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3차 — pp.92~93)</p> <p>하여간 팀스피리트를 명년도에 하지 않겠다는 것만 명백히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함.</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3차—p.95)</p>

우 리 측	북 측
	<p>그런데 말하자면 발효를 빨리시키자면 문제는 이제 나보고 자꾸 팀 스피리트 왜 관련이 없는 것 들고 나오냐 하는 얘기, 실제적으로 발효하고 팀스피리트는 관계돼 있음.</p> <p>이 문제를 진짜 내가 말하는 것 머리로 사고 제대로 안하면 큰 실수를 함.</p> <p>이 핵문제와 관련한 공동선언 발효하고 팀스피리트는 관련돼 있음. 기본합의서 발효도 팀스피리트하고 관련 돼 있음. 6차평양회담도 팀스피리트하고 관련 돼 있음. 팀스피리트와 관련된 우리 입장에서는 지난 시기와 지금이나 변함이 없음. 불변임. 내말을 똑똑히 듣고 발표해 주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3차-p.96)</p>

마. 수정 · 보충문제

우 리 측	북 측
<p>공동선언에, 아 이거는 제3자가 볼 때 우리가 무식했다는 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음. 좋은 일 하면서…….</p> <p>공동선언에는 수정, 보완 뭐 이렇게 안 들어감.</p> <p>선언을 조항이 아니고, 1조, 2조가 아니다 말임. 공동선언에는 1조, 2조를 넣지도 않고 협력조항도 없음. 과묵한 탓인지 모르지만 없음. 그 어디 예가 있는지 모르겠음.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선언적, 강령적 이런 것을 갖다가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무슨 이렇게 구속력을 갖는게 아니란 말임.</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3차-p.101)</p> <p>본래 이런 공동선언이라는 것은 정치적 선언을 말하는 것임. 언제나 수정 · 보완될 수 있는 것임. 그래서 거기에다가 일부러 그런 것을 넣지 않는다고 합의서, 조약같은 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됨. 그 조항이.</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3차-p.104)</p> <p>그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찬동하면서 내 하는 얘기니까, 더 모양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 반대하는 것은 아님.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둘이만 이불속에서 가지고 있는 문서가 아님.</p>	<p>이것 조항을 좀 따져보면 우리측도 그렇고 귀측도 그렇고 수정, 보충 조항이 지금 호상 빠졌음.</p> <p>그래서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서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이 조항 발효전에 그 안에 넣겠다고 그러면 저쪽의 모든 합의서하고 균형이 보장된다고, 그렇게 하나 넣자.</p> <p>이게 앞으로 전적으로, 아니 선언이라도 비준절차가 있으니까. 앞으로 발전적으로 또 정황을 봐서라도 그저 여기다 놓으면 뭐인가, 이 선언, 『이 공동선언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3차-p.100)</p> <p>이 선언은 아무래도 쌍방이 다 지켜나가야 되겠고, 이게 앞으로 지켜 나가는 과정에, 토론하는 과정에서 뭐 이것 저것 의견 제기된 것 있지 않는가, 앞으로 우리가 북과 남사이에 합의서 채택되고, 이것도 채택되고 하고, 분과위원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 북남관계가 많이 개선되지 않겠는가? 혹시 그러면 앞으로 수정할 일이 있으면 그때 또 수정, 보충해서 또 수정한 조항을 또 발표해 보이고 난 이렇게 여유가 있잖는가.</p> <p>그래서 우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언은 뭐 무슨 수정, 보충 있다</p>

우 리 측	북 측
<p>제3자도 보고, 세계에도 이것을 공포해야 되는데, 필요하면 유엔같은데 기탁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다 우리가 좋은 일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조인트 데클러레이션」(joint declaration)인데, 「데클러레이션」(declaration)에 수정, 발효 조항이 들어간다, 그러면 제3자가 볼 때, 이것은 시골 사람들이 어디서 이상하게 저희들끼리 쫓신 감발하고 촉구하다가 만든 규칙을 가지고 나온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할때 우리가 뭐라고 변명해야 되는가.</p> <p>(비핵화 3차—pp.103~104)</p>	<p>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우리 대표들이 합의하는 조항 있지 않은가.</p> <p>(비핵화 3차—p.102)</p> <p>지금까지 선언으로 양쪽에서 총리들이 다 제기한 건데 선언으로 제기했는데, 우리 다른 의도는 없다. 다른 의도는 없는데 이것을 하나 이렇게 넣으면 이 발효조항도 있으니까. 발효조항 앞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우리 북과 남이 국가들 사이에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p> <p>(비핵화 3차—p.103)</p>
<p>이러면 어떤가? 여기에 따른 공동발표문에서 이걸 밝히자. 공동발표문에서 『이 선언문의 내용에 대해선 앞으로 쌍방이 합의하는데 따라서 수정 보완할 수 있다』 공동발표문에서 하자.</p> <p>(비핵화 3차—p.105)</p>	<p>공동보도문에서 『앞으로 이 선언문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합의했다.』 『합의했다는 것』 그렇게 넘어가자. 그러면 그 조항은 그렇게 해서 이제 보도문에 넣도록 하자.</p> <p>(비핵화 3차—p.105)</p>

3. 기 타

가. 북측의 국제핵사찰 수용문제

우 리 측	북 측
<p>우리측은 지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귀측이 핵무기비확산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협정을 하루속히 체결하고 모든 핵관련 시설과 물질에 대한 전면적인 국제사찰을 받을 것을 촉구하였음.</p> <p>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야 함은 물론이고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어떠한 핵시설과 핵물질도 없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귀측이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바임.</p> <p>먼저 귀측은 아직도 미루고 있는 핵무기비확산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협정을 즉각 체결하고 국제핵사찰을 무조건 수락해야 한다는 것임.</p> <p>귀측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으로 이미 1985년 12월 핵무기비확산조약에 가입했으면서도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국제핵사찰을 거부함으로써 우리 7천만 겨레와 국제사회에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고 있음.</p> <p>우리는 귀측이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90여개 국가들이 한 것처럼 핵무기비확산조약의 가맹국으로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전면 핵사찰을 받아들이는 조약상의 의무를 즉각 이행하라는 것이며, 여기에는 아무런 조건도 결코 연계될 수 없고 또한 연계시켜서도 안된다는 점을 다시</p>	<p>우리가 지금 핵무기 개발할 의사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고 또 개발할 필요도 없고, 핵무기를 개발해야 우리는 써먹을 데도 없고, 이와 같은 입장을 명백히 밝혔는데 대화상대방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으면 그것을 믿어야지, 믿지 않고 이러쿵 저러쿵 횡설수설하고 걸고 들고, 이것은 아주 온당치 못한 이와같은 태도라고 명백히 입장을 밝힘.</p> <p>무엇때문에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진지한 해결방도를 내놓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근거없이 걸고 들고 이렇게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는 좋겠음.</p> <p>담보협정을 서명하고, 빨리 비준절차 거치고 사찰받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일관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을 그렇게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제원자력기구하고 우리 사이에 할 문제임. 또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와 우리가 해결할데 대한 입장을 이미 오래전에 밝혔음.</p> <p>그러면 담보협정 서명과 이 사찰문제가 왜 걸려 있는가? 남조선에 미국의 핵무기가 있고 핵무기가 철수하지 않고 2,000여개의 핵무기가 우리를 겨냥해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p>

우 리 측	북 측
<p>한번 명백히 밝혀두고자 함.</p> <p>다시 말해 귀측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며 모든 조치에 선행되어야 할 절대적 과제인 것임.</p> <p>또한 그것은 언제해도 좋을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민족생존을 위해서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나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하고도 최우선적인 과제인 것임.</p> <p>이와 관련하여 나는 귀측이 뒤늦게나마 지난 12월 22일자 외교부 대변인성명을 통해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고, 핵사찰을 받아들일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함.</p> <p>귀측이 이를 하루속히 실천에 옮겨 핵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고 완벽한 국제핵사찰을 수용하는 동시에 핵재처리 및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보다 공고해질 것이며 국제사회도 귀측의 평화지향적 자세를 평가하게 될 것임.</p> <p>그러나 귀측이 국제적 의무를 저버린 채 『핵없는 세계』를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에 계속 역행하거나 세계평화수호국가들의 충고를 끝내 외면할 경우에 직면하게 될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귀측 스스로가 책임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1차-pp.17~19)</p>	<p>못하고 지금까지 넘어왔다는 사실이냐 주지의 사실이 아닌가? 그런데 마치 이 문제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가?</p> <p>우리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해서 또 우리 인민에게 가하고 있는 핵위협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남조선에 있는 미군의 핵무기철수 문제와 병행해서 잘 해결해 나가야 우리 인민의 의사에 부합되고 또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해 온 것인데 이게 무엇이 잘못 됐는가?</p> <p>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움직이고 있고 또 귀측에서 핵부재선언을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근거해서, 원래는 미국도 당당하게 원칙적인 입장을 밝혀져야만,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와 이 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입장도 바로 22일에 밝혔는데 무엇때문에 구태여 오늘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는지 이해가 안됨. 그러면서 담보협정에서 즉각 철회하라느니 이러면서, 여러가지 불안과 공포에 쌓여있다는니, 이렇게 거론을 하는데 우리 입장이야 여러번 천명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합의서까지 채택된 조건하에서 대화상대방의 말을 신의있게 대하고 믿어야 되지 않는가?</p> <p>실사 다른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래도 북남사이에는 서로 믿</p>

우 리 측	북 측
<p>귀측이 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전조치협정 문안을 이미 합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 협정 서명은 즉각 시행이 가능한 것이므로 사안의 긴박성, 시급성을 감안하여 늦어도 내년 1월 15일까지는 귀측이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비준하여 발효시킬 것을 거듭 촉구함.</p> <p>(비핵화 1차-p.23)</p> <p>가장 중요한 또 시급을 요하고, 긴박한 문제는 귀측이 핵무기를 제조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속담에 『믿어라. 그러나 확인하라.』 이것이 아마 군축과정에 있어서 통용되고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뢰하라. 그러나 확인하라.』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그럴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면 사찰을 수용해 가지고 그것을 밝힘으로써 그런 의혹을 풀어야 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 이것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로 지금 남아 있음.</p> <p>물론 이 문제는 귀측하고 국제원자력기구하고 해결할 문제라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밖인 일인가.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음.</p> <p>이것은 만일 믿어야 되지만,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가 있다든가 능력을 건설해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7천만 민족의 생존과 한반도의 안보, 평화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우리가 모처럼 어렵게 합의해낸</p>	<p>고 그것을 진지하게 해결할 각도에서 해야지, 여기서 우리가 국제원자력기구와 해결할 문제를 우리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러면서 무슨 이거 한쪽을 보게 되면 모순된 이야기라 하는데 주한미군철거 문제 이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남쪽하고 미국하고 해결할 문제이다. 말하자면 내부문제라는 식으로, 그러면 어째서 우리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이에 해결할 문제인데, 이것 우리 내부의 문제인데, 왜 걸고 드는가?</p> <p>주한미군 문제는 한미사이에 해결할 문제다. 내부문제이기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와 해결할 문제를 어째서 이것은 우리 내부문제인데 그럼 왜 걸고 드는가? 이것은 또 옹당히 우리 북남대화에서 논의할 성격이 못됨.</p> <p>이런식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모순되게 풀고 나가면 안 되겠다는 것, 그러면서 발언에서는 마치나 우리와 국제원자력기구하고 핵담보 협정에 서명하지 않고, 비준하지 않고, 이거 사찰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기 핵문제와 관련한 접촉도 의의가 없는 식으로, 또 이미 북남관계에서 합의서가 채택돼서 새롭게 주요한 출발을 했는데 이 문제에도 무슨 걸릴 것 처럼, 이런식으로 거론하면서 하는 것이 아주 귀에 거슬림.</p> <p>오늘 대화는 합의서가 채택된 첫 대표접촉이기때문에 어떻게 되면</p>

우 리 측	북 측
<p>「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실현을 저해하는,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매듭을 짓고 넘어 가기를 원하는 것임.</p> <p>남북간에, 형제지간의 충고로서 이것을 빨리 해결하자. 해결해 주어야 한다. 이래야 다음 진전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했으니까 그것을 내정간섭이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아주기를 바람.</p> <p>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실상 들고 가고 싶은 얘기중의 하나는 지난 6월, 7월에 귀측은 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전조치협정에 관한 문안정리가 다 마쳐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지대사한테, 『서명을 즉각 하라.』고 훈령만 내리면 년내라도 서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것임.</p> <p>그 다음에 곧 비준이 되고 할 것 같으면, 핵문제에 대한 의혹을 푸는데 얼마나 좋겠느냐. 그리고 남북, 우리가 모처럼 합의한, 합의서 시행과 관련한 문제를 아주 가속적으로 진척시키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고, 만일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문제가 대단히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1차-pp.42~44)</p>	<p>대화상대방에 대해서 신의를 가지고 대하면서 해나가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아주 실망스러운 발언을 한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p> <p>우리는 할 것은 하겠다 그리고 못 할 것은 못하겠다는 것임. 얼마전 22일 외교부 성명에서 담보협정 서명문제와 사찰문제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혔음. 우리는 정부의 입장을 밝혔으면 밝힌대로 행동하는 것임.</p> <p>그런데 그와같은 성명내용에 대해서, 이제 발언내용을 들어보면, 다 알고 있는 모양인데, 알고 있으면서 무엇때문에 다시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문제임. 그러면 무슨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어쨌다. 무슨 이런 발언을 하면 되는가?</p> <p>이 문제의 시발점이야 남조선에 천여개의 핵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고 또 우리도 천여개의 핵무기가 지금 나갔다고, 뭐 나갔다는 소리는 안하고 핵무기는 없다. 나갔다는 소리는 없이 핵무기는 없다고 함.</p> <p>그것도 명백히 할려면 남조선에 핵무기가 얼마나 있었는데 언제 이렇게 나갔다, 그러니까 믿어주시요, 이렇게 해야함. 나갔다는 소리도 없이 핵무기가 하나도 없다. 사실은 의심을 하려면 우리도 의심할 수 있음.</p> <p>그러나 우리는 북남사이의 중요한 합의서가 채택됐기 때문에 이에</p>

우 리 측	북 측
<p>나는 지난 제1차 대표접촉에서 한반도의 핵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세가지 문제를 제시했고 강조했다.</p> <p>하나는 남북이 모두 핵무기비확산조약 당사국으로서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따라서 조속히 하루빨리 핵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고, 국제핵사찰을 받아들일도록 하자 하는 문제임.</p> <p>우리가 제기한 이 세가지 문제중 첫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귀측은 핵안전조치협정 체결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와 북측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며 이미 12월 22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서 밝혔듯이 멀지 않은 시간내에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임을 밝히고 또 많은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데 주목함.</p> <p>우리는 귀측의 이 발언을 믿고자 함. 다만 귀측도 잘 알고 있으리라 보고 봅시다만, 상황의 긴박성과 시급성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놓고 한가로이 논쟁을 일삼을 수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임.</p> <p>하루빨리 행동에 옮김으로써 우리가 이룩한 소중한 과실을 더 키워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강조함.</p> <p>우리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귀측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며 내정간섭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둬.</p> <p>이것은 우리의 공동관심사임. 7천만 민족의 생존과,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된 문제이며 또 남북관계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우리</p>	<p>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고, 믿고서 우리는 이것을 행동에 옮길 것으로 타산하고 있는 것임. 의례대로야 명백히 밝혀야함.</p> <p>그런데 이와같은 문제에 대해서 자체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무슨 담보협정 문제가지고 사태가 어찌니, 안되면 책임지라니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p> <p>그다음에 우리가 핵문제와 관련해서 명백하게 입장을 밝힐 것은 우리 외교부 대변인 담화에서도 명백히 밝혔지만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와 핵담보협정에 서명하게 될 것이고, 해당한 절차를 거쳐서 우리는 비준도 하게 되고, 사찰도 받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될 것임. 이것은 남측에서 핵부재선언을 발표한 것을 믿고 우리는 이렇게 하자고 생각하는 것임.</p> <p>물론 미국이 핵무기 주인인것만큼 미국이 입장을 밝혀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남쪽의 이와같은 주장을 믿고 우선 하고, 앞으로 또 미국도 응당히 자기들의 입장을 밝히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행동에 옮기자는 것임. 이와같은 입장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 이것을 강조함.</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1차—pp.27~31)</p> <p>담보협정을 서명하고 어떻게 하고 하면서 이걸 1월 15일까지 해야</p>

우 리 측	북 측
<p>가 마련한 합의서 채택 가능 여부와도 관련된 문제이고, 또 한가지 추가해서 말한다면 모든 핵무기비확산조약의 당사국들은 다른 당사국들에 대해서 핵안전의무를 촉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함.</p> <p>이 문제에 대해서는 귀측이 하루속히 행동으로 옮겨 줬으면 하는 우리의 간절한 요구를 유의해 주시기 바람.</p>	<p>되겠다. 아니, 무엇을 우리가 담보협정, 국제원자력기구와 할 것, 남쪽에서 날짜를 찍습니까? 우리하고 국제원자력기구하고 해결할 문제지. 이렇게 남의 내부문제에 이렇게 간섭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는가?</p> <p>1월 15일까지 하라. 안하면 안된다. 이렇게 우리 내부문제에 막 그 저 개입하는 것이 어디있는가?</p>
<p>(비핵화 2차-pp.16~17)</p>	<p>(비핵화 1차-p.34)</p>
<p>6항, 『남과 북은 핵무기의 확산 방지에 관한 조약을 준수하고 북은 조속한 시일내에 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여 모든 핵관련 시설과 물질에 대한 전면적인 국제사찰을 받는다.』하는 조항임.</p>	<p>쌍무적인 관계로서 이게 공정하게 기재되지 못하고 우리 북에 대해서만 의무를 갖다 지우는 이런 조항으로 됐음.</p> <p>그러기 때문에 핵무기 확산방지에 대한 조약을 준수한다. 조약을 준수하는 거야 우리도 준수하고 남도 준수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것인데 여기서 『북은 조속한 시일내에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정을 체결하고』 뭐 어떻게 한다. 이것은 우리 이 합의서 초안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함.</p>
<p>(비핵화 2차-p.69)</p>	<p>이것하게 되면 다 중립적인 표현으로 북과 남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조항으로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함.</p>
	<p>이 조항은 국제적으로 지는 의무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국제핵전파방지조약에 들어갈 때 다 그 조약을 준수할 것을 다 생각을 하면서 들어간 것이고 남쪽도 그런 것인데 여기다가 그렇게</p>

우 리 측	북 측
<p>중립적인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기바람.</p> <p>(비핵화 2차-p.70)</p>	<p>넣겠느냐.</p> <p>또 이것은 왜 그러나하면 조선반도의 비핵화 문제는 선언이 채택되면 거기에 맞게끔 국제조약상 지는 의무는 더 잘 이행을 할 것이고 북과 남이 더 철저히 더 잘 이행하게 될 것이고 이런 문제도 포함 되겠는데 이렇게 북에만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런 것을 선언초안에 포함시킨다면 우리는 접수가 안된다 이런 것임. 그런 각도에서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임.</p> <p>(비핵화 2차-pp.69~70)</p> <p>그것은 중립적인 표현으로 넣을 문제도 아니고 이 비핵화선언과는 사실상 인연이 없음.</p> <p>아까 임선생이 담보협정 문제를 오늘 첫발언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귀측에서 명백한 이해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음.</p> <p>우리가 여러번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국제원자력기구와 핵담보협정 문제는 정중히 경청해 주기를 바람.</p> <p>우리가 자주적으로 최단 기간내에 매듭짓게 된다. 여기에는 우리 결심에서 혼돈이 없음. 그런 것만큼 귀측에서 그 무슨 상황의 긴급성 또 무엇이 걱정스러운 것처럼 하면서 어제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식도</p>

우 리 측	북 측
<p>이 비핵화선언의 문안문제하고 별개로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정, 서명, 비준, 발효해서 사찰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시범사찰 문제를 얘기했음.</p> <p>그 두가지 문제가 왜 나오느냐. 그것은 그동안 원인은 여러가지 있지만 그 원인이 여러가지 축적된 원인의 결과로 이것은 지울 수 없는 하나의 현실로서 남쪽의 4천 3백만 국민이 걱정하는 것이 있고, 세계가 지금 우려하는 것이 있단 말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떨어내줄 필요가 있음. 떨어 내주기 위해서 또 거기에 덧붙여서 북에서 남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의심과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아까 김대표께서 말씀하신 「계산」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말</p>	<p>있었고 오늘도 또 조문화까지 하자고 한데 대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음.</p> <p>실사 우리 자주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 그 모든 것을 우리 자체 힘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준비가 돼 있음.</p> <p>원래 거기서 우리를 잘 연구해서 아셨겠지만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임.</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2차-pp.70~71)</p> <p>핵문제와 관련한 위험한 시나리오까지 있다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시나리오에 남측이 배우질은 하지 말라. 그게 왜 그런가. 일단 우리는 우리 존엄이 훼손된다 할 때에는 그 시나리오를 만든 사람부터, 그 시나리오를 연출하는 사람부터 그 시나리오 출연 배우까지도 민족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계산하고자 함.</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2차-p.70)</p> <p>이제 이동복대표 말씀이 4천 3백만이 마치 우리 북에 대해서 무슨 핵무기를 생산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려하고 4천 3백만이 다 우려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남조선당국이 몇명 당국자들</p>

우 리 측	북 측
<p>하자면 같이 계산해서 그런 뜻으로 통해도 되는가?</p> <p>그래가지고 시범사찰을 한번 해가지고 아주 떨어버려라, 시범사찰을 1월 31일 전에 한번. 양쪽에서 제일 보고 싶은데가 있잖아요. 제일 보고 싶은데를 한군데씩 해가지고 보자 말이야. 봄으로 해서 아주 운산무소(雲散霧消)로 다 서로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을 떨어버리면 아주 맑은 하늘아래에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시범사찰을 갖다가 얘기를 했음.</p> <p>시범사찰을 들어 버리면 이런 문제가 다 필요없어 질것임.</p> <p>(비핵화 2차-pp.72~73)</p>	<p>이 우려를 말하자면 이렇게 표시하는 식으로 한다. 남조선 인민들이 뭐 우리가 핵무기 생산한 것처럼 우려하겠는가.</p> <p>내가 서울에 나갔을 때도 이사람 저사람 만나 봤는데 그렇게 생각 안함. 심지어는 내가 만난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생각 안함. 그래서 4천3백만 우리 인민들의 이름을 이렇게 갖다 걸부시키지 말라. 이것 내 명백히 함.</p> <p>이것 지금 자꾸 미국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춤을 추면서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게 있음. 이 문제 더 이야기 하지 말라.</p> <p>(비핵화 2차-pp.73~74)</p>
<p>귀측의 5항 『핵공격을 가상한 일체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을 하지 않는다』하는 것하고, 우리가 제시한 제6항 『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여 모든 핵관련 시설과 물질에 대한 전면적인 국제사찰을 받는다』이 두 항이 남아 있음.</p> <p>(비핵화 3차-p.49)</p> <p>이 5항하고 6항 하고는 사실은 서로 연계되는 조항들도 아니고 또 중요도 면에서도 5항하고 6항은 서로 그 성격을 달리하고, 5항은 그동안 누누이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남북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p>	<p>우리쪽에 없는게 귀측 6항에 들어가 있고 또 우리 초안, 우리 안 지금 5항에 있는게 귀측 안에 없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음. 다른 조항들은 지금 내용상 차이들은 좀 있지만, 조항상으로는 다 들어가 있음.</p> <p>그런데 지금 호상 없는 것은 지금 이것, 귀측 6항하고 우리 5항하고 이렇게 딱 호상 없는게 대입돼 있음. 지금 이 문제에 대한 것, 난 그저 남측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음. 이 문제에 대한 것, 어떻게 타결 하겠는가.</p> <p>그러나 명백한 것은 우리는 귀측 6항에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은 이미 2차에 걸친 대표접촉에서 입장을 밝혔지만, 이것은 우리가 공동선언초안에다가 넣어야 할 성격은 못된다.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는다, 다시 반복</p>

우 리 측	북 측
<p>관한 합의서』 12조 『대규모 부대 이동과 군사연습에 관한 통제, 통보』 조항에 의해서 이것은 앞으로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다뤄질 사안이다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조항이 들어갈 자리가 없음.</p> <p>그리고 이제 이 조항이 여기에 들어갈 자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조항이 지금 여기 설정돼 있는대로 하면 그 표현이 적절치 않다.</p> <p>그 다음에 이제 우리 6항은, 여기에 대해서는 소위 핵무기확산방지에 관한 조약에서 파생되는 국제조약상의 의무, 이것은 해당측과 그런 국제기구와의 사이의 문제다 하는 것 우리 동감함.</p> <p>그리고 비핵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쌍방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을 짓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도 인정함.</p> <p>그러나 왜 이 조항이 여기 설정되어 있느냐, 하는 취지에는 취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음. 그것은 우리가 지금 바로 이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문제를 가지고, 남북이 마주 앉아서 얘기하게 만드는 상황에 그 원인이 있다 그 말임.</p> <p>그 상황은 무엇이나? 물론 북측에서는 남쪽에 있다고 주장했던 미군의 핵무기 문제를 거론했지만 우리 입장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뭐냐? 지금 전세계가 어느정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걱정하는 상황이 북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p>	<p>될 수 있기 때문에 넣어야 될 성격은 못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저 들어내는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도이겠음.</p> <p>이것은 다른 그저 절충적인 표현으로 돌릴 성격도 못되고 4항 같은 것은 앞으로 절충해서 표현을 한다고 하고, 귀측이 제기한 6항은 다른 중립적이고 무슨 절충적인 이와 같은 표현으로 돌리기도 곤란한 문제고, 우리로서는 들어내는게 이 선언초안의 성격에 맞지 않느냐 이런 견해임.</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3차—pp.49~50)</p> <p>귀측의 6항 보십시오 『핵담보협정을 체결하여 모든 핵관련 시설과 물질에 대한 전면적인 국제사찰을 받는다』 이미 설명했지만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와 국제원자력기구와 해결할 문제인데 또 우리 해결할데 대한 입장을 밝혔고 국제원자력기구와 하겠다 하는 입장을 밝혔고, 이와 같은 문제인데 남측에서 왜 우리 대화상대방에 대해서 자꾸 내부문제간섭하는 식으로 나오느냐, 이것 이렇게 하면 안됨.</p> <p>그럼 여기다가 남쪽에 있는 미국핵기지, 군사기지에 대한 것, 다 나가 보자고 여기다 박아 넣을까요. 여기다가 말입니다. 여기다 박아 넣잡니까, 이렇게? 그럼 이것 보시라요. 이것 지금 한쪽 주장에 대한 것, 자기측 주장만 절대화하면 안됨.</p> <p>이것은 우리가 누누이 설명했음. 이것은 우리가 국제원자력기구와 해</p>

우 리 측	북 측
<p>지금 6년전에 이루어졌어야 될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서 그러한 어떤 여러가지 의혹과 불신이 증폭돼 왔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또 같은 민족으로서 뭐 사실 우리가, 우리 한반도, 조선반도, 남과 북이라는 것이 다 우리이겠는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 조항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우리가 지금 담은 것임.</p> <p>그런데 이 조항은, 이 조항이 여기 설정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여러가지 거기에 관련돼서 남북간에 이해가 돼야 될 문제가 있음.</p> <p>그 이해가 될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아직 덜 되어 있는 것 같음.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p> <p>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신중한 방법으로 다루어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신중한 방법으로 다루어오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게 아님.</p> <p>이해가 아직도 불충분하다 말이지요. 이해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여기에서 지금 계속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음.</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3차—pp.50~52)</p> <p>아니,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 될 바로 그 중요한 조</p>	<p>야 될 사업을 남측에서 들고 나오면 안됨. 특히 합의서에 엄연히 내부문제에 간섭않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발효가 안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합의서의 정신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식으로 우리도 들고 나오기 시작하면 합의점을 찾을 것은 아무것도 없음.</p> <p>그다음에 우리가 명백히 말한 것은, 우리가 정부의 입장을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지난 20일 입장을 밝혔는데, 밝혔으면 그것을 믿는게 좋다. 이미 다 강조했다.</p> <p>그 다음 뭘 강조했다는가, 우리는 할 것은 하겠다 하고, 못할 것은 못 하겠다 하고 주체적으로 해결한다. 해결하는데는 우리가 이 문제와의 관계는 명백히 해결 하겠다는 입장을 남측에서 핵부재선언을 발표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올렸음.</p> <p>그런데도 계속 여기에다 이 조항을 넣어야 된다 하는 것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게 이해가 안감.</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3차—pp.52~53)</p> <p>아무리 좀 불신이 지난 시기에 두터웠다고 하지만 우리가 대표접촉에서야 서로 이해를 표시하고 거기서 타결책을 찾아야지, 들어갈 성격이 못되는 것을 그냥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p> <p>우리는 지금 핵공격을 가상한 군사연습을 하지 않을데 대한 문제,</p>

우 리 측	북 측
<p>항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견해에서 무엇이 신중히 고려돼야 되느냐 하면 이 조항, 우리가 설정한 이 조항에는 세계이목이 집중돼 있음.</p> <p>세계이목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여기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세계적 관심에 충족될 어떠한 결과를 우리가 생산해내지 못하면, 우리가 앞으로 참 이렇게 생산적으로 건설적으로 하나의 민족의 염원을 얻고, 그림을 그리고 나가는 방향을 우리가 설정해서 나가는데 곳곳에서 우리가 복병을 만나게 됨. 그 복병을 만나는데, 우리가 그 복병을 견뎌낼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됨. 그런 문제는 예방해야 됨.</p> <p>이것은 가령 지금, 우리 최선생께서 말씀하실려고 하시는 것 다 알지요, 아마 내가 얘기 할려고 하는 것도 다 아실것임.</p> <p>그 앞과 앞속에서 뭔가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쪽으로 지혜를 조금만 모아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좀 부족함이 있음.</p> <p>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과 관련해서 우리 남쪽 대표단의 입장이 아주 굉장히 응색하게 되어 있다 그겁니다. 그 점을 좀 이해 해주기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3차—pp.54~55)</p>	<p>왜 여기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논증할 수 있음.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것은 밝히지 않았음.</p> <p>또 우리들은 남조선에 있는 미국핵기지에 대한 것을 나가서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기다 넣자면 넣고, 우리 주장을. 우리가 왜 그것을 주장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음. 그렇게 그것을 하게 되면 타결 못 됨.</p> <p>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지나치게 주장을 하면 합의점 타결, 합의점을 찾을게 아무 것도 없음.</p> <p>우리가 지난 5차회담때, 서울에 나갔을 때 대표접촉을 오전 오후 할 때, 얼마나 이해를 가지고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결됐거든요.</p> <p>그런데 왜 여기서도 그와 같은 입장, 자세를 서로 못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절충안을 내놓고 다 하는데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만 주장하면 뭣이 타결 되겠나요?</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3차—pp.53~54)</p>

우 리 측	북 측
<p>그렇게 넣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음.</p> <p>이것을 공통의 사항으로 할려면 『남과 북은 핵무기확산방지에 관한 조약을 준수하고 또 조속한 시일내에 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해서 모든 핵관련 시설과 물질에 대한 전면적인 국제사찰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공통된, 공평한 표현임.</p> <p>그러나 우리는 했던 말이야. 우리는 했으니까, 한 놈더러 또 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p> <p style="text-align: center;">(비핵화 3차-p.58)</p> <p>이 문제에 관해서 북측이 자주적으로 해야될 일, 할 일은 할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라고 표현하셨는지 싶은데 그렇게 상황이 전개된다 이런 말씀을 했음.</p> <p>사실은 그문제와 관련해서 왜 이 표현이 여기 이렇게 설정이 될 수 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그것도 바로 생각을 하겠음. 다 아니까. 그런데 지금 가령, 김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상황전개 되는 것이 우리가 걱정할 때는 시간하고 관계가 있음.</p> <p>우리가 뭘 걱정하느냐 하면 우리는 벌써 몇번 말씀드렸는데, 2월 18일부터 열리게 되는 6차남북고위급회담에서 몇가지 중요한 일이 매듭이 지어져야 된단 말임.</p>	<p>우리는 이 문제를 그렇게 보자고 안 함. 세계적으로 우리 조선반도의 핵문제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음.</p> <p>우리에 대해서 이목을 집중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남쪽과 같이,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이목인 것이고, 우리와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이목은 남쪽에 집중돼 있음. 지금. 그것도 알 필요가 있음.</p> <p>그런데 그쪽에서 내놓은 그 6조를 말하면 이것은 사실상 우리에게 일방적인 의무를 지우는 선언조문에 지나지 않음.</p> <p>우리가 만들자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동으로 의무를 지울 수 있는 공동선언 조문을 여기다 박자는 것임.</p> <p>어저께 나보고 회의중에서도 동북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알고 있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하면 조문이 안 됨. 나는 거기에 전적인 동감을 갖음.</p> <p>그렇다면 어느 일방에다가 의무를 지우는 그 조문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공동선언이란, 여기에 맞지 않는단 말임.</p> <p>그리고 또 설상 여기에 넣자해도,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명백히 되어 있음. 우리가 한다, 아무리 긴급사항이고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해도 우리가 알아서 처리한다, 이말임.</p> <p>세계적인 이목도 우리가 이해를 가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해서 우리의 자주적인 노력이 그 어떤 설사 뭣이 해도 우리가</p>

우 리 측	북 측
<p>이 매듭이 지어지는 일이 방해될 받는 사태가 나오는 것은 우리 남북을 위해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해야 됨.</p> <p>그러기 위해서 오로지 그 목적으로 북에서 기왕 해야 될 일이니까, 북에서 그것을 고려해서 해주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는 것이 우리 취지임.</p> <p>그러면 거기에는 많은 언어가 생략이 되어 있지만 『그렇다』 말씀만 해 주세요. 그러며는 우리의 근심과 이런것은 운산무소될 것임.</p> <p>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 많은 언어를 생략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임. 그 걱정이 『걱정할 필요없다』 그 말씀만 해주기 바람.</p> <p style="text-align: center;">(비핵화 3차-p.59)</p>	<p>감당한다. 내가 이거 지난번 2차 대표접촉때 명백히 말씀드린 바가 있음.</p> <p>그런 의미에서는 6조가 이 공동선언에다 놓고 우리들 사이에 마주 앉아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이다 이거야. 그런데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것인가. 다시금 내가 얘기하는데, 이것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무슨 말마따나 도처에서 북병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크게 당하지 않음.</p> <p>아주 명백한 사실이 펼쳐지게 될 것임. 의아할 정도로의 사실이 펼쳐지게 됨.</p> <p>그렇기 때문에 6조는 필요없는 것임. 우리 5조하고 지금 결부시키는데 『핵공격을 가상한 일체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쪽에서는 지금 일방적인 무슨 그런 것이라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공동의 의무임.</p> <p>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도 핵공격을 가상한 훈련, 연습은 해서는 안 되겠다. 그쪽에서도 하지 말자. 이런 의미에서 결속한게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공동으로 질 의무임. 여기서, 물론 군사훈련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침협약 조문에 들어간 군사훈련문제에서 취급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봤음.</p> <p>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강조한 것은 무엇인가. 핵선언이기 때문에,</p>

우 리 측	북 측
	<p>비핵화선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비핵화를 막겠는가. 하기 때문에 훈련에서는 핵공격을 가정한 훈련이다, 이렇게 했음.</p> <p>그렇지만 이 문제를 우리가 그쪽에서 정 할적에는 생각을 해보겠 음. 그러나 이 6항은 도저히 우리 내부문제란 말임. 이것은 우리 불가 침, 북남 화해협력, 교류에는 내정문제임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그쪽 표현에 의하면. 그 표현과도 맞지 않음.</p> <p>여기에 넣는 자체가 그 합의사항을 어기고 이 조문에 넣은 거나 같 단 말임.</p> <p>그렇게 되면 공동의 의무를 지닐 수 있는 것은 넣자, 일방적으로 상대방한테 의무를 지우는 것은 이 선언에 넣지 말아야 함.</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3차-pp.55~58)</p>

나. 핵전쟁가상 전쟁연습 중지문제

우 리 측	북 측
<p>귀측의 제5항은 핵전쟁을 가정한 군사연습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군사적 신뢰구축 차원에서 앞으로 구성될 군사공동위원회안에서 논의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2차—p.19)</p> <p>귀측의 제5항은, 『핵공격을 가정한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다』하는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동의함. 반대하지 않음.</p> <p>우리는 과거에도 그러한 일이 없었지만 앞으로도 결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고 또 필요가 없게 된 것임. 그러나 이 조항은 여기에 이 공동성명에 포함시켜야 될 것인가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p> <p>우선 성격상 여기에 포함될 것이 아니라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다른 군사적신뢰구축 조치라든가 군축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그런 성질의 것이라고 보고 여기서 뺀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2차—p.22)</p> <p>우리가 팀스피리트훈련이 핵공격을 가정한 훈련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여러번 말씀드렸음.</p>	<p>핵전쟁을 가정한 군사연습에 대한것도, 이것을 중지할 데 대한 것을 우리가 초안에 제기한 바 있었는데, 앞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면야 응당히 왜 여기다 넣지 못하겠는가.</p> <p>핵전쟁을 가정한, 핵공격을 가정한 군사훈련이나 군사연습을 자기는 하지 않을거고, 지난 시기에도 안 했고, 안 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음.</p> <p>그렇다면 어째서 우리 공동선언의 초안에 넣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임.</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1차—p.35)</p> <p>이 조항에 대한 것이 지난시기 우리는 남쪽에서 진행되는 팀스피리트를 비롯해서 이쪽에 우리 군사연습을 할 때 공격을 가정한 이와 같은 군사연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했고.</p> <p>이 군사연습으로 해서 여러가지 사태들이 많이 벌어지고 특히 북남 관계에, 북남대화에 많은 장애를 조성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다시 북도 그렇고 남쪽에도 그렇고 하여간 핵공격을 가정한 군사연습이나 훈련을 하지 않아야 되겠음.</p> <p>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남쪽에서 반대할 이유는 현재는, 지난시기에는</p>

우 리 측	북 측
<p>또 그것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실증해 보여 드릴 수 있다. 그것은 『와서 참관을 해 바라』 벌써 2년째 말하자면 허공에다가 연애편지를 띄웠단 말임. 『와서 보세요. 와서 보세요.』 그 연애편지 보냈는데 아무 답장이 없음.</p> <p>그리고 멀리 앉아가지고 자꾸 『핵공격이다. 핵공격이다.』하고 또 팀스피리트 문제때문에 북쪽에서 많은 불편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다 듣고 있음.</p> <p>그런데 내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성립됨. 우리는 팀스피리트는 핵공격을 가상한 군사훈련이 아니라는 말임</p> <p>그런데 귀측에서는 핵공격을 가상한 군사훈련이라고 가상을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군사훈련 또 하시는 모양이니까 그것은 진짜 핵공격을 가상한 군사훈련이 되는 것임.</p> <p>남쪽에서 그것이 아니다 그것임. 『아닌 것을 와서 바라』그리고, 이 문제가 팀스피리트가 핵공격을 가상한 군사훈련이 아니라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 갈 자리가 없음.</p> <p>그것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것은 아까 우리 최대표제서 친절하게 읽어주신 남북합의서 12조에 들어간단 말이야. 『대규모 부대 이동과 군사훈련 검증, 통제문제』로.</p>	<p>이 문제에 대한 것 여러가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다가 선언에다가 조문화 해 넣는데는 다른 반대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음.</p> <p>왜 그런가. 어제 그제 1차 대표접촉할 때에도 귀측의 기초발언에도 『앞으로 이렇게 핵공격을 가상한 군사연습은 하지 않는다』 지난시기 안했다는 말은 안 끼여 있음.</p> <p>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한 기초발언에 있으니까 안 하겠다는 걸 하자, 그 이거 다른 생각 없음. 이게 뭐 팀스피리트가 핵전쟁을 가상했다는 걸 시인하고 들어가라든가 이런 생각은 없음.</p> <p>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종전에도 마찬가지다. 이 반입을 금지한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반입했다는 것 시인시키자는 것 이게 아님. 이것은 선언이 앞으로 합의되면 그 시점에서 반입을 안 하는 것이고 하지 않는 것이고, 북과 남이 다.</p> <p>그 다음에 군사연습도 이게 발효되게 되면 그때 가서 북이나 남이나 다 핵공격을 가상한 군사연습을 하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규제하는 것이지, 지난시기 문제까지도 시인시키고 이렇게 하자는 속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함.</p> <p>그래서 북이나 남이나 다 핵공격을 가상한 일체의 군사연습을 하지 않는다는 데는 의견이 같지 않은가, 의견이 같은 조건하에서 하나 넣는</p>

우 리 측	북 측
<p>그런데 이 문제는 틴스피리트가 남북간에 갖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남북간에 얘기하고 있음. 여러가지 얘기하고 있단 말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꼭 이것을 이렇게 박아서 여기다 표현을 해야 직성이 풀리겠느냐 그 말임. 이 직성이 풀리시겠다고 그러면 남북간에 입장의 차이가 드러나가지고 아무데도 갈데가 없음.</p> <p>이런 문제가 있음. 여러가지 그런 문제를 깊이 성찰해서 좋은 방법을 찾자는 것이 우리 뜻임.</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2차—pp.58~59)</p> <p>이 항목은 귀측이 남북 제1차 고위급회담때에 1차인가 2차때에 포괄적 군축방안, 포괄적 평화방안 내면서 거기서 군사적 신뢰조성 항목에 제1항으로 제시했던 안인데 이것은 사실상 군사적 신뢰조성과 관련되는 조항임.</p> <p>그 다음에 우리가 합의서 제12조 1항에서 『대규모 부대이동과 기동 군사훈련』이런 것들을 통보하고 통제하기로 하는 임무를 앞으로 구성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 두도록 하는 것이 있음. 이것과 관련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들어 갈 성격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것임.</p> <p>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은 『과거에도 이런 훈련을 안하고 앞으로도 안한다.』 이것은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다. 이럴 수도 있</p>	<p>것이 어떠냐 이런 취지에서 우리 넣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2차—pp.56~58)</p> <p>이 조항이 『핵공격을 가상한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을 하지 않는다』 이 조항이 무슨 우리가 틴스피리트훈련 하나를 목적으로 해서 이 조항을 넣는 것 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그 조항이 아님.</p> <p>왜 우리가 이 조항을 조문화하는가. 이제 우리 최대표가 방금 다 말씀 했음. 이제 임선생도 기초발언에서 지난시기도 핵공격을 가상한 군사연습 한적도 없고 훈련한 적도 없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했을 것임.</p> <p>그런데 우리는 왜 넣자고 하는가. 북남 쌍방이 이미 핵무기가 없다는 것을 다 선언했음. 거기서도 부재선언했고 우리도 핵무기를 생산할 능력도 없고 가질 필요도 없다고 했음.</p> <p>그런 조건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공격같은 훈련을 하지 말자 하는것이 비핵화선언에는 필수불가결의 조항으로 넣는 것이 좋음.</p> <p>우리가 생각하기는 여기서 크게 부담되는 것이 없을 것 같음. 또 나는 군사가라서 모르겠는데, 이 핵공격을 가상한 훈련, 연습이란 것이 앞으로 우리가 허용한다면 그런것을 계기로 해서 핵무기가 들어올 수가 있음.</p>

우 리 측	북 측
<p>지만 상당히 애매한 표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많아짐.</p> <p>핵공격을 가상한 훈련, 핵공격을 가상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핵공격을 가상한 훈련이라고 우겨댄다든가 논쟁의 여지가 많음.</p> <p>그래서 여기에 들어 갈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 차원적으로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귀측이 처음에 제시했던대로 군사적 신뢰조성과 관련해서 취급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보는 것임.</p> <p>그래서 이 항의 내용을 우리가 반대하거나 이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상당히 애매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고 또 차원이 군사적 신뢰조성과 관련된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알맞는 곳에서 취급하도록 하자. 이런 뜻임. 잘 한번 연구해보기 바람.</p> <p style="text-align: center;">(비핵화 2차—pp.61~62)</p>	<p>이런 것을 막는 의미에서 이 조항을 넣는 것이 좋음.</p> <p>또 앞으로 일반적으로 군사훈련이라든가 군사연습이 전쟁으로 이어짐. 핵공격을 가상한 훈련, 핵공격을 가상한 연습은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p> <p>이런 말하자면 우려를 우리가 미리 이 선언에 박어넣자는데 우리가 이 조문화한 근본 목적이 있음. 여기 결코 팀스피리트훈련 하나 우리 겨냥한 것은 아님.</p> <p>그런데 동북선생이 팀스피리트훈련이 무슨 핵공격이 아니다. 『와서 보면 안다』, 우리 이쪽은 가 보지 않아도 다 압.</p> <p>지금은 과학이 높은 경지에서 발전했음. 우리는 그 훈련이 어떤 장비가 동원되고 어떤 비행기가 동원되는가 앉은 자리에서 다 손금보듯 알 수가 있음.</p> <p>가서 보는 것은 제한된 범위내에서, 시야에서 볼 수 있지만 앉아서는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음. 훈련때마다 참가하는 항공모함, 핵탄 50발 내지 100발을 실음. 그런데 더 설명 안 하겠다는 것임.</p> <p>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문은 명백히 팀스피리트를 하나 겨냥한 그런 조문이 아니란 말임. 핵과 관련된 훈련, 핵과 관련된 연습은 하지 말아야 됨.</p> <p>이것은 우리가 약속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이 없음. 이</p>

우 리 측	북 측
	<p>것 때문에 팀스피리트를 공세하자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p> <p>(비핵화 2차—pp.59~61)</p> <p>우리가 넣은 의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놓고 보게 되면 이것이 핵공격을 가상한 군사훈련 때문에 북남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많았고, 특히 우리 북남대화에다가 엄중한 장애가 된 적도 있고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특히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철저히 실현하자면 핵공격을 가상한 어떤 훈련이나 연습도 있어서는 안 되겠고 이런 사정 때문에 넣었던 것인데, 이 문제는 뒤로 넘기자.</p> <p>(비핵화 2차—p.62)</p>

다. 화학, 생물무기 제거문제

우 리 측	북 측
<p>우리는 핵무기 뿐만 아니라 화학·생물 무기까지도 함께 제거할 것을 제의하고 있음.</p> <p>민족적 양심에서나 인류적 양식에서나 우리는 화학·생물무기와 같은 무차별적인 대량살상 무기들을 금지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에 당연히 동참해야만 하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1차—p.21)</p> <p>우리가 제기했던, 지난번 제안했던 안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에 뺐것은 화학, 생물무기의 제거 문제임.</p> <p>저희는 이것이 이 공동성명에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만 귀측의 주장을 수용해서 이 문제는 별도로 다루도록 양보를 하고자 함.</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2차—p.22)</p>	<p>화학무기, 생물무기에 대한 전면적 제거야 우리도 이렇게 하자는 입장이고. 그러나 그건 비핵지대화 또 귀측의 비핵화 이와같은 문제에 대한 성격에 맞지 않음.</p> <p>이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합의한 북남군사공동위원회 같은데서 해야 전문적으로 다루지, 이것 비핵 문제, 핵문제와 관련한 여기다 섞어놓고 제대로 다루지겠는가?</p> <p>그런데 이것도 옳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사찰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겠는데, 이것도 보게 되면 사찰문제에 대한 이것 저것 섞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 귀측이 내놓은 제안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다른 일반 군사문제하고 혼탕시켜서 들고 나온 것도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1차—p.32)</p> <p>단지 우리는 귀측의 제안중에서 화학·생물무기 제거문제는 핵문제를 협의하는 대표접촉의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미 합의된 북남군사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할 것을 예견해서 우리 선언초안에는 넣지 않았음.</p> <p>말하자면 화학· 생물무기를 더 잘 협의, 해결하기 위해서 북남군사</p>

우 리 측	북 측
	<p>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자는 것임. 우리는 화학, 생물무기를 제거하자는 데에 견해는 같음.</p> <p>그런데 이 문제를 어디에서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전문가들 사이에, 전문가급에서 해당한 급에서 해당한 이유는 나오겠는데 거기에서 토의 해결해야 더 잘하고 원만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귀측이 제기한 이 문제는, 우리 선언초안에 반영하지 않았음.</p> <p style="text-align: right;">(비핵화 1차—p.40)</p>

Ⅱ.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 과정

1. 기본문제

가. 「비핵화공동선언」 해석문제

우 리 측	북 측
<p>우리측으로서는 남북간에 핵통제공동위원회를 합의한대로, 「비핵화 공동선언」을 합의한대로 조속히 구성을 해가지고 빨리 발족을 시켜서, 「제4항」에 의해서 합의한대로 상호사찰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하자. 이것은 1회용이 아니다. 앞으로 피차간에 평화목적을 위한 핵시설 다 갖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군사목적에 전용되지 않도록 서로 믿지만 검증하자는 것이, 사찰이 이런 정신이니까, 그건 앞으로 오랫동안 통일될 때까지 지켜나가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1차-p.53)</p>	<p>우리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선언(초안)」을 내놓을때, 우리 측이 4차회담에서 제기할 때도 기본의제는 뭐인가, 조선반도에서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없애야겠다.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없애는 데서 기본은 뭐인가, 우선 가공할 미국의 핵무기가 없어야 이 문제가 해결됨. 이거 우리 많이 강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비핵화선언」을 제기했던 말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1차-pp.43~44)</p>
<p>「비핵화공동선언」 1, 2, 3항이라는 것은 쌍방이 각각 해야될 의무 조항임.</p> <p>그런데 이것을 이행한다는 것을 서로 믿어야 하지만, 믿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확인하자는 것이 사찰임. 믿어야 하지만 그것을 봐서, 확인해서 믿자 하는 것이 사찰임.</p> <p>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선언」에서 1, 2, 3항은 의무 조항이고, 각각 수행하여야 할 의무 세 항이고, 이 의무를, 약속을 제대로 잘 지키는 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기구를 만들었음.</p>	<p>조선반도에 어떠한 핵무기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비핵화 공동선언」이 발효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자기 머리위에 드리웠던 핵구름을 일단 제거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고 핵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 수 있게 됐다는 안도감을 점차 가지게 됐다고 볼 수 있음.</p> <p>실로 공동선언이 공포되고 이행단계에 들어가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핵문제가 발생된 후 수십년동안 지속되어 온 핵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고 우리 민족을 핵참화로부터 구원하여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서 하나의 이정표로 되는 획기적인 사변이라고 말할</p>

우 리 측	북 측
<p>이게 핵통제공동위원회 제5항이고 그리고 핵통제공동위원회는 그것을 어떻게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는가 하면 검증을 통해서 한다 했음.</p> <p>그래서 사찰규정을 만들어서 검증을 한다, 이렇게 4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핵통위 2차—pp.46~47)</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p> <p>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제5항에 따라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룩하기 위한 조치들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제반문제를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이하 “핵통제공동위”라 칭한다)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p> <p>제 1 조 핵통제공동위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p> <p>가. 핵통제공동위는 쌍방 각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관급으로 한다.</p>	<p>수 있음.</p> <p>지금 내외의 온 거래는 물론 세계 평화에호 인민들은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공정하게, 그리고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성숙되어 가고 있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음.</p> <p>전체 내외인민들은 이 역사적인 공동선언에서 평화적으로 통일된 조국의 미래를 걸어보면서 공동선언 이행과 관련한 실천적 조치들이 하루빨리 취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2차—p.11)</p> <p>귀측이 지난 2월 19일에 진행된 제1차 대표접촉에 내놓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초안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려고 함.</p> <p>귀측의 합의서초안에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데서 선차적으로 주목을 돌려야 할 핵무기와 핵기지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p> <p>남조선에 아직 미군의 핵무기와 핵기지가 있는지 아니면 모두 철수, 철폐하였는지 알 수 없는 형편에서 그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를 외면하는 것으로 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음.</p>

우 리 측	북 측
<p>나. 쌍방은 핵통제공동위의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p> <p>다. 핵통제공동위가 위임하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실무위원회 회를 둔다.</p> <p>제 2 조 핵통제공동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추진한다.</p> <p>가. 쌍방의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p> <p>나.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p> <p>다. 쌍방의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사찰 대상의 선정 및 사찰절차·방법에 관한 사항</p> <p>라. 사찰에 사용될 수 있는 사찰장비에 관한 사항</p> <p>마. 쌍방의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사찰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p> <p>바. 사찰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p> <p>사.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p> <p>아. 기타 한반도의 비핵화를 구현하는 문제와 관련한 사항</p> <p>제 3 조 핵통제공동위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p> <p>가. 핵통제공동위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p>	<p>수십년동안 우리 인민에게 핵위협을 가해 온 미국의 핵무기와 핵기지가 해결되지 않고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인 것임.</p> <p>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발생하게 된 역사적 경위를 놓고 보나, 핵전쟁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해야 할 핵통제공동위원회의 사명으로 보나, 그 목적으로 볼 때 사찰의 기본대상으로 응당히 미국의 핵무기와 핵기지가 지적되어야 할 것임.</p> <p>다음으로 귀측의 합의서 초안에는 사찰문제의 일면에만 치중되어 있고,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지적된 전반적인 문제를 이행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해결할데 대한 문제는 매우 미약하게 엮어 있는 것임.</p> <p>「비핵화 공동선언」을 원만히 이행하자면 그와 관련된 제반문제들을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진지하게 협의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돼야 할 것임.</p> <p>다시 말하면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는 핵사찰 문제뿐 아니라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전반적인 문제를 협의·해결할 수 있게 돼야 한다는 것임.</p> <p>또한 귀측의 합의서초안에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데서 주목을 돌려야 할 문제의 하나인 외부로부터 있을 수 있는 핵위협에 대</p>

우 리 측	북 측
<p>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개최하고 회의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p> <p>임시회의는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하며, 상대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나. 핵통제공동위의 회의는 판문점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p> <p>다. 핵통제공동위의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p> <p>라. 핵통제공동위의 회의에서는 쌍방 위원장의 합의에 의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p> <p>마. 핵통제공동위의 회의를 위해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p> <p>바. 기타 핵통제공동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 합의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 4 조 사찰대상의 선정 및 사찰절차·방법 등에 관한 규정은 핵통제공동위 제1차 정기회의 후 1개월 이내에 정하여야 한다.</p> <p>제 5 조 핵통제공동위에서의 합의사항은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 <p>제 6 조 쌍방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이내에 쌍방이 각각 지정하</p>	<p>처하기 위한 문제가 언급되어 있지 않음.</p> <p>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외부의 시도도 허용해서는 안 될뿐 아니라 그를 저지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p> <p>그리고 조선반도의 비핵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핵무기 소유국들로부터 그에 대한 담보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할데 대한 문제도 예견해야 할 것임.</p> <p>이밖에도 귀측의 안에는 실무위원회 구성문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문제, 시범사찰문제, 합의문건의 발효문제 등을 비롯해서 기타 불합리한 사항들도 있음.</p> <p>여기에서 주요한 문제는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하고 대책을 세우는 문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핵문제를 유발시킨 미국의 핵무기와 핵기지 유무를 검증하고 그에 따르는 대책을 세우는 문제, 외부의 핵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며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대한 국제적 담보를 받을데 대한 문제 등을 북남핵통제위원회의 기능으로 명백히 규정하는 것임.</p> <p>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도 이에 맞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p>

우 리 측	북 측
<p>는 2개의 시설과 장소에 대해 상호 시범사찰을 실시한다.</p> <p>제 7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p> <p>제 8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92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 장</p> <p style="text-align: center;">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 원 식 정무원총리 연 형 목</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1차회의시 제시)</p> <p>제2차 접촉에서 귀측이 제시한 합의서 초안을 충분히 검토했으며 이에 바탕하여 우리측 합의서 안을 새로 수정하거나 보충했음.</p> <p>오늘 제시할 우리측 수정안이 비핵화 공동선언을 올바르게 실천해 나가기 위한 튼튼한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우선 그 중요 조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함.</p> <p>첫째, 제1조 구성부분에서 실무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귀측이 제시한 수행원 관련조항을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였음.</p> <p>그러나 위원에 현역군인을 2명 포함시키자는 귀측의 안에 대해서는</p>	<p>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작성한 우리측의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초안」을 제기하겠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초안)</p> <p>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부합되게 북남 핵통제공동위원회(이하 핵통제위원회라 함)를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p> <p>제 1 조 핵통제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p> <p>① 핵통제위원회는 북과 남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며 그중 2명은 현역 장령, 군관으로 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부장(차관)급으로 한다.</p> <p>② 쌍방은 핵통제위원회 성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p> <p>③ 핵통제위원회 수원은 6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p> <p>제 2 조 핵통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 추진한다.</p> <p>①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리행을 위한 합의서 채택 과 관련한 사항</p>

우 리 측	북 측
<p>그것이 상호 편의주의에 따라 해결될 문제이며 굳이 이를 명시할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임.</p> <p>둘째, 제2조 핵통제공동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그밖의 문안을 절충적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새로 다듬었음.</p> <p>셋째, 제3조에서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정기회의의 회의주기를 2개월로 조정하고 회의기간 명시를 삭제하였음.</p> <p>넷째, 제4조에서 귀측안을 감안하여 사찰규정이 채택된 후 20일 안에 사찰을 시작한다는 부분을 추가했음.</p> <p>만일 귀측이 사찰실시 시한을 더 단축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겠다는 생각임.</p> <p>그밖에 서문을 포함한 일부 문안들도 귀측의 표현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였음.</p> <p>우리측의 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하겠음.</p>	<p>② 쌍방의 핵시설과 핵물질, 핵무기와 핵기지에 대한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p> <p>③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p> <p>④ 쌍방의 핵시설과 핵물질, 핵무기와 핵기지에 대한 사찰대상의 선정 및 사찰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p> <p>⑤ 사찰에 사용될 수 있는 사찰장비에 관한 사항</p> <p>⑥ 핵사찰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p> <p>⑦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에서와 사찰활동에서 발생하는 분쟁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p> <p>⑧ 조선반도에 대한 외부의 핵위협을 공동으로 저지시키며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적절한 국제적담보를 받기 위한 대책과 관련한 사항</p> <p>제 3 조 핵통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p> <p>① 핵통제위원회 회의는 2개월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날짜를 조절할 수도 있다.</p> <p>② 핵통제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과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번갈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 할 수도 있다.</p>

우 리 측	북 측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p> <p>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이하 “핵통제공동위”라 칭한다)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p> <p>제 1 조 핵통제공동위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p> <p>① 핵통제공동위는 쌍방 각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관(부부장)급으로 한다.</p> <p>② 쌍방은 핵통제공동위의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p> <p>③ 핵통제공동위의 수행원은 6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p> <p>제 2 조 핵통제공동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추진한다.</p> <p>①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련된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p> <p>② 핵사찰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p> <p>③ 핵사찰대상의 선정, 사찰절차·방법에 관한 사항</p> <p>④ 핵사찰장비에 관한 사항</p> <p>⑤ 핵사찰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p> <p>⑥ 핵사찰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p>	<p>③ 핵통제위원회 회의는 쌍방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④ 핵통제위원회 회의를 위해 상대측지역을 래왕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담보,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적절차는 관례대로 한다.</p> <p>⑤ 핵통제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핵통제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p> <p>제 4 조 쌍방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리행을 위한 합의서와 사찰대상의 선정 및 사찰절차,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채택된 다음 20일안에 사찰을 시작한다.</p> <p>제 5 조 핵통제위원회의 합의사항은 쌍방총리가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 <p>그러나 주요합의문건은 쌍방총리가 서명하고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 <p>제 6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p> <p>제 7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2년 3월 일</p>

우 리 측	북 측
<p>⑦ 기타 한반도의 비핵화를 구현하는 문제와 관련한 사항</p> <p>제 3 조 핵통제공동위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p> <p>① 핵통제공동위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하며, 상대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② 핵통제공동위의 회의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과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번갈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p> <p>③ 핵통제공동위의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p> <p>④ 핵통제공동위의 회의를 위해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p> <p>⑤ 핵통제공동위의 운영과 관련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핵통제공동위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p> <p>제 4 조 핵통제공동위 제1차 정기회의 후 1개월 이내에 사찰대상의 선정, 사찰절차·방법 등 사찰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며, 채택 후 20일 안에 사찰을 시작한다.</p>	<p>북남고위급회담 남북고위급회담</p> <p>북측대표단 단장 남측대표단 수석대표</p> <p>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p> <p>정무원총리 연형묵 국무총리 정원식</p> <p>(핵통위 2차—pp.12~17)</p>

우 리 측	북 측
<p>제 5 조 핵통제공동위에서의 합의사항은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 <p>제 6 조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이내에 쌍방이 각각 지정하는 2개의 시설과 장소에 대해 상호 시범사찰을 실시한다.</p> <p>제 7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p> <p>제 8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92년 3월 일</p> <p>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p> <p>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p> <p>국무총리 정 원 식 정무원 총리 연 형 묵</p> <p style="text-align: center;">(핵통위 3차—pp.20~23)</p> <p>2조 맨 마지막 「아」항에 『기타 한반도의 비핵화를 구현하는 문제와 관련한 사항』하고 포괄적인 의미로 표기했음. 그런데 이 8항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떤 뜻으로 주장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음.</p> <p style="text-align: center;">(핵통위 2차—p.21)</p>	<p>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 공동선언 자체가 그것을 철저히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선언임.</p> <p>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건대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크게 세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비핵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함.</p> <p>하나는 이땅에 이미 있던 핵무기와 핵기지가 철저히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 두번째는 다시는 이런 핵무기와 핵기지가 이땅에 산생돼서는 안된다는 것, 세번째는 외부로부터 그 어떤 핵위협도 없어야 한다는 것, 이럴 때만이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다고 말할</p>

우 리 측	북 측
<p>우리는 이 합의서,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미 이 앞에 이 『공동선언 제5항에 따라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룩하기 위한 조치들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문제를 협의, 추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음.</p> <p>그런데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안은 간단하게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말이야. 『5항 이행을 위한 통제위원회이다, 아니다』 하고 지금 원칙부터 논하시는데. 우리 읽어 보세요. 전문이 말야, 바닥이 벌써 이 5항의 이행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음.</p> <p style="text-align: center;">(핵통위 2차-pp.50~51)</p> <p>명확한 것은 핵무기, 핵기지 그것은 「비핵화 공동선언」 제1항에 서로 약속을 이미 해놨음.</p> <p>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의심하는가 말이야. 의심하지 말고, 단지 우리가 용어를 사용할 때 「핵물질」이라는 개념을 광의로 해석했는데</p>	<p>수 있음.</p> <p>그러기 때문에 철저히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자는 의미에서 2조 8항을 우리가 정립해 놓은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2차-pp.22~23)</p> <p>앞으로 합의서는 뭘 해야 되는가? 이것 핵무기 시험을 안한다, 제조를 안한다, 생산을 안한다, 접수안한다, 보유안한다, 저장안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을 다 규제해야 됨.</p> <p>이것을 규제해 놔야 됨. 구체적으로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조 안한다는 것은 뭇을 의미하고, 제조하지 않도록 통제는 어떻게 하고, 핵통제위원회니까. 예하면 이것 생산하지 않고 접수하지 않도록, 외부로부터 핵무기를 접수하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어떻게 통제하고 하는 사항을 규정해야 됨. 이것 어려운 문제는 아님. 요건 지금 그저 선언적으로, 선언적으로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는가?</p> <p>요 조항들을 다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됨.</p> <p>핵통제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1항은 1항에 있는 조항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야 됨.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대표접촉」 할 때도 앞으로 분과위원회에서 뭘하는가?</p>

우 리 측	북 측
<p>귀측이 「핵무기」, 「핵기지」 넣자면 그것은 합의해서 넣으면 된다 이거야, 그것을 누가 제외했는가? 「비핵화 공동선언」 1항에 명백히 있는데 그것을 누가 제외할라고 하는가? 그런 의심을 하지 말고 그런 것서부터 모든 것이 이그러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건 의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하나의 기본적인 얘기는 이거 가지고 논쟁하지 말기 바람. 단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모든 것이 빨리 완성돼서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대로, 4항에서 합의된대로 빨리 검증을 위한 사찰을 실시하자 하는게 기본원칙인데, 『빠른 시일내에』라는 용어 같은 것은 쓰고 싶지 않다 이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핵통위 2차-pp.58~59)</p> <p>비핵화 공동선언은 말 그대로 한반도를 비핵화하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 남북이 각기 스스로 지켜나갈 의무를 정하고 그 이행을 함께 다짐한 합의문건인 것임.</p> <p>다시말해 남과 북이 핵무기를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하지 않고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온 거래앞에 약속하고 그리고 세계만방에 선언한 것임.</p> <p>따라서 남과 북은 서로 약속한 의무사항을 스스로 잘 이행하면 되</p>	<p>매 부문에 대한 부속합의서를 만들자.</p> <p>거기다 부속을 왜 붙였는가? 저쪽 기본합의서 속에 이런식으로 돼야 한다는 거로 했기 때문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2차-pp.41~42)</p> <p>「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다섯번째, 『북과 남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되는 1개월내에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p> <p>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의 임무가 뭔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이행하는데 있음. 공동선언을 이행하자면 이행을 위한 합의서가 있어야 되겠다, 이 말임. 그 다음에 병행해서 이 「공동선언」 합의서를 만든 다음에 사찰 절차와 방법을, 세척이 되겠는지 규정이 되겠는지, 이것만 의미하지는 않음. 물론 같은 통제위원회에서 병행해</p>

우 리 측	북 측
<p>는 것이며 여기에는 논란이 따를 여지가 없는 것임.</p> <p>또한 여러가지 용어에 대한 개념정립 문제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기까지 남북 쌍방이 이미 충분히 많은 토의를 해 왔고 이해를 같이한 바 있음.</p> <p>(핵통위 3차-p.15)</p>	<p>서 다 같이 토론할 수 있음.</p> <p>그런데 이렇게 명백히 되어 있기 때문에 핵통제공동위원회가 자기 기본임무를 수행하자면 기본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핵통제위원회에 다 문건을 만들어야 됨.</p> <p>그 다음에 또 사찰임무가 있으니까 사찰하자니까, 사찰 대상 선정, 절차, 방법에 대한 세칙을 만들어야 됨.</p> <p>제조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또 특히 접수, 우리 접수에 대한 것을 중시함. 핵무기를 접수 안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왜 그런가 왜 그렇게 접수에 대해서 중시하는가.</p> <p>우리 종전에 대표접촉할 때 우리는 「반입」을 금지한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반입」이라면 못 쓰겠다. 「접수」하겠다 이렇게 해서 「접수」로 타결됐는데. 통속적으로 말하면 반입, 외부로부터 핵무기 반입을 금지하자면 금지하는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을 금지하는 것을 통제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게 있어야 되겠다 단 말이야. 이게 없이는 아무 것도 안 됨.</p> <p>(핵통위 2차-pp.48~49)</p>
<p>비핵화 공동선언은 한반도내에서 남과 북이 자주적 입장에서 비핵화를 실천해 나갈 것을 선언한 것이지 주변 핵 보유국들의 핵위협에</p>	<p>귀측은 우리가 마치 외부의 핵위협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하고 조선반도의 비핵지위를 핵무기 소유국으로부터 담보받을 때의 문제를</p>

우 리 측	북 측
<p>대한 공동대처 또는 이들 국가의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하는 문제와는 전혀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함.</p> <p>다시말해 비핵화 공동선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남북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해 있으며 어디까지나 남과 북이 그 이행의 주체인 것임.</p> <p>귀측은 지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제시한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 제7조에 「남과 북은 미국과 한반도 주변의 핵무기 소유국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핵위협을 하지 않으며 한반도 비핵지대의 지위를 존중할데 대한 대외적 조치를 취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던 바 있음.</p> <p>그러나 쌍방간에 많은 토의를 진행한 끝에 귀측 스스로가 이를 철회함으로써 비로소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귀측이 잘 알고 있을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17)</p> <p>공동선언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 합의서를 만들자, 공동선언을 잘 이행해야 되겠다 하는데 대해서 평가를 함. 잘 이행해야지요, 차질없</p>	<p>제기했는데 공동선언 테두리를 벗어나고 뭐 위반이나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을 중국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의 비핵지위를 공고히하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영구화하고 이렇게 하자면야 핵무기 소유국들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게 명백하지 않은가.</p> <p>그러면 남측에서는 핵무기 소유국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북과 남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 반대하는가? 핵위협을 받는것을 허용하는 하자는 건가?</p> <p>우리 조선반도의 비핵지위를 국제적으로 담보받는거야 응당한 것인데 왜 이 자체를 반대하는가?</p> <p>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임. 그러면서도 공동선언에 없는 내용을 우리가 넣은 것처럼, 이것은 응당히 조선반도에서 비핵화를 하자면 외부의 핵위협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해야 되는 것이고 조선반도의 비핵지위를 공고히 하자면 핵무기 소유국들로부터 그 지위를 담보받아야 하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p.29~30)</p> <p>「비핵화 공동선언」을 북과 남이 차질없이 잘 이행해 나가자면 그 공동선언을 어떻게 이행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토론해서 공동선언에</p>

우 리 측	북 측
<p>이 이행해야 됨. 그런데 공동선언을 잘 이행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서로 견해가 다름. 우리는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의무규정이 1, 2, 3항에 명시돼 있고 그것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 잘 이행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사찰을 통해서 검증해야 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는 견지임.</p> <p style="text-align: center;">(핵통위 3차—pp.24~25)</p> <p>「비핵화 공동선언」 제4항만 이행하는 문서가 된다 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음.</p> <p>해석을 우리하고 다르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1, 2, 3항이 핵심조항이고 쌍방이 서로 이걸 지키자고 한 것이 세계임. 이 세계를 서로 지키자하는 것은 약속했음. 절대적임.</p> <p>이게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하는 것을 서로 믿지만 검증하자 하는 검증의 정신에 입각해서 4항이 생겨난 것임. 1, 2, 3항이 비핵화예요. 그래서 4항이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하는 것은 1, 2, 3항을 제대로 실시하는가 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것이 전부인데, 하기 위하여 『사찰규정을 만들어서 사찰을 실시한다』 이랬음.</p>	<p>지적된 조항들을 협의해서 잘 규제하는게 필요함.</p> <p>그래서 그것도 왜 그럼 규제해야 되겠는가 공동선언이행을 잘 하기 위해서 그런 규제를 해야 된다. 규제를 해야 되겠는게 공동선언에 현재 지적된 내용들을 잘 이행하기 위한 사항들을 토론해서 규제해야 되겠는데 이 규제하는 문구를 무엇으로 만들자고 하는가, 이것은 북과 남 사이에 현재 통용되고 있는 합의문건의 형식이 일반적으로 합의서 예를 들면, 이러한 점 세부적으로 되는 것은 대개 합의서형식으로 됐음.</p> <p>그러니까 합의서형식으로 이것을 다 규제해 놓자, 우리가 규제하는 목적은 비핵화공동선언을 차질없이 북과 남이 착실하게 잘 이행해 나가자는데 그 목적이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4차—pp.22~23)</p> <p>우리 「북과 남 사이에 화해와 불가침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에도 의무조항은 많지만 부속합의서로서 다 규제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다 공동선언이기 때문에 1항부터 3항까지 다 규제해야 되겠음.</p> <p>이제 말했지만 귀측이 사찰절차와 방법만 하나의 문건으로 만드는 것은 공동선언 4항을 위한 문건은 되지만 기타 조항과 관련한 문건은 없는게 됨. 그러면 이게 되겠는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까지</p>

우 리 측	북 측
<p style="text-align: center;">(핵통위 4차-p.28)</p> <p>특히 8항 『국제적 담보를 받기위한 대책과 관련한 사항』부터 먼저 의논을 하자 이것임.</p> <p>이항은 어저께도 분명히 말했지만 아마 귀측이 동의할 것임. 비핵화공동선언 테두리 안에서 하자는 원칙하에 이 항은 그 쪽에서 스스로 과거에도 철회했던 안이고, 비핵화공동선언 채택할 때 과거 제5차 회담에서 비핵지대화안 제시할 때 제7조로 냈던 것과 같은 안임.</p> <p>이것을 비핵화 공동선언에 넣자고 했음. 그때 안넣었는데, 모범에 안넣었는데 이제와서 자법에 넣자고 그러지 말라는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핵통위 4차-pp.70~71)</p> <p>빼자는 이유 내가 다시 얘기 하겠음.</p> <p>작년 12월말에 비핵화공동선언을 우리가 합의할 때에 우리의 『비핵화공동선언(안)』하고 귀측의 『비핵지대에 관한 선언』, 5차 회담에서 내 냈던 것 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귀측이 우리가 제의했던 『비핵화공동선언(안)』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타결을 지었던 것임.</p> <p>귀측에 그 5차회담때 『조선반도의 비핵지대에 관한 선언(초안)』에</p>	<p style="text-align: center;">(핵통위 4차-p.27)</p> <p>들어야 되겠다, 이것임.</p> <p>우리가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할 때 그때 원칙적으로는 비핵화공동선언에 넣었어야 됨.</p> <p>우리가 그때 넣었다가 빼 드린 것은 다른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조직될 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그 문제를 다룰 것을 전제로 했었음.</p> <p>이 조항내용이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남측에서는 좀 알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함.</p> <p>그래서 우리는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크게 3가지 문제는 해결돼야 되겠음.</p> <p>지금 있는, 지금 현실적으로 위협을 주는 핵무기, 핵기지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 다음은 다시 이 땅에 그게 없어야 된다는 것. 세계로는 외부로부터의 핵위협도 없어야 된다는 것.</p> <p>그래서 우리가 이 조항을 넣은 것임. 그런데 이 조항 자체의 내용이 또 크게 무슨 문제점이 되는게 없다고 생각함. 미국이나 다른 일본이나 이전 핵위협을 주는 그런데 대해서 민족이 공동으로 대처한다. 민족이 공동으로 막자는 것임.</p>

우 리 측	북 측
<p>그게 9조까지로 돼 있는데, 귀측은 그것을 비핵지대라는 측면에서 외국과의 관련하에서 모든 것을 전개했음.</p> <p>그래서 귀측이 주장했던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가 전혀 다 반영 안됐음.</p> <p>그것은 어떤 정신에서 그랬느냐. 남북이 서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합의해 놓자 해서 그랬던 것임.</p> <p>물론 이러저러한 문제가 나중에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반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선 남북이 할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합의하자 해서 『비핵지대화 공동선언』이 아니라 『비핵화공동선언』으로 상당히 아주 양자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임.</p> <p>그래서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했지 않았는가? 그리고 최고 당국자들이 비준했지 않았는가?</p> <p>그렇다면 비핵화공동선언 테두리 안에서 논하자. 다시 비핵지대화 뭐 다른 안으로 이것을 끌고 가려고 하지말고, 그 문제는 별도로 이것임.</p> <p>별로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 나중에 논의하되 여기에서는 그 모범인 『비핵화공동선언』에서 규제하고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전개하자 하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4차-pp.74~75)</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4차-pp.72~74)</p> <p>만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했으니까. 앞으로 그 이행의 합의서도 만들고 또 사찰도 해서, 북과 남에는 완전무결하게 핵문제가 다 해결됐다 말임. 핵문제가 완전해결됐는데 북과 남이, 합의 다 이행돼가지고 계속 좋게 되어 나가는데, 이때 어느 나라가, 핵무기 소유국가가 우리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협한다. 이때 북과 남이 공동으로 비핵지위를 고수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대처해야 되겠는가? 안해야 되겠는가? 이것 말씀해 주기바람.</p> <p>그래서 하나 물어보자는게 맞인가?</p> <p>「비핵화」하고 「비핵지대화」 개념이 다르다는 것은 내 알겠음. 그럼 비핵지대화하면 핵무기 소유국들로부터 위협받는걸 막아야하고 요건 귀측에서 하면 그렇게 되는거고 비핵화를 한다고 해서 핵무기 소유국들로부터 우리 조선반도가 핵무기 위협을 받는데 이때 공동으로 대처해야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이걸 말씀해 달라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4차-pp.78~79)</p> <p>우리가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할 때 이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넣었다 뺐것은 무슨 이것을 영원히 삭제하려는 그런 의사가 있어서 한건</p>

우 리 측	북 측
<p>그런 권한을 우리가 어디서 가지고 있는가?</p> <p>여기다 명기할 수 있는 권한은 불행하게도 안가지고 있어서 어불성설이고, 귀측에서 지난번 평양에서, 고위급회담에서 꺼내시데. 이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뭘 선례를 만드시드만. 그러니까 그런데서 논의될 수가 있는 장소가 있음.</p> <p>(핵통위 4차-pp.85~86)</p> <p>우리가 기록을 위해서 걱정을 하시니까 말인데, 외부의 핵위협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세계의 핵우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유의하고 넘어가자. 안보리 255결의란 것이 있음.</p>	<p>아님.</p> <p>우리가 하자는데, 앞으로 핵통제공동위원회가 조직되면 핵통제공동위원회 기능에 이것을 넣을 수 있으리라고 타산했음. 그럼 우리가 왜 이거 타산했는가 하는 것임. 예하면 미국사람들이나 일본사람들이 우리에게 핵을 위협한다. 우리가 생각하건대는 북과 남이 그때에 공동으로 맞서 나가자고 하면 이땅에 탱줄을 묻고 사는 조선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거 환영할 것임.</p> <p>(핵통위 4차-pp.81~82)</p> <p>그러면 이 조항을 공대표 말씀하신대로 이것 조선반도에 대한 외부의 핵위협을 공동으로 저지시키며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적절한 국제적 담보를 받기위한 대책을 북남고위급회담과 정치분과위원회 혹은 군사분과위원회에서 이것 세운다, 이렇게 넣겠는가?</p> <p>(핵통위 4차-pp.85)</p> <p>『조선반도에 대한 외부의 핵위협을 공동으로 저지시키며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적절한 국제적 담보를 받기 위한 대책 관련한 사항』이 사항이 2조 중에서는 제일 귀측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어지는 어려워하는 부문임.</p>

우 리 측	북 측
<p>그러니까 그건 모든 우리 핵불확산조약의 가맹국들은 보호를 받는 것 아닌가?</p> <p>(핵통위 4차-pp.86)</p>	<p>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것 귀측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걸 북쪽에서 이 조항을 어케 양보를 하고 고려를 주면 2조의 다른 조항들에 대한 것 다른 조항들에 대한 타결도 또 우리는 쉽게 볼 수 있고 다른 문제가 없겠다고 봄.</p> <p>이와같이 여러차례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측의 이러한 주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특히 우리는 어떻게 하나 오늘은 『핵통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타결하는 문제가 매우 절실하고 절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임.</p> <p>그렇기 때문에 이 8항에 대한 것, 8항에 대한 것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p> <p>(핵통위 5차-pp.22~23)</p>

나. 시범사찰문제

우 리 측	북 측
<p>시범사찰을 빨리했으면 좋겠음. 속시원히 서로 봐가지고 「아, 없구나, 아, 그게 아니구나」하고 오래 계속될 핵사찰제도를 유지해 나가자.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용으로 쓰고. 이런 정신임.</p>	<p>시범사찰로 해가지고 북과 남에서 한두개 대상씩 해야 무슨 의의가 있겠는가. 우린 시범사찰하면 전면사찰해야 되겠음.</p>
<p>(핵통위 1차-p.54)</p>	<p>우리가 지금 의심을 가지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남조선에 있는 전반적인 미국의 핵무기, 핵무기들이 어디에 있는냐. 핵기지에 핵무기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봐야 우리의 의혹이 풀린다. 어느 한두개 본다고 해서 의혹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우리는 봐야됨.</p>
<p>시범사찰을 위해서 대상과 절차와 방법을 논의함이 없이 어떻게 시범사찰을 실시할 수 있느냐? 지극히 옳은 말임.</p>	<p>(핵통위 1차-p.51)</p>
<p>시범사찰을 하자는데만 합의보면 시범사찰 대상, 절차, 방법을 정하는 합의서 즉각 합의할 수 있음. 우리 합의서안을 만들어 냈음.</p>	<p>시범사찰은 일시적인 의혹을 풀자는 것임. 북남간에 남북간에 어떤 일시적인 의혹이 있는가 우리는 북남땅에 술한 핵무기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음. 그 의혹을 일시에 풀자는 것임. 시범사찰을 전면적으로 진행해야 됨. 말하자면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그곳에 와보시라. 우리는 핵무기가 있던 모든 곳에 단번에 가보겠음.</p>
<p>(핵통위 2차-p.59)</p>	<p>(핵통위 1차-p.55)</p>
<p>우리측 합의서 안 제6조 시범사찰도 앞으로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상호 사찰규정이 만들어져 남과 북에 있는 모든 핵대상에 대한 사찰실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상대방에 대한 핵무기 개발 또는 핵무기 보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나는 특수지역 및 시설을 상호주의에 입각, 선정하여 사찰을 실시하자는 것임.</p>	<p>귀측의 6조 보면 『쌍방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이내에 쌍방이 각각 지정하는 두개의 시설과 장소에 대해 상호 시범사찰을 한다.』</p>
<p>그러므로 귀측이 우리측 지역에 핵무기가 있다는 의심을 풀고 또한</p>	

우 리 측	북 측
<p>귀측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내외의 의혹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버리려면 먼저 한두 곳 만이라도 핵사찰을 실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함.</p> <p>(핵통위 3차-p.19)</p>	<p>이것은 시범사찰 문제는 우리의 입장을 밝혔는데 우선 시범사찰을 하자꾸나 해도 우선 사찰대상이 정해져야 되고 사찰절차와 방법이 규정되어야 됨.</p> <p>사찰절차와 방법이 규정되지 않았는데 혹시 대상은 정한다고 해도 이런 사찰 못한다 말임.</p> <p>그러기 때문에 사찰 절차와 방법도 규정되지 않았는데 여기다가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다음 주요한 문제가 뭔가 이미 밝혀졌지만 시범사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면 우리는 이렇게 한두개 시범사찰을 해서는 핵위협에 대한 의혹을 우리는 풀 수 없다는 것임.</p> <p>(핵통위 2차-pp.31~32)</p> <p>귀측에서 시범사찰이라는 것이 마치나 뭐 우리가 사찰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데 선전적 목적에 이용하려고 계속 시범사찰 들고나와. 그런 일은 수 갖고는 통하지 않음.</p> <p>(핵통위 2차-p.38)</p> <p>조선반도를 비핵화하며 핵위협을 완전히 제거하자면 한두개의 대상에 대한 상호 시범사찰 아니라 남조선에 있는 미군의 핵무기와 핵기지에 대한 전면적인 사찰을 해야 함.</p>

우 리 측	북 측
<p>시범사찰이라는 것은 간단히 합의하면 되는 것임.</p> <p>그건은 상호주의 원칙하고 동수주의원칙은 대전제이고 그 다음에 간단히 합의하면 될 수 있는 것임.</p>	<p>그리고 그 어떤 형태의 사찰을 하자고 해도 사찰에 대한 절차와 방법이 규정되어야 함. 그 공정을 뛰어넘을 수는 없음.</p> <p>귀측은 우리가 시범사찰을 동의하면 시범사찰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인차 합의할 수 있는 것으로 지난 대표접촉때 말한 바가 있는데 그렇다면 전면적인 사찰규정과 사찰규정을 따로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한가.</p> <p>시범사찰규정과 전반적인 사찰규정은 따로 만들지 말고, 만들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우리는 오로지 시범사찰 자체를 전면사찰로 해야된다는 우리 견해에 그렇기 때문에 사찰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은 하나로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다르게 해서는 안되고 시범사찰 자체도 우리는 물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p> <p>특히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언제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하는가 하는 것은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토의, 해결할 문제이지 대표접촉에서 협의, 결정할 성격의 문제가 아님.</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p.37~38)</p> <p>시범사찰에 무슨 동수원칙이요, 평형주의 원칙이요 이런 말씀을 했음. 말하자면 북에 것을 두개 보면 남의 것을 두개 보라 이런 식임. 동수주의 원칙이란 이런 산술적인 계산을 이 핵문제에 가서 귀결시</p>

우 리 측	북 측
<p>시범사찰은 그런 복잡한 사찰규정을 만들고 절차와 방법도 다 오랜시간 거쳐서 한달 거쳐서 만들지 않더라도 서로 한군데씩 또는 두군데씩 또는 세군데씩 원하는대로 딱 한꺼번에 한번 가보자는 것임.</p> <p>(핵통위 4차-pp.158~159)</p>	<p>키면 안 됨. 의혹을 동시에 푸는 원칙이면 될 수 있음. 우리의 의혹이 그 사찰을 통해서 다 풀리게 하고, 남의 의혹이 동시에 풀리게하면 그런 근본문제에 대한 동등한 원칙이면 될 수 있지만 단순한 대상수의 동수원칙, 균형원칙 이것은 사람들을 속이는 속임수임. 납득이 안 가는 안임. 시범사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그렇음.</p> <p>말하자면 무엇인가 남측은 우리한테서 지정된 한두개 대상을 보면 일시에 의혹이 불식될 수 있음. 그러나 우리는 남에 있는 두개쯤 봐서는 의혹이 불식 안됨. 그러면 동등한 원칙이란 무엇이겠는가? 그 의혹을 동시에 푸는 원칙이면 받아들일 수 있음.</p> <p>(핵통위 4차-pp.159~160)</p>
<p>그렇다면 상호사찰규정을 만드는 것을 한달내로 하자 하는 것을 규제하지 못하겠다면 『시범사찰을 앞으로 한달내로 한다』하는 것을 먼저 합의하기로 함.</p> <p>그 다음에 시범사찰에 대한 합의서를 만드는 것은 간단히 만들 수 있음. 귀측도 쉽게 동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돼 있음. 그러니까 시범사찰을 이 합의서 채택 한달내로 한다면 우리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p> <p>(핵통위 5차-pp.234)</p>	<p>귀측의 일방적인 요구를 반영한 문제가 바로 시범사찰 요구임. 거듭 말하지만 귀측은 우리 한두개 대상을 보면 그 무슨 의혹도 풀 수 있고 또 속으로 타산한 요구도 단번에 해결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우리는 귀측의 한두개 대상을 보는 경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 인민의 모든 근심과 의혹은 풀릴 수 없게 되어 있음.</p> <p>그런 것만큼 그 시범사찰은 어디까지나 남측 일방의 이기적 요구에 기초를 둔 부당한 사찰안이라고 말할 수 있음. 어제 지난 접촉에서도 그렇게 임동원선생은 마치 앞으로 사찰에서 무슨 균형주의, 평형주의</p>

우 리 측	북 측
<p>시범사찰을 위한 합의서는 물론 만들어야 됨. 그런데 이것은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고 합의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입장임. 그래서 우리가 의심스럽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시간이 급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왜 근본적으로 해소시켜줄 생각을 해야지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만 고집해 가지고 해결 될 문제인가 하는 것임.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한부를 정하자는 것임. 우리는 귀 측이 약속한 것을 지키리라고 믿음. 그런데 그것을 확인 좀 하고 싶다 하는 것임. 그리고 확인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것임. 우리의 뜻을 왜 못 받아주는가?</p> <p>(핵통위 6차—pp.62~63)</p>	<p>원칙에 따라서 대상의 동수선택, 동등선택의 원칙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얼핏 보기에는 호상성의 원칙이 적용된 것 같음. 사실 그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주장임.</p> <p>군사적 문제, 이 핵문제는 사실상 지금 형편에서는 단순한 실무적 문제라고 우리가 강조하지 않음. 이것이 전체 북남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있는 문제임. 왜냐하면 군사적 문제인 동시에 그것이 곧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임.</p> <p>(핵통위 5차—pp.234~235)</p> <p>시범사찰이라는게 합의서에, 공동선언에 맞지 않는 것을 들고 나왔단 말임.</p> <p>조선반도를 비핵화할 데 대한 공동선언에 시범사찰이 있는가? 이것은 공동선언 초안에 명백히 핵통제위원회에서 사찰대상도 정하고, 사찰절차와 방법도 규정하게 되어 있음.</p> <p>여기에 대표접촉에서 시범사찰은 벗어나고, 이런 것을 논의하게 되어 있지 않단 말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더 말할 게 많음.</p> <p>(핵통위 6차—p.51)</p>

2. 「합의서(안)」 내용문제

가. 서문

우 리 측	북 측
<p>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음.</p> <p>우리는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귀측안은 『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부합되게』, 하나는 「이행하기 위하여」하고 「부합되게」이거만 표현이 다를 뿐이지 그 아래는 『다음과 같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또 귀측은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대체적으로 같음.</p> <p>단지 여기서 「이행하기 위하여」하고 「부합되게」 차이가 있고, 핵통제공동위원회의 약칭을 귀측에서는 「핵통제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안을 제시했고 우리는 「핵통제공동위」라고 한 것이 다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p.47~48)</p> <p>군사분과위원회와 군사공동위원회를 약칭으로 부를 때 어떻게 구분하고자 합니까? 그것과 좀 맞춰서 생각해야 될거 아닌가? 「공동」자라는게 들어가는거 하고 안들어가는 차이가 있다 말임.</p> <p>그래서 우리는 그걸 염두에 두고 「공동위」라는 걸 넣었음. 다른 뜻</p>	<p>우리는 『공동선언에 부합되게』한 것은 귀측의 안대로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우리 받아들이겠음.</p> <p>그 대신에 이쪽에 약칭을 「핵통제공동위」한거 우리 사람들에게 요런 약칭이 잘 이해가 안 갈수 있음.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군사공동위원회, 협력·교류와 관련한 공동위원회 다 나오게 됨.</p> <p>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부르게되면 「핵통제위원회」, 저쪽에 「무슨 군사, 또 무슨 공동위」 이렇게 될 걸 염두에 두고, 염두에 두고서 그저 「공동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조금 우리 사람들에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라고 하는게 어떻겠는가?</p> <p>만약에 필요하다면 「핵통제공동」은 넣을 수 있음. 「핵통제공동위원회」, 「공동」은 넣을 수 있고, 안넣어도 되겠다면 빼도되고. 그러하고 다른 문장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대로 두고. 공동선언에 표기된대로 「핵통제공동위원회」, 「북남」은 쓰지 말고. 저쪽은 앞으로 「군사공동위원회」, 「무슨 무슨 공동위원회」 이렇게 할 걸 타산하고, 요건 「핵통제공동위원회」, 북남만 빼고.</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p.48~49)</p>

우 리 측	북 측
<p>은 없음. 우리는 그냥 그대론데, 「위」로 약했는데 「위원회」까지 다 들어가지 이런 얘기로군.</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49)</p> <p>「다음과 같이 운영하기로……」상관없음. 문법적으로 「다음과 같이」라는 게 앞에 있어야 되나 뒤이기도 상관없는가 하는 얘긴데 「위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반대로 하자는 것인가?</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50)</p> <p>『칭한다』는 빼도 괜찮겠음. 『라 함』 좋음.</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55)</p> <p>「서문」,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이하 핵통제공동위원회라 함.)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똑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69)</p>	<p>귀측에서는 앞에다 『다음과 같이 핵통제……』 이렇게 했는데 그건 우리 안대로 『이행하기 위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다음과 같이』 뒤로 내리고. 요전 분과 위원회 구성·운영합의서, 그저 거기 이게 합의된거기 때문에 그런 유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렇게 합의하고 넘어가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50)</p> <p>우리 문건은 『이하 핵통제공동위원회라 함』 귀측은 이것은 문안정리 해야 되는 거니까. 『이하 칭한다』고 그랬는데, 그저 『라 함』 이것어떻겠는가?</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55)</p>

나. 구성문제

우 리 측	북 측
<p>1조에서는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을 각각 논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그 위원을 7명으로 하느냐 5명으로 하느냐 하는 것하고, 그중 2명을 현역장령을 포함시킨다는 것을 명문화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음.</p> <p>그리고 또 수행원 6명으로 한다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의가 없고, 그 대신에 우리가 제의한 안에 실무위원회가 들어 가 있었는데 실무위원회를 빼고 아마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논의했지만 수행원 적정한 수로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논리로 제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겠음.</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2차-pp.18)</p> <p>『제1조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이래 돼있고, 그 쪽에는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이래 됐는데.</p>	<p>핵통제위원회 구성을 우린 5명으로 제기했고 귀측이 7명인데, 우린 5명이 적합하다 보는거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종전에 분과위원회 토 의할 때도 우리는 5명이면 적합하겠다. 귀측에서 7명이라고 제기한 주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분과위원회에서는 토론할 분야가 많고, 여러 분야가 많으니까 그래서 해당부문을 다 참가시켜야 되겠으니까 위원 수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도 그때 양보를 했음.</p> <p>그러나 핵통제위원회의 기능은 그런 분과에서 토론할 문제에 비하 면 그저 한 분야이기 때문에 위원은 5명이면 좋겠다.</p> <p>그 다음에 그중에 우리 현역 장령, 군관을 위원으로 2명 넣자. 이것 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로서는 조선반도를 비핵화하자면 이미 입장을 밝혔지만 남쪽에 있는 미국의 핵기지, 핵무기 유무에 대한 것을 검증 해 봐야 되겠음.</p> <p>검증하자면 위원중에 이와 같은 장령이나 군관들이 포함돼야 되겠 다, 이런 견해로부터 넣은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2차-pp.19~20)</p> <p>『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그렇게 하기로 함.</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51)</p>

우 리 측	북 측
<p>어떻게 할까요?</p> <p>표현방법인데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하는 것 하고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50)</p> <p>①, 우리도 「동그라미 1」로 바꿨음. 그전에 가, 나, 다, 라로 나가다가 귀측의 안을 받아들여 가지고.</p> <p>『핵통제공동위원회는 쌍방 각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관(부부장)급으로 한다』 그랬는데 귀측은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북과 남에서 각각』 이거 뭐 『북과남은』 없어도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는 「각기」 그랬는데, 『쌍방각기』 그건 좋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며 그중 2명은 현역 장령, 군관으로 한다』하는 것인데 이거는 편의주의원칙에 따라서 귀측이 뭐 3명도 좋고 2명도 좋고 1명도 좋고, 우리도 뭐 3명도 좋고 2명도 좋고 군인이 몇명 들어가는거 규제하지 않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게 우리의 입장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51)</p>	<p>공동합의서인 까닭으로 해서 들어가는 군인수를 공동수로 넣는것이 어떻겠는가? 그러면 귀측에서도 군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우리 북남고위급회담 대표도 우리측에서는 들이고, 그쪽은 하나 아닌가? 그러면 여기다, 1~2명 이렇게 하면 어떤가?</p> <p>내가 말한 것은 꼭 군인이란 것을 좀 넣자 그 소리지. 완전히 편의주의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빼지 말고. 현역군인이라는 조항을 빼지 말고 명기를 하자 이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p.51~54)</p>

우 리 측	북 측
<p>그럼 편의주의로 하자. 이젠 거기서 5명으로 해도 좋고 3명으로 해도 좋고 우리도 군인이 반드시 들어간다 하는 것은 틀림없음. 그러나 2명이다 3명이다 5명이다 하는 것은 규제하지 말자 이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52)</p> <p>위원을 7명으로 하느냐, 5명으로 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실무위원회를 양보하여 뺐고, 또 전문위원들도 그쪽이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서도 그러했듯이 뭐 같은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를 했음. 그 대신에 이것은 7명으로 하자 7명, 모든 분과위원회가 다 7명으로 했으니까, 7명으로 하는 것이, 이것 「7」이라는 숫자가 좋음.</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56)</p> <p>『쌍방에서 각각』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57)</p>	<p>이걸 귀측에서 이제 명백히 포함시키겠다고 말씀했으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놓자 그것임. 그래서 귀측에서 하나 놓을 생각을 초보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나 둘 뭐 이런 식으로도 놓자 그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55)</p> <p>여러분야에서 참가해야 되고 또 여러분야 사업을 토의해야 하기 때문에 7명이 좋다 그랬는데 이 핵통제공동위원회 사업은 현재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데 비해놓고 보면 토의분야가 비교적 단순함. 주요하긴 하지만, 내용자체 토의가 주요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야가 아니다 이것임. 여러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5명도 무방하지 않겠느냐고 우리 생각함.</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56)</p> <p>핵통제공동위원회는 우리 『쌍방에서』하는것, 귀측 안 우리 그거 받아들이겠음. 『쌍방에서』하자 말임. 『쌍방에서 각각』 이렇게 『각기』하지 말고. 우리 『북남』하는것 빼고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57)</p>

우 리 측	북 측
<p>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음.</p> <p style="text-align: right;">(책통위 3차-p.58)</p>	<p>『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현재는 5명, 귀측은 7명인데, 『5명으로 구성하며』 그 다음에 이제 그 중 앞으로 합의되면 『1~2명은 현역 장령, 군관으로 한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되니까 위원장 문제를 따로 내놨음.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부장(차관)급으로 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아무래도 현역 장령, 군관문제를 기재하자면 그 위원장 문제를 떼내와야 되겠고 요런식으로 할 것을 전제로, 그저 합의되면 할 것으로 하고 이 조항 넘어가는 것이 어떤가?</p> <p style="text-align: right;">(책통위 3차-p.58)</p>
<p>우리는 『구성원』, 그쪽에서는 『성원』이라고 쓰고. 그래서 우리 그전에도 이것을 각각 썼음. 그것 가지고 문제될 것이 단지 복수로 표현하느냐, 단수로 표현하느냐는 뭐 통일해도 좋겠지. 『성원들을』하니까 『성원을』.</p> <p>한국말에는 옛날부터 써올 때는 복수, 단수 개념이 없었음. 요새 외국말들 영향을 받아서 그러는 것임. 그것 가지고 논의하지 말고 또 왜 별것을 가지고…….</p> <p style="text-align: right;">(책통위 3차-pp.58~60)</p>	<p>『공동위원회 성원들을』 귀측은 『공동위원회의 구성원』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성원』이라고 하고 『성원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원들』, 귀측은 『구성원』 그랬다고. 이것은 『성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책통제위원회 성원임.</p> <p>그것은 우리가 한대로 그건 복수로 하기 바람.</p> <p>복수 안에는 단수도 포함됨. 단수에 복수는 포함 못되지만 복수에는 단수가 포함됨.</p> <p style="text-align: right;">(책통위 3차-pp.58~60)</p>

우 리 측	북 측
<p>단어에서 귀측에서는 『조정』이라고 표현했고 우리는 『조절할 수 있다』이렇게 됐다.</p> <p>(핵통위 3차-pp.60~61)</p> <p>위원회 『의』 없어도 됨.</p> <p>(핵통위 3차-p.61)</p> <p>우리 입장을 분명히 어제 밝혔는데, 우리는 실무위원회를 주장했다가 그것을 빼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뺐으니까 양보를</p>	<p>『핵통제공동위원회 수행원은』거기는 수원이고, 『6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똑같은.</p> <p>그것은 본래 또 우리가 용어가 다르니까 『조절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p> <p>(핵통위 3차-pp.60~61)</p> <p>그 다음에 귀측에서 공동위원회, 문안을 정리하는 것이니까. 뭐 본질적인게 아니고. 『위원회의』, 『수원의』, 『수행원의』 이렇게 돼 있음. 『의』자 그것을 넣겠는가, 빼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음.</p> <p>(핵통위 3차-p.61)</p> <p>그래서 우리 안 대로 『핵통제공동위원회 수원은, 귀측은 수행원 6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우리는 『조절할 수 있다』 이것은 편의주의적으로 함.</p> <p>그러면 1조에 대한 것은 1항만 남고 그저 이제 합의된 셈임.</p> <p>(핵통위 3차-p.61)</p> <p>처음 얘기한 문안을, 어제 우리 초안을 넘겨준거와 마찬가지로 『핵통제공동위원회는 쌍방에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p>

우 리 측	북 측
<p>했으니까, 5명을 7명으로 하자 하는 것은 귀측에서 좀 고려해 달라. 각 분과위원회도 각 7명씩으로 돼 있고 서로 기구가 다르기 때문에…….</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4차-p.16)</p> <p>그러면 그중 『1~2명은 현역군인으로 한다』 그러면 될 것 같음. 이것 「장령, 군관」을 「현역군인」으로 고칩시다. 『현역군인으로 한다』.</p> <p>우린 그렇게 한다는 것을 양해를 해 가지고…….</p> <p>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핵통제공동위원회는 쌍방에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몇명으로 구성하며 그중 1내지 2명은 현역군인으로 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부장(차관)급으로 한다』.</p> <p>그러면 1조에 대한 거 인원수만 놔두면 타결됐음.</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4차-p.18)</p>	<p>여』 우리는 다섯, 귀측은 일곱명임. 우리는 귀측이 종전에도 이렇게 분과위원회 구성할 때 여러가지 사정들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대답해 주겠음. 『7명, 혹은 5명으로 구성하며 그중 1~2명은 현역 장령, 군관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이1~2명 이라는 것은 전체 5명이면 5명, 7명이면 7명으로 구성되는데 그중에 하나 내지 두명은 현역 장령, 군관으로 하도록 이런식으로 문안을 정리해 놓으면 어떻겠는가?</p> <p>그 다음 계속해서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부부장, 가령 차관급으로 한다』 이렇게 문안을 정리하고 넘어가면 어떻겠는가? 인원수에 대한 것은 조금 남겨 놓기바람. 우리 대답을 차차 올리겠음.</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4차-p.17)</p> <p>「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초안에서 보면 제1조에 우리1항을 보면, 『1조, 핵통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여기서 핵통제위원회를 몇명으로 구성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오늘 합의서를 어떻게 하나 타결하려는 이와같은 일념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 귀측이 제기한 위원회 위원수를 7명으로 하자는데 동의를 함.</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13)</p>

우 리 측	북 측
<p>귀측은 거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조항인데 그래도 좋고 이래도 좋은건데, 『현역 군인으로 한다』, 해놓고 그 다음 문장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부장급으로 한다』, 차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는 그냥 『위원장은 뭐 부부장급으로 한다, 차관급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음. 「공동위원회」라는 말을 반복을 안 했는데 그 차이가 있는데, 그건 넣어도 좋고 안넣어도 좋음.</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14)</p>	<p>『핵통제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그중 1~2명은 현역 군인으로 한다』. 이 건 귀측에서 「현역 군인」 이렇게 했기때문에 『현역 군인으로 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부장(차관)급으로 한다』. 이렇게 문안을 다 정리해 놨던건데, 7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첫번째 조항을 합의한 걸로 넘어가는게 어떻겠는가?</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13)</p> <p>그럼 「위원장」으로 하라. 『위원장은 부부장급, 차관으로 한다』, 「공동위원회」는 빼고. 그럼 그저 합의되고 넘어가도록 함.</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15)</p>

다. 기능문제

우 리 측	북 측
<p>귀측의 합의서(초안) 중 제2조 1항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별도의 합의서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이것이 채택된 다음에야 사찰을 시작할 수 있다고 이를 전제조건화 하고 있음.</p> <p>(핵통위 3차-p.15)</p> <p>귀측이 4조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합의서라 하는 것과 2조 1항의 합의서가 같은 얘기인가? 그래 4조에서 그것을 들어내기 바람. 그것 들어내고, 그걸 조건으로 내세우지 말라 하는 것임.</p> <p>그렇게 한다면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과 관련된 사항」 이건 협의할 수 있음. 기능에 넣을 수 있다 이것임. 그러니까 들어낸다는 조건하에서 그러는 것임.</p> <p>(핵통위 3차-pp.22~24)</p> <p>귀측 4조에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합의서와 그 다음에 사찰규정 채택된 다음 20일 안에 사찰을 시작된다』 이렇게 되어있음. 그러니까 두가지 조건을 붙였던 말임. 이행을 위한 합의서와 사찰규정. 그런데 이행을 위한 합의서를 걸어치우고, 빼고</p>	<p>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잘 이행하자면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합의서를 협의·채택해야 하는 것이고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는 것은 공동선언을 원만히 잘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라고 생각함.</p> <p>비핵화공동선언은 어디까지나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원칙적인 요구와 그 방향과 목표를 제시했을 따름인 것임.</p> <p>공동선언을 실천에 옮기자면 구체적인 이행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임. 그런데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를 귀측에서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도대체 이상하다고 나는 생각함.</p> <p>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원리이고 순리인데 왜 이것을 알고도 외면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 알 수 없음.</p> <p>우리가 구체적인 이행합의서가 공동선언에 뒤따르지 않으면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것임. 그러므로 구체적 이행대책을 협의해서 합의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임.</p> <p>(핵통위 3차-p.32)</p>

우 리 측	북 측
<p>그 대신에 2조 1항에 그 정신을 받아들인다 하는 것임. 즉 이행과 관련된 사항, 합의서가 필요하면 합의서를 만들어야 됨.</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125)</p> <p>협의를 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하자는 것임. 그리고 협의해가지고 여기 다른 조항들과 마찬가지로 합의서 채택할 사항이면 합의서 채택하는 것임.</p> <p>그런데 그것만 꼭 합의서 채택에 관련된 사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음. 얼마나 합리적인 제안인가?</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126)</p> <p>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남북간에 비핵화공동선언과 관련해서 유사한 국제적인 조약으로서는 우리 다 당사국이 되고 있는 핵비확산 조약이 있는데, 이 핵비확산조약에서는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 등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이행하는 별도의 합의서는 없음.</p> <p>그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번 귀측에서 1월 하순에 서명하신 그 쪽에서는 담보조약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안전조약이라고 그러는데, 안전조약이 있는 거란 말임.</p>	<p>북남합의서 이행을 위한 합의서도 이미 작성하기로 합의했는데 하물며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이미 북남 합의만 되면 합의서란 말임. 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해서도 부속합의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미 우리 대표들이 합의 다하고 총리서명까지 하고 발효까지 되었는데, 하물며 우리가 토의하는 문제는 공동선언인데,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합의서를 만들자는거야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는가 이것임. 이걸 똑똑히 알아야 함.</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33)</p> <p>선언하고 조약하고 같다는 것, 국제법 가지고 오라요. 여기 갖다 펼쳐 놓으라요. 조약과 선언 같다는 걸 공선생이 가지고 오기바람. 절대로 다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127)</p> <p>선언이란 그 말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건데는 선언할 적에는 해당 소요문제에 대한 실천의지를 선포한 것에 지나지 않음.</p> <p>다시 말해서 선언에는 그 어떤 실천적인 대책도, 또 이행지침도 없</p>

우 리 측	북 측
<p>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누차 우리가 지난번에서도 설명한 바 같이 1, 2, 3항은 의무조항이니까 그것으로 족한 것임. 그래서 그 의무가 이행이 됐느냐 안됐느냐 이것은 우리가 검증을 통해서 서로 상호사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p> <p>물론 비핵화와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앞으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겠음. 따라서 그러한 문제들을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안에서는 제7항, 「기타 비핵화에 관련되는 사항」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귀측에서 자꾸만 1항에다가 합의를 만들자 하는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임대표가 그와 같은 제의를 했음.</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p.126~127)</p> <p>우리는 이 공동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 이것이 국제간의 조약 이상으로 아주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김대표께서는 그것은 선언에 불과하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천이 따르는 문제가 아니다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될 정도로 실천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고 하는 걸로 해서 선언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인데 그럼 선언을 해놨으니까 실천을 안하겠다는 이런 말씀인가?</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p.131~132)</p>	<p>음. 다만 원칙적인 요구, 방향, 목표를 제시했을 따름이라는 말임.</p> <p>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게 뭔가? 그때도 보니까 무슨 1항에 대한 합의서가 따로 있느냐? 2항에 대한 합의서가 따로 있느냐? 3항에 대한 합의서가 따로 있는가? 이렇게들 얘기 하시더라 말임.</p> <p>오늘도 또 무슨 마치고 우리가 제조하지 않는다는게 어떤 정의를 내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님.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뭐인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접수하지 않는다면 어떤 어떤 대책이 필요하느냐? 실천적인, 대책적인 문제가 합의서에 반영되어야 함.</p> <p>그래야 앞으로 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그것을 귀측 말씀대로 한다면 준거가 생긴다 이것임.</p> <p>이렇게 해야되는데 이것대로 왜 안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그런 지침이 바로 그 합의서임.</p> <p>그렇다고 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접수에 관한 합의서가 따로 있고, 무슨 배비에 관한 합의서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핵에너지를 소유하자는 합의서가 따로 있고, 이렇게 여러개의 합의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p> <p>단지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하나의 실천적인 합의서가 채택되면 그만임.</p>

우 리 측	북 측
<p>『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과 관련한 사항』하면 합의서도 채택할 필요가 있으면 채택하고, 합의서 아닌 것을 의논하려면 합의서 아닌 것을 의논할 수도 있고 하는 광범위한 표현을 쓰자.</p> <p>합의서 채택이 필요하다면 합의서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얘기임. 그러나 여기서 꼭 합의서 채택만을 못박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임. 그건 우리가 그쪽에 양보하는 입장임. 4조에서 뺀다는 전제하에서.</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4차-p.19)</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p.136~138)</p> <p>2조 제목은 이미 합의됐음. 2조 첫째 항목에 대한 거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합의서 채택과 관련한 사항』 아무래도 합의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4차-p.19)</p> <p>「공동선언 이행과 관련한 사항」하면 벌써 우리가 대표접촉하는 자체가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서 하는 하나의 공정을 거쳐 나가는 것임.</p> <p>그러니까 핵통제위원회의 전반사업이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합의하는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다면 밑에 구체적으로 2, 3, 4번 쪽 내려가는 것. 이것이 다 없어짐.</p> <p>왜 그러나 하면 밑에 쪽 내려간 사항들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사찰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사찰대상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이 모든 조항들이 이것이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조치란 말임.</p> <p>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첫째 조항을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사항」이라고 해놓으면 이 밑에 것도 다 이행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걸리지 않음. 이렇게 한 조항으로 돼야</p>

우 리 측	북 측
<p>귀측에서 이제까지 이행에 관한 합의서를 제2차 대표접촉서부터 쪽 얘기를 들어 와보니 뭐냐하면 현재 공동선언 가지고는 시행하기가 불충분하다. 그것 가지고는 완전하지가 않다. 그러니 이행을 위한 합의서가 별도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우리는 귀측에서 사찰을 지연을 시킬려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의혹을 지연시킬려고 하는 지연전술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의 이행합의서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임.</p> <p>왜? 우리의 견해로서는 이 공동선언은 현재 1, 2, 3조로 충분히 이것을 마땅히 이행해 나가고 각각 서명한 당사자들이 이것을 충실히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따라서 이것을 충실히 이행하느냐의 여부는 사찰을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 있음. 따라서 귀측에서 얘기하는 「이행을 위한 합의서」, 이제까지 설명을 해주신 것으로 봐서는 이것은 귀측에 별도의 저의가 있다고 생각됨.</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4차-p.40)</p>	<p>됨. 아무래도 핵통제공동위원회가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좀 명백히 규제해야됨.</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4차-pp.20~21)</p> <p>우리도 이것이 공동선언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북남합의서도 잘 이행하기 위해서 부속합의서를 만들자고 그랬는데, 우리의 이 공동선언도 잘 이행해 나가자면 이와같은 합의서를 하나 만들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 단지 공동선언이기 때문에 공동선언에다 무엇을 붙이고 이게 아니란 말임.</p> <p>그것 이해는 정확히 하시고 우리는 이미 합의된 기본합의서도 부속 합의서 하자고 그랬는데, 공동선언도 저쪽의 부속합의서처럼 무슨 합의서를 만드는게 좋겠다. 거기서 말씀한다면 그 다음에 아까 임대표 선생이 말씀하신게 이와같은 합의서를 만든다 하면 「비핵화 공동선언」에 아예 합의서를 만든다고 박아 넣으셔야 되겠는데, 왜 그것은 또 박아 넣은 것도 없는데 합의서를 만들겠다 이러느냐 이렇게 또 아까 말했음.</p> <p>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선언에 현재 우리 만들자는 합의서, 이 합의서조항이 이 공동선언에 다 반영돼 있는가? 다 반영돼 있다면 우리가 토론하는 합의서 자체도 또 협의할 필요가 없음.</p>

우 리 측	북 측
<p>귀측은 또한 『비핵화 공동선언』만 가지고는 이행이 불충분 하다느니,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배비 등을 어떻게 안하자는 것인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느니 하면서 공동선언 1, 2, 3항을 실천하기 위한 별도의 합의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음.</p> <p>쌍방이 당연히 즉각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을 두고 또다시 합의를 해야 한다면 남북간의 합의는 어떻게 실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가?</p> <p>쌍방이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문제를 놓고 토의를 해서 필요한 합의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합의문건으로 채택하면 되는 것이지 공동선언 이행의 전제로 합의해 두어야 할 사항은 없는 것임.</p> <p>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이 이와같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할 뿐만 아니라 제4조 사찰규정 작성 시한 관련 조항에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별도의 합의서가 채택되어야 사찰을 실시할 수 있다면서 그것을 전제조건화 하여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려 했음.</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6차-p.25)</p> <p>앞부분은 같음.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의 이행과』 거기까지는 같은데. 『이행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문제를 토의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되는 부속 문건을, 필요한 경우 관계되는 제안의 처리에 관</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4차-pp.34~35)</p> <p>첫째 조항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합의서 채택과 관련한 사항」 이것을 핵통제위원회가 협의, 추진할 사항으로 넣었음. 이것이 우리가 북과 남 사이에 이미 합의하고, 발효되고 최고당국자가 비준한 이 「비핵화 공동선언」 어디에 어떻게 돼서 이것이 위반되는가, 맞지 않는가 그것을 설명하시기 바람. 우리 충실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함. 전적으로 동감인데 만약에 이 조항이 「비핵화 공동선언」하고 무슨 다른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것 설명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4차-p.39)</p> <p>『기타 한반도의 비핵화를 구현하는 문제와 관련한 사항』이 조항까지 고려해서 이것은 첫째조항하고 유사하면서도 약간 다르단 말임.</p> <p>그래서 기타사항, 말하자면 기타사항까지 고려해서 우리는 2조 1항</p>

우 리 측	북 측
<p>한 사항』 그래도 좋음, 신축성 있게. 『필요시 관계되는 제안과 문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핵통위 5차-p.27)</p> <p>「이행을 위한 합의서 채택」을 풀어쓰셨는데, 이 합의문건이 뭐냐? 이행을 위한 것만임. 우리는 좀더 넓은. 일반화되어 있음. 그러니까 그 일반화된 정신을 좀 더 살린다면. 아까 똑같은 문제가 위에도 「협의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토의하는」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는 이야긴데, 앞에 「협의추진」이라는 건 전반적인 원칙을 이렇게 이야기 한거고 여기서는 이행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거란 말임. 그럼 그러한 문제를 토의해서, 토의에서 끝나는 것도 있음.</p> <p>거기에 따라서 어떤 제안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 제안을 문서화할 경우도 있을테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더 일반화되는 정신을 살릴 수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핵통위 5차-pp.29~30)</p> <p>2조의 두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 추진한다」 했으니까 그 뜻이 중복되지 않나 그런 표현인데... 이렇게 하면 어떤가?</p> <p>『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문제를 토의한데 따라 필요한 경우</p>	<p>에 대한 문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함.</p> <p>『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합의문서 혹은 합의문건, 합의문서 채택과 기타 관련사항』 이것을 2조 1항으로 해서 귀측의 7항까지 포괄해서 우리는 이렇게 일반화해서 합의문서 혹은 합의문건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재 제기되고 있는 2조 1항을 우리 쌍방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었기 때문에 타결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임.</p> <p style="text-align: center;">(핵통위 5차-pp.23~25)</p> <p>2조 제목은 이렇게 되었음.</p> <p>『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 추진한다』 이렇게 되었음.</p> <p>그런데 이제 제안한 그 내용을 써본즉 이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토의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를 토의」하고 하는 표현은 불필요한 표현을 넣지 않았는가?</p> <p>『공동위원회가 협의, 추진한다』는 「협의」라는 자체는 벌써 토론을 전제로 한 것임.</p> <p>그리고 우리가 내놓은 제안에는 「합의문서 채택과」 이렇게 되어 있음.</p>

우 리 측	북 측
<p>부속문건을 처리하는 문제에 관한 사항, 부속문건을 처리하는 문제에 관한 사항, 아, 문제와 기타 관련된 사항』그러면 아주 좋음. (핵통위 5차-p.32)</p>	<p>귀측에서 내놓은 것은 『필요한 경우 관계되는 제안과 문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내 생각에는 상당한 정도로 표현이 좀 긴 것 같음. 그저 『합의문서, 문건을 합의하여 채택하는 것과 기타 관련된 사항』이라 함은 우리 안에 접근시켜서 타결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핵통위 5차-pp.28~29)</p> <p>귀측 문건은 「관련되는」 이렇게 되는데 그럼 「공동선언 이행과」 이것 좀 구속적인 감이 남. 「이행과 관련된」 하면 이행과 관련되는 구속적인 문건만 되는거지. 그러기 때문에 표현은 이걸 좀 전부 포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살려보시기 바람.</p> <p>그러나 굳이 한다면 다시 문안을 만들겠는데 「관련되는」 넣자면 넣긴 넣겠음. 난 빨리 타결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안에 이거 잘 돼 있지만 「관련된」 그걸 넣어야겠다면 넣잔 말임.</p> <p>그리고 합의문건은 토의할 필요가 없지, 위에 「협의 추진」이 있으니까. 우리 2조가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 추진한다.』 「협의」가 있으니까 「토의」라는 건 필요없지 뭐. 그저 제 생각에는 『공동 선언의 이행을 위한 합의 문서 채택과, 채택 기타 관련된 사항』 (핵통위 5차-pp.31~32)</p>

우 리 측	북 측
<p>이행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1, 2, 3항 이것이 공동선언의 가장 핵심되는 의무조항임. 그래서 그 의무조항은 그것으로서 이미 2월 19일 발효한 마당에 우리 쌍방이 다 각각 이행해야 할 사항이었음.</p> <p>그런데 다만 그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처리하는 권능을 이 통제위원회에 다 준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이의는 없음.</p> <p>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게 한건데 지금 귀측의 생각은 1, 2, 3항 가지고는 이행이 불충분하니까 별도의 합의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짚 말씀하고 있음. 그러니까 거기에 큰 차이가 있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점을 서로 잘 이해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34)</p> <p>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거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토의하고 어떠한 제한을 할 수도 있고, 토의해서 끝날 것도 있고 제안이 돼서 서로 합의해가지고 어떤 부속문건을 만들어야 할 경우도 생길거다. 그러니까 그 길은 열어주자 이런 얘기임.</p> <p>또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항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기타 관련된 사항」 그러면 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안이 귀측이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수용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앞으로 합리적으로 일을</p>	<p>어차피 귀측도 이 공동선언을 이행하자면 어떤 형태의 문건이든지 문건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쌍방이 다 이해를 같이 하고 있음.</p> <p>문서가 어떤 문서를 채택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핵통제에서 토의하도록 하고 여하튼간에 공동선언 하나 『조선반도의 비핵화선언에 관한 공동선언』 이거 자체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이걸 더 잘 이행하자면 그 어떤 문건이 있긴 있어야겠다 하는 문제는 우리 쌍방이 견해를 같이 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p.33~34)</p> <p>우리 북은 그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 귀측의, 말하자면 말씀을 빈다면, 업무처리 하는데서 그 어떤 초보적인 이치 순리가 있다. 그러니까 비유해서 말하면, 어떤 일이나 크게 방향이 설정되면 그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따르기 마련이 아닌가?</p> <p>우리가 알건데는 귀측에서 그 무슨 의무적인 성격이로든 정책 방향 같은 것이 서면, 꼭 무슨 회의 같은 것을 소집하고는 그 시행 대책을 협의해서 그것을 말하자면 정립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음.</p> <p>그렇기 때문에 비핵화공동선언도 우리로서는 그 선언의 1조, 2조 3조가 바로 의무조항이기는 하지만 그 의무조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p>

우 리 측	북 측
<p>처리하는데 좋은 문안으로 되어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35)</p> <p>양측안을 다 검토한, 또 그리고 수용한 안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문제를, 그러니까 이행문제를 토의한데 따라서 양측이 말이죠, 여러가지 이런 문제를 『토의한데 따라 필요한 경우 부속문건을 처리하는 문제와 기타 관련한 사항』 그러니까 바로 김대표가 얘기한 것을 그대로 문장으로 담은 것 아닌가?</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36)</p> <p>이행에 따른 부속문건이 없으니까 이행을 못 하겠다는 이론을 쭉 그 동안에 해왔기 때문에, 귀측에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견해가 다름.</p> <p>그러니까 우린 그것을 생각을 해서 「공동선언의 이행문제를 토의한데 따라서 필요한 경우 부속문건을 처리하는 문제와 기타 관련된」</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37)</p> <p>나는 이 문제를 토의할 때 어제 4조 우리가 토의하면서, 귀측 4조</p>	<p>집행하겠느냐 하는 집행대책에 관한 문서를 만드는 것은 좋으면 좋았지 나쁜 것은 없지 않느냐. 우리 생각이 그러함.</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p.35~36)</p> <p>예를 들면 부속문건,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부속문건 채택」, 공동선언은 기본 문건이고 거기에 뒤따른 것, 그러니까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부속문건」 이렇게는 받아 들이자.</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36)</p> <p>첫째는 「필요한 경우」, 이거는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부속문건」 해놓으면 귀측에서 계속 말씀하시는게 이거 「합의서」라 규정하는 문제가 딱 「합의서」라 해야 되겠는가? 무슨 세칙이 있을 수도 있고, 무슨 규정이 있을 수도 있고, 필요하면 합의서 형태로 될 수도 있고, 이 건 뭐인가 나오는건 그렇게 나올 수 있겠다. 예를 들면 토의과정에 나올 수 있겠다.</p> <p>그러니까 난 「필요한 경우」라는거 이걸 없어도 되겠다. 우선 문장을 다듬기 전에 「필요한 경우」 필요 없고.</p> <p>그 다음에 「이행을 위한 부속문건」 그래서 우리는 「합의문서 혹은</p>

우 리 측	북 측
<p>에 보면 두개의 전제조건을 들고 있었는데, 그중에 첫번째 전제조건 『조선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위한 합의서』하는 걸 내놨는데 여기서 이것은 빠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임. 빠지는 것을 전제로.</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39)</p>	<p>합의문건」이거는 하여간 이렇게 된건데 「부속문건」 하자면 우리 좀 연구해 보겠음.</p> <p>근데 「부속문건을 처리한다」 부속문건이 나오지도 못 했는데 무슨 부속문건 처리하느냐? 「부속문건을 처리한다」는게 이게 좀 막연한 개념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p.37~38)</p> <p>2조 1항을 문항 정리가 합의, 거의 합의점에 도달하지 않았는가?</p> <p>거의 합의점에 도달하여 마저 정리하자. 마저 정리해야 이 문제도 어떻게 정리하는가 따라서 귀측 4조에 대한 우리 입장도 밝힐 수 있고.</p> <p>이밖에도 우리 4조 있잖는가? 우리 4조 있는 내용이 2조 1항과 관련돼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p.39~40)</p>
<p>『이행문제를 토의한데 따라』 거기까지 좋다 이거지. 『채택·처리하는 문제와 기타 관련한 사항』 「필요한 경우」는 빠진다. 「필요한 경우」 빠져도 상관없음. 필요하지 않으면 채택이 안되니까.</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41)</p>	<p>귀측 안대로, 귀측 안대로 『공동선언의 이행문제를 토의한데 따라』 「필요한 경우」는 빼고. 『공동선언의 이행문제를 토의한데 따라』 이렇게 됐다. 「문제를 토의한데 따라」 그 부속문건 있지 않은가? 『부속문건을, 부속문건을 채택하며』 『채택하고 처리하는 문제와』 이렇게 하면 됨.</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41)</p>

우 리 측	북 측
<p>우리 1항과 그쪽 2항과 짝이 되는데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련된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은데, 표현이 『쌍방이 핵시설과 핵물질, 핵무기와 핵기지에 대한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우리는 포괄적으로 비핵화선언에서 규제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정보,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바꾸었음. 귀측의견도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핵기지, 모든 정보가 포함되는 뜻으로 썼음. 왜? 비핵화공동선언에서 말하는 비핵화 전부를 포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표현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62)</p> <p>핵시설과 핵물질, 핵무기와 핵기지는 물론이고 그외에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다 교환해야 됨.</p>	<p>『제2조 핵통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 추진한다. 1. 조선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문제를 토의한데 따라 부속문건들을 채택·처리하는 문제와 기타 관련사항』</p> <p>2조 양쪽 거 다 반영 됐음. 우리 부속문건이란 아무래도 공동선언을 기본문건으로 본다면 다 채택되는 무슨 문건이 되든지.</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45)</p> <p>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얼핏 보기에는 포괄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정확한 표현이 못 됨. 비핵화라는 의미에서는 앞으로 비핵화실현 질서라든가 쌍방이 해야할 그런 규칙, 제도 이런것 까지 포함돼야 함. 그 모든 것이 다 정보에 들어갈 수는 없음.</p> <p>그렇기 때문에 여기 표현이 정확치 못하고 우리가 한 표현대로 해야 명백할 것 같음. 비핵화다 할 적에는 포괄범위가 그렇지 않다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p.62~63)</p> <p>만약에 이번에 귀측안대로 이와같이 일반화 해가지고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련된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정보교환과 관련한 합의서를 또 만들어야 됨.</p>

우 리 측	북 측
<p>1항에서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된 모든 정보, 2항에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는 것과 관련된 모든 정보, 또 그리고 3항에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모든 정보를 통털어서 『비핵화에 관련된 정보』, 이렇게 광의로 쓰는 것이 아주 옳은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음.</p> <p>(핵통위 3차-p.63)</p> <p>북쪽에 있는 핵무기는 기지를 따로 어떻게 요란하게 만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는 내가 들어 본 적이 없고 핵무기가 있는 곳이 핵기지임. 핵무기가 없는 핵기지가 어디 있고...</p> <p>(핵통위 4차-p.53)</p> <p>사실은 귀측도 내놓은 문장에 대해서 잘 좀 신경을 써보기 바람.</p> <p>「쌍방의」 쌍방이라고 했음. 「쌍방의 핵시설과 핵물질, 핵무기와 핵기지」하면, 남쪽 북쪽에 다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핵기지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게 되는 것임.</p> <p>그런데 귀측에는 핵무기가 없고 핵기지도 없다고 그러고, 우리도 핵무기, 핵기지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 아닌가?</p>	<p>그건 왜 그러나 하면 정보교환할 때 또 서로 이해가 다름. 그래서 너무 구체적으로 하자는 의미로 하지 않고 정보교환에서 대상을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범주를. 요걸 규제해 놓자.</p> <p>너무 막연하게 해놓으면 앞으로 정보교환 단계에 가서 또 이거 의견이 엇갈라짐.</p> <p>(핵통위 3차-pp.63~64)</p> <p>우리는 대화상대방이기 때문에 「핵부재선언」을 12월 18일 귀측에서 발표했는데, 우리는 일단 그 내용을 믿음. 그러나 실제 미국의 핵무기와 핵기지가 있는가 없는가는 따로 검증해 봐야, 검증해 보면 그때 없다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이고 있다면 있는 것으로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됨.</p> <p>(핵통위 4차-p.47)</p> <p>「존재여부에 대한 정보교환」하면 어떤 정보인가 핵무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정보임. 그리고 그것은 핵통제공동위원회가 수행할, 말하자면 협의 추진할 사항인데, 핵통제공동위원회가 협의 추진할 사항은 현재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늘 임동원 선생이 얘기하는 것처럼 미래지향적인 문제임.</p>

우 리 측	북 측
<p>그러니까 「존재여부」라고 해야 정확한 얘기임.</p> <p>귀측은, 귀측이 쌍방에 핵시설, 핵물질, 핵기지와 핵무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이런 표현이 옳은 것인가? 해서 우리가 전향적인 안을 낸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4차-pp.54~55)</p> <p>『핵사찰 대상의 선정, 사찰절차·방법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면 핵사찰의 대상이라는 것이 스스로 이거는 우리가 공동선언에 기초하기 때문에 자명해짐.</p> <p>또 하나는 그 앞에 2항에서 『쌍방의 핵시설과 핵물질 그 다음에 핵무기의 존재여부에 대한 정보교환에 대한 사항』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 이걸 의당 사찰대상에 든다는 것이 벌써 이미 나와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4차-p.91)</p>	<p>여기다 넣었다고 해서 우리가 꼭 남측에 지금 핵무기가 있다 없다 하는, 규제하는 말은 되지 않음.</p> <p>그렇기 때문에 핵무기야, 핵무기 문제를 넣자면 뒤 「존재여부에 대한」 이 말은 필요없음. 사실,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 핵무기, 핵기지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호상 교환한다는 소리임.</p> <p>그리고 핵무기만 얘기하는데 핵무기와 핵기지는 구별됨. 때에 따라서는 핵무기가 창고에 있을 수도 있음. 핵기지는 설비했지만 그 기지에 핵무기가 들어가 안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와 핵기지는 엄연한 의미에서 구별되는 인식임.</p> <p>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핵무기와 핵기지가 들어가야 됨. 이와 관련해서 크게 무슨 그쪽에서 받아 못 들이는 근거 없을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4차-p.52)</p> <p>북과 남의 의혹을 풀기 위한 것을 사찰대상에 넣어야 되겠고 첫째는, 다음 둘째는 조선반도를 비핵화하자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한 핵시설과 핵물질, 핵무기와 핵기지에 대한 이제 그런거부터 출발해서 사찰대상에 넣어가지고 사찰을 해야하지 않겠는가. 거기로부터 출발함.</p> <p>핵통제위원회가 조선반도를 비핵화한다는 것에 대비해서 사찰을 해</p>

우 리 측	북 측
<p>지난번에 우리가 수정해서 귀측의 의사를 존중해서 수정안을 이렇게 제의를 했음.</p> <p>『쌍방의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의 존재여부에 대한 정보 교환에 관한사항』, 이래서 거기에 그때 핵기지도 넣었으면 좋지 않겠</p>	<p>야 되겠는데 우리는 남쪽, 그 부재선언을 발표했지만, 미국의 핵무기, 핵기지 때문에 우린 핵위협이 있다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귀측은 북에서 어떤 무슨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지고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차례 이야기되지 않았는가?</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4차-p.90)</p> <p>우리는 지금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할데 대한 문제를 협의중에 있는데, 비핵화공동선언에도 사찰대상을 선정하고 사찰절차와 방법을 규정한다고 우리 비핵화공동선언에 규제돼 있는데, 같은 내용을 비핵화 아니 핵통제공동위원회 합의서에다 그 내용을 그대로 넣어 놓으면 그게 무엇이 되겠는가?</p> <p>우리는 핵통제위원회가 일할 수 있게끔 합의서를 만들어 줘야 함. 이렇게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4차-p.91)</p> <p>귀측은 우리가 2조 8항을 고려하게 되면 나머지 우리 2조에 포함된 나머지 문제들도 이런 난관없이 쉽게 타결하고 우리 안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것도 시사했는데, 이제 2조 중에서 나머지 라는 것은 다르게 없고 우리 2항 우리 문건이면 우리 2항 우리 4항,</p>

우 리 측	북 측
<p>는가 하는 주장을 그쪽에서 폈는데, 핵무기가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면 장소없이 무기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는가?</p> <p>그러니까 핵기지라는 말을 구태여 안 포함시켜도 「그런 뜻이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음.</p> <p>『핵무기의 존재여부에 대한 교환에,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여기서 는 요전에도 얘기했지만 미리 쌍방이 모두 다 핵시설 핵물질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것은 뭐 공개적으로 다 갖고 있는 것인데, 「쌍방의」 해 가지고 나와있기 때문에 남과 북이 핵무기·핵기지가 다 있는 것 같이 오해될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 그쪽도 핵무기·핵기지 없다는 것이고 우리도 핵무기·핵기지 없다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미리 현재 있는 것 같이 표현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음.</p> <p>그래서 「존재여부에 대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피차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제의했었음.</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p.47~48)</p> <p>우리측 안을, 「그리고 핵무기의 존재여부에 대한 정보」 그리 내놓 았음. 뭐 우리측 안을 안 내놓은 것 같이 뭐 그러는데.</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50)</p>	<p>귀측 문건에 따르면 귀측의 2조에서 1항하고 귀측의 3항이 됨.</p> <p>그러니까 현재 타결되지 못한 문제는 우리 문건에는 1항과 4항이 고, 귀측 문건에 의하면 1항과 3항임.</p> <p>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이미 쌍방사이에 여러차례 논의를 하 다가 귀측이 우리한테 제기된 문건을 보면 『쌍방의 핵시설과 핵물질 에 대한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맨 처음에 제기된게, 다음 귀측의 또 3항에 우리는 4항인데, 그쪽의 3항에 제기된 『쌍방의 핵시설과 핵물 질에 대한 사찰대상의 선정 및 사찰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 이렇게 귀측에 제기했음.</p> <p>이렇게 제기하면서 귀측은 우리 1차 백화원에서 접촉을 할 때도 그 령고 또 그 후에 여러차례 접촉과정에 핵물질이라는 개념에는 광의로 표현하면 핵무기도 다 포함된다는 것을 여러차례 설명을 했고, 여기 핵무기, 핵기지 문제를 우리 사찰대상에 선정하고 정보교환 사항을 넣는거 이것은 다른 문제가 있을게 아니고 단지 핵물질이라는 개념에 광의로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차례 설명하였음.</p> <p>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나머지 조항 두개가 남은거 만큼 같은 개념 인데 그래서 귀측이 제기한 핵시설과 핵물질 여기에다가 이미 우리가 제기한대로 괄호열고 핵무기·핵기지 포함, 이렇게 하게 되면 임대표 선생이 여러차례 말씀하신 그와 같은 것까지 다 충분히 반영해서, 반</p>

우 리 측	북 측
	<p>영해서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함.</p> <p>(핵통위 5차—pp.45~46)</p> <p>우선 거기에서 핵무기가 있으면 핵기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우선 핵물질과 핵시설이면 그 안에 핵무기와 핵기지가 넓은 범위에서는 포함된다는 그 뜻이 우선 맞지 않음.</p> <p>왜냐하면 핵탄을 가지고 핵물질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음. 그리고 핵기지와 핵시설은 다름.</p> <p>그래서 명백히 「핵물질과 핵시설, 핵무기와 핵기지」라는 이것은 명백히 우리로서는 표기해야 되겠음.</p> <p>두번째, 「존재여부」에 대한 문제임. 물론 귀측에서는 지금 부재선언을 발표한 다음에 핵무기가 없다는데 대해서 세상에 대고 얘기했음. 우리 그 자체를 지금 믿자고 함.</p> <p>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문안을 정리하는데서 「존재여부에 대한 정보교환」하면 그 정보가 어떤 정보가 되는가?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만을 따지는 정보가 될 것임.</p> <p>그러나 우리가 바꾸자는 정보교환은 그런 것이 아님.</p> <p>핵물질, 핵시설, 핵무기, 핵기지 전반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임. 앞에다가 「존재여부에 대한」 그 말하자면 정보교환할 적에는 「있는</p>

우 리 측	북 측
<p>넣는다고 그러기는, 보여준다고 그랬음 그때. 귀측이 의심하는 군사기지, 핵무기가 있다고 주장하는 군사기지를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51)</p> <p>내가 기록 목적상 분명히 해두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음. 그렇게 꼬리를 잡고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음. 우리는 이미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영토내에 단 하나의 핵무기, 핵기지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을 잘 알고 있잖는가?</p> <p>그후에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하는데 내가 핵무기가 있다, 핵기지가 있으니 와봐라 얘기 한 적 없음. 귀측이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핵무기가 있다고 의심하고 핵기지가 있다고 의심하는 것을 사찰대상으</p>	<p>가, 없는가?」 하는 것만 걸리는 말임. 그러기 때문에 귀측에서 내놓은 안이 정확히 되어있지 못함.</p> <p>그래서 우리가 내놓은 대로 어제 우리 절충안을 내놓았는데, 『쌍방의 핵시설과 핵물질(핵무기와 핵기지 포함), 이에 대한 정보교환에 관한사항』 이렇게 하면 정확할 것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p.48~49)</p> <p>임선생이 그전에 백화원에서 얘기할 적에 『핵무기 핵기지는 문제없이 넣을 수 있어, 그거는 문제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임.</p> <p>내 평양에 전화 걸어서 오늘 회담을 위해서 임선생이 하신 말씀을 기록을 가지고 왔음. 녹음도 가져왔고 기록도 가져왔음. 틀림없이 백화원에서 했음.</p> <p>『우리 핵무기, 핵기지 넣는 것은 문제없어, 얼마든지 넣수 있어』 이렇게 말했음.</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51)</p>

우 리 측	북 측
<p>로 포함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지, 우리 최고당국자가 이미 핵무기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핵무기 있다는 얘길 하겠는가? 그 무슨 맞지도 않는 얘길 하는가? 그건 명백히 하고 넘어감.</p> <p>단지 얘기하는 도중에 생략을 해가지고 길게 얘기할 걸 간단히 얘기한 것을 가지고 꼬리를 잡는 것은 좋지 않음. 귀측이 의심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겠다는 뜻임. 그건 서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음. 근데 그걸 꼬리를 잡는가?</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p.53~54)</p> <p>문안은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핵무기, 핵기지 없는걸 여가다 이렇게 써 놓긴 아주 그것은 절대 불가능 함.</p> <p>비핵화선언의 1항에 핵무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옴.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않고, 갖기도 않고, 배비하지도 않고 운운했던 말임. 그러니까 차라리 공동선언 1항과 관련해서든지 1, 2, 3항에 관한 정보교환이라든지 아주 이렇게 써놓는 방법으로 취하는 것이 어떻겠는가?</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p.54~55)</p> <p>그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해 보자 이것임. 『비핵화와 관련된,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과 관련된 사찰대상의 선정과 절차, 방법에 관</p>	<p>지금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오늘 마당에서는 논하지 말기 바람.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핵기지와 핵무기라는 이 여섯개글자를 넣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54)</p> <p>정보교환 그러면 귀측의 3항, 우리 4항 그건 어떻게 정리할 것 같은가? 「사찰대상 선정과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 그거와 연결되는 거니까, 그거 내 연구를 하겠음.</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55)</p>

우 리 측	북 측
<p>한 사항』 이려면 되지 막연하긴 뭐가 막연한가? 1, 2, 3항이라고 딱 꼬집었는데.</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55)</p> <p>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동선언 1, 2, 3항에 대한 정보교환 이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임.</p> <p>1항은 핵병기에 관한 사항이고, 핵무기에 관한 사항이고, 2항은 핵 물질의 평화적인 사용을 위한, 에너르기의 사용을 위한 것이고 3항은 시설, 핵시설에 관한 사항 아닌가? 그러니까 오죽 정확한가?</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58)</p> <p>비핵화에 관련된 모든 정보, 그러니까 비핵화선언에서 1, 2, 3항 언급하고 있음. 핵무기에 관련된 문제,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는 핵재처리시의 농축시설에 관한 것, 핵시설, 물질, 핵무기 전부가 포함되는 것임. 몽땅 다 포함됨.</p> <p>그리고 그 다음에 4항은 그냥 반복할 필요없이 한번하면 되는 것이니까 「핵사찰 대상의 선정, 사찰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자는 것임.</p>	<p>『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사찰대상의 선정 및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 근데 그게 조금 막연함.</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55)</p> <p>임대표 선생이 여러차례 말씀한게 핵물질이라는 개념에는 여기에는 넓은 범위에서 핵무기라든가 그것을 배치한 시설 이라든가 이게 다 포함된다. 그러기 때문에 괄호안에 「핵무기, 핵기지 포함」 이렇게 하니까 귀측에서 이견 좀 꺼린다 말임.</p> <p>그러니까 괄호를 좀 푼다 이거지. 『핵물질이라는 개념에는 핵무기와 그것을 배치한 핵기지라는 뜻도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뜻으로 포함된다는 거, 이렇게 좀 풀어쓰는 방법 없겠는가?</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57)</p> <p>『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련된』 이렇게 되고선 어떤 뜻이 포함되는가? 조선반도, 귀측에서는 한반도,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련된 정보」 그러면 어떤 것이 포함되는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련된 정보」라면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핵기지 이것 다 포함되지 않는가?</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제 5차-pp.60~61)</p>

우 리 측	북 측
<p>(핵통위 5차-pp.60~62)</p> <p>『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대상』이면 됐지, 그것을 또 거기다가 말이야 공동선언의 1, 2, 3항이라고 하는 것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가? 비핵화를 위한 것은 1, 2, 3항인데.</p> <p>(핵통위 5차-pp.63~64)</p>	<p>공선생도 그렇고, 임선생도 그렇고 「관련된 정보」하게 되면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핵기지 포함된다 그럼 명백히 두번, 세번 그리고 여기 「정보」에 괄호 열고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핵기지 포함」 이렇게 쓰잔 말임.</p> <p>그래서 이렇게 4항,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이것도 우리 공동선언에 딱 명기되어 있는 것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 대상(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핵기지 포함), 사찰대상의 선정 및 사찰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한다는 것임.</p> <p>(핵통위 5차-pp.62~63)</p>
<p>지금 자꾸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 잎사귀만 가지고 논하는 격이 되는데 우리 한번 서로를 한번 보자. 서문에 딱 「남과 북은」 그쪽 표현대로 하면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들어있단 말임. 그래서 아래와 같은 것을 합의했다고 그러는데 뭐 매 조항마다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이것을 다 넣어야 된다는 것은...</p> <p>(핵통위 5차-pp.64~65)</p>	<p>우리는 그것을 안 넣고, 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것은 원래 안 넣을라는데, 귀측에서 제기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안 넣고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핵기지』 이렇게 명백히 밝히자고 그러는데, 귀측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을 넣자고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뜬 감이 나니까 괄호 안에 넣자는 것이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거야 귀측에서 넣자고 그런 것이지 우리측에서 넣자고 했는가?</p> <p>(핵통위 5차-p.65)</p>

우 리 측	북 측
<p>자꾸만 괄호해서 핵무기, 핵기지 그러시는데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귀측의 집요한 요구를 감안해서 핵무기의 존재 여부라는 얘기를 집어 넣었던 말임. 「정보 교환에 관한 대상」 제1항에다가.</p> <p>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으시고 동시에 핵사찰 대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걱정이 되신다면, 핵사찰 대상의 우리 안대로 말이지요, 제3항인데 우리 항 3항 「핵사찰 대상의 선정, 사찰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상 속에다가 집어넣되 핵시설, 핵무기의 존재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임.</p> <p>그렇게 넣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는 귀측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괄호속에다 핵무기, 핵기지 이렇게 넣는 것은 이것은....</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67)</p> <p>무슨 좋은 말이 있으면 넣기 바람. 왜 그런가 하면 없다는 것을 자꾸만 지금 하니까 우리는 그건 못 받겠다는 얘기임.</p>	<p>그런데 귀측이 내놓은 것 3항에서 있던 것, 4항으로 됐는데 보면 『사찰 대상의 선정,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비핵화 공동선언 4번째 항목에 『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너무 일반화해서 해 놓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구체화 되기는 돼야 되겠음.</p> <p>구체화 하자니까 결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을 넣을라면 넣고 뺄라면 빼는 건데 여기다 대상을 이게 대상선정이니까,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겠는가, 여기는 공동선언에는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 이랬으니까 이 대상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겠는가?</p> <p>그래서 귀측이 제기한 핵시설과 핵물질을 놓고, 핵물질에다가는 핵무기도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핵무기, 핵기지를 포함시키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타결하지 않겠는가?</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66)</p> <p>존재여부 대상에다가 대상선정을, 가만 있어봐, 「대상 선정」을 「존재 여부」하겠나?</p>

우 리 측	북 측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68)</p> <p>「정보교환에 관한 사항」하고, 그런데 괄호안이 필요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72)</p> <p>그 괄호속에 꼭 넣으려면 『핵시설, 핵무기 아니 핵물질, 핵무기의 존재여부』 이거까지는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왜 싹 뭉개는가?</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68)</p> <p>우리 2조 2항은 「조선 반도의 비핵화에 관련된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겠다면 귀측은 다른거 없겠다든 말씀인가, 말하자면. 아까 제기한 것을 이렇게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련된 정보교환의 사항」 우리는 여기다가 「관련된 정보」하고는 안에다가 핵시설, 핵물질 이렇게 넣자는 거고…….</p> <p>그 다음에 이제 우리 4항이고 그쪽은 3항인데, 여기도 일반화 해 놓는다면 그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이제 귀측의 주장대로 하게 되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 대상의 선정 및 사찰절차·방법에 관한 사항」</p> <p>만약에 이것 4항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 대상의 선정 및 사찰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면 다른 얘기는 없겠다 말씀인가?</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p.71~72)</p> <p>귀측에서는 내는 안이 어떻게 됐는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련된 정보의,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기로 했음. 그래서 우리가 내는 것이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련한 정보(핵시설, 핵물질, 핵</p>

우 리 측	북 측
<p>(핵통위 5차-p.112)</p> <p>「핵기지」 애긴데, 「존재여부」란 걸 넣으라고. 상관없음. 「존재여부에 관한 정보」는 왜 또 나쁜가?</p> <p>(핵통위 5차-p.115)</p> <p>2조 4항은, 귀측이 아까 또 대안을 했는데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대상』 그리고 괄호 넣자고 그랬는데. 그거는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대상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 자동적으로 여기에 명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사찰대상의 선정 및 사찰절차·방법에 관한 사항』하고 이거는 괄호를 빼자 이거야. 발언을 재탕하지 말자 이거야. 뭘 몇번씩 재탕하겠는가 이거야, 한번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이걸 재탕하지 말자 하는 것임.</p> <p>그리고 2항에는 정보에 관한 사항에는 괄호안에 넣는데에 우리가 동의를 했음. 그런데 표기를 요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는가에 이의가 있는데, 우선 4항에 대해서 괄호안에 넣을 필요가 없음. 재탕할 필요가 없다 이것임. 그러니깐 요건 빼자는 걸 먼저 합의하기 바람.</p> <p>(핵통위 5차-p.121)</p>	<p>무기, 핵기지에 관한 정보포함)에 관한 사항』임.</p> <p>(핵통위 5차-p.112)</p> <p>「핵무기, 핵기지 존재여부」하면 정보가, 어떤 정보가 되는가? 그놈의 핵기지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정보가 된다 말임. 그런 것이 아님.</p> <p>「핵기지」란 말을 왜 얘기하는가? 「관련한 정보의 교환에 관한 사항」인데, 거기다가 「핵무기, 핵기지와 관련한 정보」라고 쓰면 뭐 나쁜게 있는가? 뒤에 정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무슨 별개 없단 말임.</p> <p>「존재여부」라 함은 있는가 없는가 하는데에만 걸린다는데 그레. 유무에만 걸린단 말임. 유무에 관련된 정보만 걸린단 말임.</p> <p>(핵통위 5차-p.115)</p> <p>아무래도 이 4번째 항에다가 여기에다가 「사찰대상」하면 뭐, 뭐라는 걸 찍어 넣어야지. 이걸 우리 비핵화공동선언과 같은, 똑같은 표현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지금 우리 합의서를 만드나 마나임.</p> <p>그래도 공동선언보다는 좀 구체화돼야 됴. 공동선언에 이미 사찰대상을 정한다면 다 있는데, 합의서에다가도 그대로 넣을 바에야 이게 무슨 합의선가 말임. 좀 구체화돼야 됴.</p> <p>핵통제위원회가 쉽게 빠른 시일안에 모든 걸 절충해서 합의할 수</p>

우 리 측	북 측
<p>우리의 기본생각은 남한 땅에 지금 핵무기가 없음. 그런데, 자꾸만 핵무기, 핵기지 말이야, 있는 것 같이 기정사실화하는거 싫다, 이런 얘기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124)</p> <p>귀측이 놓자고 하도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개념과 전혀 다르지만 주장하기 때문에, 이를 타결을 지어 나가기 위해서 「핵기지」까지 넣으려면 놓자. 그러나 「핵무기, 핵기지의 존재여부」라고 하자. 그래야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됨. 여기까지 나왔음.</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p.130~131)</p>	<p>있게끔 우리가 기초를 마련해 주자는 것임. 다른 의도가 아니고. 이걸 안 해놓게 되면 핵통제위원회 갔을 때 다시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겠는가? 이거 몇 번에 걸쳐 논의된 거 또 하겠는가?</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p.120~121)</p> <p>우리가 말하는 것은 대상을 선정해 놓고 가보면 존재여부가 나타나게 마련임. 그렇기 때문에 뭘 보는가 하는 대상을 넣었음.</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124)</p> <p>내가 말하는건 여기 이제 정보교환에다가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까지 넣는거, 넣는거는 다른 의견이 별거 없고. 「핵기지」 요게 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130)</p> <p>내가 말하는건 「존재여부」하는 거는 아무래도 대상선정에서 그거는 검증한 다음에 있는가, 없는가, 검증결과로서 나타나야 할 사항이고. 검증결과로 나타날 사항을 여기다가, 그때 있는가 없는가 검증결과로 나타나고. 검증한 다음에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것임.</p>

우 리 측	북 측
<p>그 「존재여부」가 왜 그렇게 싫은지 난 참 알 수가 없음.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가? 「핵시설, 핵물질」 그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건 명확함. 『그리고 상대측이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 및 핵기지 포함』, 어떤가?</p> <p>(핵통위 5차-p.131)</p> <p>상대측이 있다고 하는거 없다고 그러면 어떻하겠느냐? 그런 혐의가 있는 핵무기와 핵기지를 여기다 포함을 시키자, 이런 얘기임. 정보교환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있을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기 다 포함하자. 「상대측이 주장하는」 그러면 문장이 잘 안 맞지. 상대측이 상대방에 있다고,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임.</p> <p>(핵통위 5차-pp.135~136)</p> <p>「혐의가 있는」하면 상당히 객관적임. 이사람도 저사람도 다 혐의가 있다고 얘기하지, 「혐의 있는」 이런다고요. 그런데 어느 한사람이 혐의하는 건 그 사람의 주관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을 수 있음. 객관성</p>	<p>(핵통위 5차-p.133)</p> <p>그러면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정보 「핵시설, 핵물질, 그리고 상대측이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 핵기지 포함」 해석이 내마음에 들면 내 동의하겠음.</p> <p>(핵통위 5차-pp.134~135)</p> <p>「상대측이」 간단하게, 「상대측이 주장하는」 요렇게 하면 어떤가? 이렇게 하면 어떤가. 「그리고 상대측의 혐의가 있는」 요렇게 하면?</p> <p>(핵통위 5차-pp.136~137)</p> <p>그러니까 「핵시설, 핵물질 그리고 상대측이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 핵기지 포함」. 우리가 공동선언에 「사찰대상은 원래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한」 이런 조항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상대측이」 빼치우고 그저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대측이 혐의가 있다고 보는, 혐의가 있다고 보는 핵무기, 핵기지 포함」. 이렇게 하면 어떤가? 「상대측이 혐의가 있다고 보는」하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지금 그렇게 하자,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렇게 동의함. 「상대측」은 빼고. 그러면 「상대측은」 빼고.</p>

우 리 측	북 측
<p>이 덜하다고. 그러니까 「협의하는 거」하고 「협의있는 거」하고 다름. (핵통위 5차-p.138)</p> <p>귀측도 논쟁에 여지를 좀 줄이기 위해서 3항 좀 보기 바람. 우리 2항인데, 우린 그냥 『핵사찰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그런데 거긴 『조선반도에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이긴 형용사가 길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해 놓았던거. 이번에 정리했음. (핵통위 3차-p.66)</p>	<p>『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그리고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 핵기지 포함』. 2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정보(핵시설, 핵물질 그리고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 핵기지 포함)교환에 관한 사항.』 제4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대상(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그리고』 또 있어야 되나 여기서? 「그리고」 같지? 「그리고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 핵기지 포함」 같은 걸로, 「사찰대상의 선정 및 사찰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 좋아, 이렇게 합의 됐음. (핵통위 5차-pp.139~141)</p> <p>우리가 3항에 넣은거는 귀측이 종전에 내 놓은 안에, 두번째안에 내놓은거를 그저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접수해 내놓은 것임. 그대로 접수해가지고 전번에 27일 접촉에 우리안 넘겨 주었던 것임. 그럼 자기측안을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그대로 내놓은건데 그러면 그것을 합의된 것으로 넘어가야지. 그 안을 받아들고 가가지고 또 수정해서 나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걸 이렇게 되면 안됨.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달라서 이거는 우리안은 이미 귀측안을 그대로 100% 받아 들인 것이니까, 한자도 틀리지 않고. 그러니 합의</p>

우 리 측	북 측
<p>최선생 지금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는가? 한반도의 비핵화문제를 의논하고 있음.</p> <p>그런데 이것은 무엇에 토대를 두고 하고 있는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토대를 두고 하고 있음. 그렇다면 당연히 사찰단 구성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단임. 이거 무슨 중국, 중국에 가서 검증할 것도 아니고, 일본에 가서 검증할 것도 아니지 않는가?</p> <p>그래서 구태여 이런 수식어를 매번 넣을 필요 있는가? 왜 초안에는 우리가, 어찌다 그렇게 넣었드랬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아 이거 왜, 반복해서 그 수식어같은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뻔 것이지, 다른 뜻이 있어서 뻔 것이 아닌데, 귀측이 뭐 계속 넣자 할 것 같으면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4차—pp.58~59)</p> <p>우리 3항하고 귀측 4항을 보면 우린 간단히 『핵사찰 대상의 선정, 사찰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이랬단 말임. 그런데 이것도 앞에 형용</p>	<p>하고 넘어가자. 이거 뭐 더 미련을 남겨둘거 없음.</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p.67~68)</p> <p>우리 3항에다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할 사찰, 사찰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음. 요거는 이미 귀측에서 처음에 내놓았던 안에 요렇게 되어 있음. 물론 그 다음에 어제 내놓은 대상, 개개는 조금 다르게 내놓았음.</p> <p>우리가 이거 왜 제기하는가 하면, 귀측은 발전적으로 계속 이렇게 한다는데. 또 우리 귀측에서 우리가 내놓은 걸 동의해 준다면, 난 또 발전적으로 한다고, 또 다르게 내놓고, 또 우리가 내놓은 다음에 또 귀측이 다르게 내놓고, 그럼 합의된 것 하나도 없음.</p> <p>계속 발전적으로 한다는 이름 붙여가지고 계속 수정을 가하면 합의 못된단 말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측이 내놓은 걸 받아들였으니까, 그대로 하기로 함.</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4차—pp.57~58)</p> <p>귀측은 첫번째고 우린 두번째이고. 『쌍방의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정보에 관한 사항』, 귀측안은 이렇게 돼 있었던 말임.</p> <p>그래서 여기에다 단지 우리가 포함시킨 것은 핵무기와 핵기지라는</p>

우 리 측	북 측
<p>사가 쪽 붙어 있음. 우리도 맨처음에 그렇게 했으니까.</p> <p>쌍방의 핵시설과 핵물질, 핵무기와 핵기지에 대한 2항도 또 이렇게 써있고 4항도 이렇게 돼 있고, 무엇때문에 매번 반복해서 이렇게 쓰겠는가?</p> <p>핵심적인건 무엇인가 하면 사찰대상의 선정 및 사찰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인데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줄인 것임. 이걸 다른 뜻은 없는 것임.</p> <p>그 다음에 4항과 5항도 「핵사찰 장비에 관한 사항」 이렇게 줄였음. 이거는 핵사찰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인데 『사찰장비에 관한 사항』이랬던 말임. 이것도 줄여서 핵심적인 사항만 형용사적인 것은 뺐음.</p> <p>없어도 의미가 통하는 것은 이걸 하나의 범조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간단명료하면서 포함할 것은 다 포함해야 함.</p> <p>그 다음에 5번하고 6번인데 『핵사찰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이걸 『핵사찰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똑같네. 그런데 왜 이것도 할려면 『조선반도에 비핵화를 검증한 사찰 결과에 따른……』 뭐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그런거 다 빼버리자 이것임.</p> <p>그 다음에 6번하고 거기에 7번인데 『핵사찰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여기는 또 형용사를 정리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에서와 사찰활동에서 발생하는 분쟁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 여기서 『이행에서와』하는 것이 더 들어 갔음.</p>	<p>것을 포함시켰고 귀측 표현대로 다 같음.</p> <p>그러면 우리 세번째, 귀측 두번째는 꼭 같음.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는 사찰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됐는데, 귀측은 자기가 제기하고 우리가 받아 들인 것을 다시 또 수정해 나왔는데 이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귀측안을 받아들인 것은 합의한 것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것임.</p> <p>그 다음에 우리 네번째 항도, 귀측이 세번째 종전에 제기했던 안중에다가 단지 핵무기요 핵기지라는 것을 포함시켰다 뿐이지, 모든 조항의 표현법까지 같음.</p> <p>그렇기 때문에 귀측도 여러차례 핵사찰 대상에 핵무기와 핵기지를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이와같이 말씀한 바가 있는 것을 고려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수정해서 제기한데 다른 의의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봄.</p> <p>그 다음 귀측의 네번째 하고 우리의 다섯번째 하고는 같습니다. 『사찰에 사용될 수 있는 사찰장비에 관한 사항』 이것은 같은 것이고.</p> <p>그 다음에 여섯번째, 여섯번째는 귀측이 오늘도 여기 나온 것은 같음. 『핵사찰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이것도 같은 것이고.</p> <p>그 다음에 이제 분쟁문제 해결인데 귀측에서는 사찰활동과 관련하여, 『사찰활동에서 발생한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귀측이 제기한 『사찰 활동에서 발생하는 분쟁문제 해결에 관</p>

우 리 측	북 측
<p>그 다음 7번하고는 귀측에서 제의한 1번하고 상당히 비슷한 그 얘 기인데, 좀 다르지요. 원리는 이밖에 『기타 한반도의 비핵화를 구현하 는 문제와 관련한 사항』, 이밖에 빠진 모든 사항을 포괄하고 있고. 그 쪽에서 1번에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합의 서 채택과 관련한 사항』 이렇게 맞물려 있음.</p> <p>그리고 8번은 국제적 담보 문제는 우리가 이거는 받아 들일 수 없 음, 안넣은 것임. 그런 차이가 있어 8번은 제껴놓고.</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p.68~70)</p> <p>그러니까 여기서는 본질적인 문제들은 같은 뜻을 포함하고 있음. 뭐 하자는 것은 같은데, 그 앞에 형용사를 얼마큼 붙일 것인가에 대 해서 서로 이견이 좀 있는데,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봄.</p> <p>이것은 나중에 토의하면 서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76)</p> <p>지금 2항서부터, 귀측의 안에 의한 2항서부터 7항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정보교환』, 『사찰단 구성』, 『사찰규정』, 『사찰장비』, 『사찰결 과에 대한 시정조치』, 『분쟁해결』에 관한 문제 이것 본질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견을 같이 한다는 것 아닌가?</p> <p>표기 방법에 있어서만 어느 것이 더 좋겠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p>	<p>한 사항』이라는 자체를 받아들이면서도 우리가 분쟁문제는 순전히 사 찰활동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 이행에서도 그 어떤 분쟁이 발생안하면 좋지만 혹시 발생할 수 도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협의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됨.</p> <p>이런 의미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에서』를 앞에다 첨가한 것임. 우리 앞으로 핵통제라는 기능이 순전히 사찰기 능이 아니라, 비핵화 공동선언 전반을 이행하여야 할 기능을 수행해 야 되겠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첨가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타당 성이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함.</p> <p>그래 여덟번째 문제는 귀측 조항에 없고 우리한테만 있는 것인데 문 안 정리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조항의 일 곱번째, 귀측 조항의 여섯번째까지는 그저 현재 우리가 제기한 이 안에 따라서 우선 문안정리를 끝내고 그 나머지 여덟번째, 귀측의 일곱번 째, 여덟번째에 이 문제에 대한걸 또 토론한다든가. 이렇게 생각함.</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p.71~72)</p> <p>『쌍방의 핵시설과 핵물질, 핵무기와 핵기지에 대한 사찰결과에 따 른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이렇게 넣고 싶었던 말임.</p> <p>그래서 우리는 사실 귀측이 핵무기, 핵기지가하면 상당한 정도로 신 경을 쓰시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나 빼주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뺐</p>

우 리 측	북 측
<p>다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77)</p> <p>5항은 핵사찰 장비에 관한 사항인데, 『사찰에 사용될 수 있는 사찰 장비에 관한 사항』, 『사찰에 사용될 수 있는』것을 넣자면 넣자. 문제 없음. 우리가 잘못 내뱉었어. 그러니까 잘못 내뱉은건 우리가 받아들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4차-p.98)</p> <p>그 다음에 7번은 『핵사찰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그런데 거기에는 그쪽에서는 하나를 더 붙였죠?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에서와』 거기에서도 분쟁이 생긴다고 가정을 했던 말임.</p> <p>『사찰활동에서 발생하는 분쟁』 두가지 분쟁을 예건을 해서 이게 『해결에 관한 사항』이라 했음.</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4차-pp.99~100)</p> <p>조그마한 문제인데, 남북 양쪽 7항이 똑같은데, 『이행과 사찰 활동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귀측 안은 『분쟁문제의 해</p>	<p>것임.</p> <p>우리 넣자면 현재 귀측의 안 중에다가도 현재 귀측이 제기한 「마」항 있잖아요, 『쌍방의 핵시설과 핵물질, 핵무기와 핵기지에 대한 사찰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는게 좋음.</p> <p>그러나 매 조항마다 핵무기, 핵기지 이렇게 넣으면 이견 상당한 정도로 귀측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사찰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하게되면 우선 『정보교환』에 『핵시설과 핵물질, 핵무기와 핵기지』 문제가 포함되어 있고 다음 『사찰대상』에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핵기지』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응당히 『사찰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는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핵기지에 대한 사찰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로 된다. 이렇게 된다 말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74)</p> <p>우리가 처음에 했던 그대로 『사찰에 사용될 수 있는 사찰장비에 대한 사항』 이것인가?</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4차-p.98)</p> <p>『핵사찰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럼 『사찰』 빼고, 『장비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도록 함. 『핵사찰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에 관한 사항』 위</p>

우 리 측	북 측
<p>결에 관한 사항』, 뒤 「문제」라는게 있을 필요가 없는 얘기임. (핵통위 5차-p.142)</p> <p>『②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된 정보』, 거기서 문제가 있음.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정보』, 그것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얘기 안하고 괄호안만 얘기를 했음. 이것은 얘기를 안해서 차이가 있다고 여기 우리 실무자들이 지적해 놨음.</p> <p>우리는 『비핵화에 관련된 정보』, 거기는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정보』로 제한해 놨음. 『검증하기 위한』.</p> <p>(핵통위 7차-p.71)</p> <p>그러니까 그것은 귀측이 늘 주장하던 논리와 모순임. 귀측은 『검증이라는 건 그 중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문건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검증하기 위한 정보만인가? 관련된 정보, 관련된 정보는 넓은 의미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p> <p>검증과 관련없는 정보도 핵문제와 관련된 정보는 교환 안하겠다. 이거야? 검증을 안하는 거라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음.</p> <p>『비핵화에 관련된 정보』는 넓은 의미고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정보』는 검증하는 거에 한한 정보임. 그래서 좁은 개념이라는 것임.</p>	<p>에 『핵사찰』이 있으니까. 또 여기다 『사찰』 안넣어도 되잖아요? 『핵사찰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에 관한 사항』</p> <p>(핵통위 4차-pp.98~99)</p> <p>이행에서도 분쟁은 있을 수 있음. 왜냐하면 귀측에서 지금 이행에 대한거 특히나 합의서를 잘 만들지 않으면 더구나 분쟁이 있음.</p> <p>(핵통위 4차-p.100)</p> <p>우리는 해결한다 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대개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문제」를 넣는데, 「분쟁」도 해결하지 뭐. 그러나 「문제」도 해결하고. 그건 귀측안대로 그럼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고자 함.</p> <p>(핵통위 5차-pp.142~143)</p> <p>이것은 다름. 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정보』, 이렇게 합의했음.</p> <p>(핵통위 7차-p.71)</p> <p>이 검증은, 이 정보교환은, 검증을 위한 말하자면 사찰을 위한 그런</p>

우 리 측	부 측
<p>그래서 과거에 귀측에서 주장, 지금까지 귀측에서 주장하던 넓은 개념의 것을 늘 주장하던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7차-pp.72~73)</p> <p>그 다음에 『③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④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 대상(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협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와 핵기지 포함)의 선정, 사찰절차·방법에 관한 사항』.</p> <p>그런데 여기서 「선정, 사찰절차·방법에 관한 사항」 그랬는데, 여기서는 「선정 및 사찰절차·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및」이 뭐 필요한가?</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7차-p.73)</p>	<p>정보교환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면 이 조항만은 아무래도 검증을 위한 정보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사찰을 위한, 검증하기 위한 기초문건으로서의 정보교환이란 말임.</p> <p>『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정보』하고 『비핵화에 관련된 정보』하게 되면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 한번 설명, 나 이해가 안가서 그래. 그 차이가 뭐가?</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7차-pp.71~72)</p> <p>그럼 「선정」에 점 찍고 「및」은 빼고 그렇게 하자.</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7차-p.74)</p>

라. 운영문제

우 리 측	북 측
<p>『제3조 핵통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에 『2개월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날짜를 조절할 수도 있다.』 이래 돼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개념으로 구분해서 정기회의는 매 3개월마다 1회 하고, 수시회의는 수시로도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임시회의는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하고 상대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하는 식으로 표현했는데 여기에서 임시회의라 할까, 수시로 할 수 있는 회의를 여기서 배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우리는 「임시회의」라는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의 개념이 떠오르지 않음.</p>
<p>(핵통위 2차-p.23)</p>	<p>그래서 임시회의 개념을 없애 버렸음. 임시회의가 없다 보니까 정기회의라는 말도 없고 지금까지 북남대화에서 통속적으로 해오던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 이렇게 규정했다 말임.</p>
<p>정기회의는 분기에 한번씩, 석달에 한번씩 하고, 상호사찰은 합의에 의해서 많은 횟수를 할 수 있을텐데, 상호요청에 의해서 합의할 것 같으면,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그것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수시회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는 것임.</p>	<p>우리 초안에는 그러니까 내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서 차이점이 뭔가? 우선 토의내용에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내용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는 정기적으로 하는거고, 하나는 한쪽에서 부르게 되면 응해 나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토의문제 자체에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의 차이가 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바람.</p>
<p>(핵통위 2차-p.24)</p>	<p>(핵통위 2차-p.24)</p>
<p>1항 우리는 『핵통제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p>	<p>그렇다면 우리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하는 자체에서 토의내용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예하면 오늘 1차, 핵통제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했다 하게 되면 다음번 회의를 언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봄.</p>
	<p>이런 식으로 북과 남이 인식을 같이 하는데 기초해서 결국은 날짜를 이렇게 정했다 말임.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핵통제공동위원회도 1차회</p>

우 리 측	부 측
<p>분한다.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하며, 상대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하는 것임.</p> <p>귀측안은 『핵통제위원회 회의는 2개월에 1회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날짜를 조절할 수도 있다』하는 것임. 그러니까 임시회의 개념이 없는 것임. 그냥 날짜, 2개월에 한번 하는데 그 날짜를 조절할 수 있다 하는거에 불과한 거란 말임.</p> <p>이거는 그렇게 돼서는 안됨.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개념을 이걸 받아 들이는 것이 좋을 것임. 피차를 위해서.</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p.81~82)</p>	<p>담, 다음에는 2차회의를 언제 하는게 알맞겠느냐? 하는 문제가 돼가지고 2차회의를 날짜를 정하고 그 2차회의 가서는 또 토론해서 3차회의 정하고 이렇게 그때 그때 해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2차-pp.24~25)</p> <p>정기회의가 2개월에 1차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정기회의를 당길수도 있고 미룰수도 있기 때문에 임시회의란 개념을 구태여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음.</p> <p>내 이야기로는 이 핵통제위원회와 관련된 문제인데 필요에 따라선 2개월보다 먼저 할 수도 있고 넘겨 할 수도 있단 말임.</p> <p>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우리가 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 절차에서 이런게 아마 없어도 될 것 같음.</p> <p>그러면 임시회의는 귀측에서 여기다 설명하는거 보면 좀 자주 소집할거라 하는건데, 이것은 회담날짜를 조절하게 되어 있으면 빨리 좀 조절해서 뭐 이쪽에 한달내에 소집할 필요가 있으면 한달내에 하도록 토론해서 결정하면 되는거지. 뒷때문에 여기다가 정기회의, 임시회의 그 같은데 규제하겠는가. 우린 그런 견해임.</p> <p>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저 우리 안대로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면 모든 문제를 원만히 처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함.</p>

우 리 측	북 측
<p>여기에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 두 개념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뜻이라면 비슷한 내용이라는, 뜻이라는 것임.</p> <p>그렇다면 뭐 『임시회의』가 아니라도 『수시회의』라도 좋고. 『수시로 할 수 있다』해도 좋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거 스무번도 할 수 있다는 것임.</p> <p>그러면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2개월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그러면 되겠음.</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86)</p> <p>핵통제공동위원회는 분과위원회와 같은 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상정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임.</p> <p>왜? 핵사찰을 하게 되어 있음. 상호사찰을 하고 나서 필요에 따라서 『아! 이 결과 가지고 시정할 문제가 있다든가, 이 결과 가지고 논의할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얼마든지 예견치 못한, 예상치 못한 일과 관련된, 또 분쟁이 생겼다 할때 그건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어야</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p.82~83)</p> <p>얼마전에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만들때도 분과위원회는 한달에 한번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다음에 쌍방이 합의해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내 가지고 아무런 문제 없단 말임.</p> <p>분과위원회처럼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합시다. 날짜를 조절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되시면. 같은 개념이라 씀.</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p.85~86)</p> <p>조성된 문제를 협의하고 다음번은 이러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사찰단은 사찰단 활동을 하고,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검증사업을 하고 이렇게 되면 대충 한달 걸리겠으니까 그러면 한달후에 하자. 이거는 시간 많이 걸리겠으니까 석달 있다 하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안된다고 생각하는가?</p> <p>그러나 여기다 수시로 이거 결정할 수 있다고, 날짜를 조절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문제 대한 걸,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됨.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바람.</p>

우 리 측	북 측
<p>되는 것임.</p> <p>다음 정기회의, 두달 후 까지 기다릴 수 없이 시급한 일들이 생길 것을 예견할 수 있는 것임. 그래서 우리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개념을 도입한 것임. 이거는 분과위원회 개념과 다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88)</p> <p>분과위원회에서 수시로 한다는 개념과 좀 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예견할 수 있음. 핵사찰을 실시하지 않아요? 귀측도 남쪽에 와서 의심스런 것 보고싶은 거 아닌가? 보고싶어서 문제가 제기됨. 그래서 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상대측이 안들어 준다. 다음 정기회의에서 하자, 나중에 정식으로 할 때 하자, 안들어 준다. 그러나 시간이 요하다. 시간이 급하다, 빨리하는게 좋겠다. 이럴 수가 있다 이것임.</p> <p>그래서 요구하는 측에게 상당한 권한을 주도록 하는 것이 좋음. 다른 나라의 사찰과 관련된 것들을 보니까 다 이렇게 돼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4차-pp.103~104)</p> <p>『수시로 개최한다』하는 개념에는 우리가 의견을 같이 했음. 그래서 『일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나 『쌍방이 합의하여』인가 요것만 차이가 있음.</p>	<p>우린 지금까지 북남대화를 이렇게 해 와도 차질이 없이, 날짜상엔 차질이 없이 해왔단 말임. 매차 정하는게 가장 합리적임. 당시 상황을 가장 정확히 하는게 그때 당시 본회담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89)</p> <p>『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2개월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p> <p>요거는 우리 분과위원회도 보면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은 그저 회의를 제일 적게 하면 일년에 여섯번 할 것이고 뭐 많이하면 여섯번 이상 열번이 되겠는지 열다섯번이 되겠는지 이것도 서로 합의해서 넘어가게 될 것이고 이렇지 뭐. 이렇게 하고 합의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4차-p.103)</p> <p>현재는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요렇게 된 걸로 해서 넘어 가자.</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4차-p.105)</p>

우 리 측	북 측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4차-p.105)</p> <p>지난번에 어저께 그저께 회의에서 「쌍방이 합의하여」로 귀측이 수정해서 제의를 했는데. 우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가 아니라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하는 것으로 돼 있음. 그래서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임. 한쪽이 거부해 버리면 성립이 안됨.</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144)</p>	<p>1항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2개월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우리는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됐단 말임.</p> <p>그래서 이것 우리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귀측안을 받아 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함.</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143)</p> <p>우리는 원래 『날짜를 조절할 수 있다』. 「날짜를 조절」하는데, 귀측에서는 「수시로」 개념이 포함이 되는가? 좋다, 우리 「수시로」 포함된다. 그러면 「수시로」로 우리 받아들일 수 있다 하면서, 문안정리는 안 했는데 문안정리를 끝내자 말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p.143~144)</p>
<p>그것은 모든 일에도 그런 논리는 역시 해당될 것임.</p> <p>그러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어떤 사람이 대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임.</p> <p>그러기 위해서 대행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하면 될 것 같고. 꼭 부득이한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말이죠, 대행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p>	<p>그 문제에 대한 게 불합리하다는 거는 이미 우리가 입장을 밝혔고,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해놓으면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겠음.</p> <p>그것을 설명해서 더 설명하지 않고. 다른 한 측면에서 개인적 사정을 좀 연구해 봤지, 개인적 사정을.</p> <p>만약, 내가 핵통제공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나온다 하면, 난 외국에</p>

우 리 측	북 측
<p>왜 그러면 우리가 여기 딴 분과위원회에서는 『쌍방이 합의해서 이렇게 수시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는 유독 『일방의 요구가 있을때는 이걸 해야겠다』하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사안에 시급성이 여기엔 항상 따름, 이 핵공동위원회의 특성에 비추어서. 그래서 어느 일방이 아주 시급하다고 느껴서 얘기를 할 때는 역시 그러한 길을 터주어야 하지 않겠느냐.</p> <p>가령 옛날 소련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러한 신뢰구축을 위한 여러가지 균축관계 회의라든가 이런 것은 대부분이 그러한 생각들을 역시 채용을 하고 있음.</p> <p>그래서 우리 핵통제공동위원회도 역시 이 문제의 사안이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시급한 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만큼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게 좋겠음.</p> <p>최대표가 걱정하시는 문제는 그때 가서 어떤 대표 하나가 임시로 대행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p.147~148)</p>	<p>있으니까 출장 많이 다닌다고. 외국에 출장중이거든, 내가 없을 때 어느쪽에서, 그러나 여기서 누가 회의를 하자, 몇일날. 이제 한주일 후에 하자 그랬거든, 나는 출장을 이미 가 있는데.</p> <p>이런 경우에 지금 부재중이거든 평양에 없단말이야. 또 혹시 남쪽에서도 지금 공대사님이 이제 위원장으로 나오시면 어제 미국에 가 계시고 안계시단 말이야. 가서 한달 있다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나는 그걸 모르니까, 이것 이렇게 될때, 그건 또 위원장 뿐만아니라 부위원장이요, 위원들이요, 이러한 문제 여기에 다 이렇게, 물론 북남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여기 하나 가지고 늘 대기해야지, 지금. 늘 대기하면서 앉아있을 형편임.</p> <p>매차 다음번 회의를 언제 하겠는가 하는 건 오늘 이 시점에서 이 위원회가 잘 안다. 요건 보름 있다 하자. 요건 한달 있다 해도 되겠다. 요건 두달 있다 해도 되겠다, 석달도 되겠다, 이것 현재 북남고위급회담 본회담도 이걸 가능해서 정하거든, 맨 처음에 한 40일 주기로 했거든 그러다가 지금은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합의서」 빨라야 한달내에 분과위원회에 나오겠으니까 요건 요렇게 해야되겠다.</p> <p>그러나 앞으로 각 공동위원회를 빨리 내와야 되겠으니까 5월초는 해야 적어도 5월 18일까지 공동위원회에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5월 5일부터 하자, 이렇게 하는거란 말임.</p> <p>내가 어디 갔다가, 예를 들면, 내가 위원장한다 하고, 우리 다른 영</p>

우 리 측	북 측
<p>역시 난 그건 이 핵통제위원회 성격에 비추어서 딴 공동위원회는 그 공동위원회에 가서 이 사안이 긴급할 때는 역시 그런 길을 열어줘야겠음.</p> <p>그래야지 공동위원회가 기능을 할거지, 반드시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만 꼭 한다』고만 이렇게 해놓을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문제가 지연될 수도 있음.</p> <p>(핵통위 5차—pp.151~152)</p> <p>『일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를 해둬도 아무 문제가 없음. 만약 이래야 되겠다는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정말 수정, 보충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될 수가 있겠지만 현재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가?</p>	<p>철 소장이 위원장한다 하면 일주일내에 나와야 한다.</p> <p>이렇게 되면 일주일내 못 오면 이 위원회는 또 어떻게 하는가?</p> <p>그렇다고 해서 저쪽 것이 주요한 문제인데, 이미 상대측하고 다 합의한 문제인데, 다 합의해서 일정을 짜 놓고 한참 뭘 진행하고 이렇게 된걸 다 그걸 취소하고 이리로 온다면, 그러면 또 그 나라와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겠는가 말임.</p> <p>(핵통위 5차—pp.144~146)</p> <p>현재는 수시로 한다 해놓고, 핵통제위원회 일을 해오면서, 해보면서 수정할 것 같으면 수정하자.</p> <p>현재는 이 정도 규정해 놓고 수정조항 있잖은가.</p> <p>이제 회의를 우리로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하게 되면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말임. 그래서 이렇게 수시로 한다는 조항을 넣어 놓고 그러면 핵통제위원회를 뭐 이렇게 해가면서, 1차하고, 2차하고 해가면서 문제가 제기되면 거기다 수정을 가해서, 수정을 이 조항 뿐아니라 다른 조항도 필요하면 수정해야되니까 수정할 수 있잖겠는가?</p> <p>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현재 이 정도로 규정해 놓고 핵통제로 넘기면 어떤가, 이런 생각임.</p>

우 리 측	북 측
<p>우리 기능에서 『제7항,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같은것, 그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같은것,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수시로 회의를 열 필요가 있고, 일방이 주장하는데 다른 일방은 뭐 중요하지 않다 하고 수긍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분쟁문제 해결을 위해서 분쟁이 더 생기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음. 그래서 이것은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해준다』 이렇게 해두기 바람. 사실상 이런 경우가 없기를 바라고, 없게 되기를 기대하는데, 그러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 이렇게 놔두자.</p> <p>(핵통위 5차—pp.153~154)</p> <p>우리는 문제점이 될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라는 길을 하나 터 주자 하는 애긴데 자꾸만 저렇게 소극적</p>	<p>(핵통위 5차—p.151)</p> <p>나는 날짜를 사전에 정해야, 첫째는 준비를 쌍방이 잘 해 가지고 나와서 효율적으로 회담을 운영할 수 있다.</p> <p>둘째, 이렇게 사람별로 개인적 관계를 보게 되면 날짜를 언제나 자기의 1년간 계획을 쭉 맞물리는 건데, 맞물려 나가지 않는가? 그러니까 뭣이 제기되겠는가. 몰라서 맞물리지도 못하고, 언제 회의를 불러오겠는가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하겠는가? 그래도 한 보름 요건 내가 보면서 일정을 짜놔야지. 내가 보름후에는 뭘 제기될 것도 모르고 훌쩍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거든. 이러면, 내 어제 금방 떠나갔는데 아니 오늘 회의를 불러왔단 말이야. 이렇게 되게 되면 가다가 저쪽에 다 약속됐는데 상대측하고, 이걸 집어던지고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난처한 사정을 만들지 말자는 거야, 난처한 사정을.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다 여행한다면야 개인적인 여행은 그래도 다 공식적인 여행인데, 국가관계로 제기되는 것임.</p> <p>(핵통위 5차—p.153)</p> <p>쌍방이 합의하는게 무엇이 좋은가 하니까, 이제처럼 때에 따라 위원장이 없을 수도 있고, 위원들도 없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음.</p>

우 리 측	북 측
<p>으로만 생각해서, 한번 적극적으로도 생각을 해보기 바람. 그쪽에서도 필요할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임.</p> <p>(핵통위 5차-p.157)</p>	<p>원칙적으로 쌍방이 요구하면 회의는 구성하게 돼 있음. 그런데, 나가자고 하니 『위원장도 없다』 혹은, 『위원도 뭐 50%도 없다』. 이렇게 설사, 우리가 그것을 통제한다고 생각해 보기바람. 이것 우리가 회의소집을 요구하니 북에서 고의적으로 안하느냐?</p> <p>그 다음부터는 때린다는 말이야. 회의를 소집하는데 안 나오더라, 이렇게 하면 새로운 불화가 될 수 있음.</p> <p>그렇지만 쌍방이 합의해서 날짜를 미리미리 정해 놓으면 그런, 말하자면 새로운 오해와 불신을 없앨 수 있음.</p> <p>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 날짜를 정하는 것도 우리가 그것은 대표접촉을 보시라요. 3월 18일날까지 꼭 핵통제공동위원회를 내오자 하니까 관계없이 회의 속도가 높아진다는 말임. 이진 합의하면 될 수 있다는 말임.</p> <p>그러기 때문에 표현이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한다』 크게 무슨 문제점이 되는게 없지 않겠는가?</p> <p>(핵통위 5차-pp.156~157)</p> <p>『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2개월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놓으면 되지 않겠나 생각함.</p>

우 리 측	북 측
<p>『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이것 좋음. 그렇게 함. (핵통위 7차-p.69)</p> <p>우리측 안에는 제3조 「라」항에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 했는데 역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가, 귀측은? (핵통위 2차-p.28)</p> <p>수원이 경우에 따라서 나와서 발언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깔려 있는가? (핵통위 2차-p.29)</p> <p>제3조에서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정기회의의 회의주기를 2개월로 조정하고 회의기간 명시를 삭제하였음. (핵통위 3차-p.20)</p>	<p>(핵통위 7차-p.66)</p> <p>날짜를 조절한다는 게 아니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우리 원래 『날짜를 조절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제 지금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귀측의 주장을 고려해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핵통위 7차-p.69)</p> <p>어떤 식으로든 전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위원도 있고, 수원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 전문가를 넣으려면 넣고, 누구를 넣으려면 넣고, 그것은 각자가 필요한대로 할 수 있음. 그러니까 그것을 전문가란 개념을 따로 도입하지 않았음. (핵통위 2차-pp.28~29)</p> <p>전문가의 의견 청취는 우리가 쌍방이 공동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위원들이 나오면 위원이 남북쌍방을 대표하는 전권을 위임받고 나오는 조건에서 그것이 구태여 전문가들을 이 회담장 앞에서 발언시킬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p> <p>회담전에,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나오시라, 우리의 요구는 그러함.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위원이 아님. 그것을 감당하지 못</p>

우 리 측	북 측
<p>『5항, 핵통제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p> <p>꼭 같은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하는 것하고 그냥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이 표현이 다름.</p> <p>(핵통위 3차-p.93)</p> <p>『2항』 거기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래 돼 있고, 그쪽은 『다른 장소에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도」를 양쪽에 「도」가 다 붙어있는데 어디다 붙일 것인가 하는 문제임. 「다른 장소에서도」가 맞겠지?</p> <p>장소의 융통성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앞에다 놓으면. 그 판문점에서 하느냐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p> <p>장소뒤에 가면 장소의 신축성을 말하는 것이고, 「할 수도 있다」 하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음.</p> <p>(핵통위 5차-pp.160~161)</p>	<p>하면 대표가 아님.</p> <p>(핵통위 2차-p.29)</p> <p>그것 귀측안대로 함. 따로 따로 떼고.</p> <p>(핵통위 3차-p.93)</p> <p>만일 그러한 우려가 있다면 우리 「도」자 앞으로 넘김.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좋아 그렇게 함.</p> <p>(핵통위 5차-p.161)</p>

우 리 측	북 측
<p>『3조 4항』, 그것도 우리 합의 본 것임.</p> <p>이런것은 맨 나중에 실무자들이 지적해 주는건데, 우리는 마지막 줄에 『실무절차를 관례대로 한다.』 이래 되어있고, 그쪽에서는 『회의 기록등 실무적 절차를 관례대로 한다.』, 「적」이 붙었음.</p> <p>(핵통위 5차-p.162)</p> <p>『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과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번갈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그건 아까 합의됐음.</p> <p>(핵통위 7차-p.75)</p>	<p>「적」자를 빼달란 소리인가? 빼주겠음.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p> <p>(핵통위 5차-p.162)</p> <p>3조의 2항, 「회담장소 문제」. 우리는 요전에 정리한 건 「합의하는 다른 장소」 이렇게 했는데, 「합의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그것 「여」자로 고칩시다.</p> <p>귀측 의견대로 받아들임.</p> <p>(핵통위 7차-p.77)</p>

마. 발효절차문제

우 리 측	북 측
<p>『에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임. (핵통위 3차-p.110)</p> <p>그것은 여기서는 필요없으리라고 생각됨.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안 넣었음.</p> <p>왜냐하면 공동선언 자체가 양측에서 다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정당한 절차 끝에 발효를 했고, 그 공동선언의 이행과 검증을 위해서 핵통제공동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어떠한 문건에 대해서 총리가 서명을 하고 또 필요한 국내 절차를 밟아서 문본을 교환해서 발효시킬 이러한 문제들이 과연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생각</p>	<p>『5조 핵통제공동위원회 합의사항은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조에 대한 것, 놓고 보게 되면, 같지 않은가? 귀측안하고.</p> <p>그러니까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의 합의사항은』, 우리는 『핵통제공동위원회의 합의사항은』, 귀측은 『에서의』 이렇게 되어 있음. 『에서』는 필요 없음.</p> <p>『에서』는 빼고 『핵통제공동위원회의 합의 사항은』 그 다음은 같음. 『쌍방 총리가 합의 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것은 합의된 것임.</p> <p>(핵통위 3차-pp.109~110)</p> <p>그 다음에 우리는 계속 돼 있음. 『그러나 주요 합의 문건은 쌍방 총리가 서명하고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핵통제공동위원회가 아주 주요한 문제들을 합의할 수 있음.</p> <p>그 다음에 쌍방총리들이 서명하는 것으로서 발효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문건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주요한 합의 사항이 있어 가지고, 발효절차를 거쳐야 될 이와같은 것이 생길 수 있음.</p>

우 리 측	북 측
<p>이 우선 됐음.</p> <p>둘째로는 쌍방 총리가 서명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다들 각각 필요한 절차를 취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귀측의 제2항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임.</p> <p>(핵통위 3차-pp.111~112)</p> <p>귀측의 정무원 총리는 이런 문제에 대한 권한을 안 갖고 있다, 기구 편제상, 이런 뜻으로 얘기 한 것인가? 그런 것을 밑에 깔고 얘기한 것인가?</p> <p>우리는 문제가 없음.</p> <p>총리가 필요한 합의문건에 서명할 때에는 자기 권한내에서 행사하는 것이니까, 권한외 것은 필요한 절차를 스스로 밟든지 할것임.</p> <p>(핵통위 3차-pp.112~113)</p>	<p>그래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합의서를 만들 때에도 우리는 주요한 합의사항들은 발효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우리가 명문화한게 있음.</p> <p>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그러나 주요 합의문건은 쌍방 총리가 서명하고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의 교환으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게 합리적이 아니겠는가?</p> <p>(핵통위 3차-p.111)</p> <p>어떤 것은 내 생각에는 핵물질, 핵시설 또 핵무기, 핵기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도 있을 것 같음.</p> <p>그러한 경우를 예상해서 편안하게, 권한 밖에 있는 것은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인민들한테 이해를 주는데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문건이 있을 수 있음.</p> <p>이것은 다른 의미는 없음.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분과위원회 합의서들에서 같이 넣은 사항임.</p> <p>그래서 이것 넣음으로 해서 갖춤새도 좋고 또 이 다음에 편안할 것 같음.</p> <p>(핵통위 3차-p.112)</p>

우 리 측	북 측
<p>우리가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면 핵사찰 규정 같은 것이 주요한 합의문건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또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해서 최고인민회의 소집할 때까지 석달이 걸린다, 녀달이 걸린다 한다면 이것 어느 세월에 해결돼 가느냐 이런 뜻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113)</p> <p>그래서 발효에 필요한 절차라는 것을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귀측의 국내법적인 절차를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임.</p> <p>그것을 해설해보면 되는 것이지, 귀측에서 발효에 필요한 절차, 이런 경우, 아주 중요한 비핵화 공동선언 이것은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동의를 했음.</p> <p>그 다음 그 밑에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 그 이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는 사항, 이런 것까지 전부 발효에 필요한 절차라는, 어떤 절차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밟아야 되느냐 하는데 대한 의문임.</p> <p>우리 경우 같으면 문제가 안 된다 하는 것임. 그래서 문제 제기 하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p.115~116)</p>	<p>우리는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한 것 없음.</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113)</p> <p>북남관계 현재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안 했고, 그러면 어떤 절차를 어디서 거치는가 하는 것은 우리 대표들이 어디를 거치자, 어디를 거치자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중요한 문건을 두개를 발효시켰는데 이것은 어떤 절차를 거쳤다는 것 귀측에다 통보를 해 버렸단 말임.</p> <p>얼마전에 평양회담 할 때, 우리 발효문건에 대한 것 우리가 통보를 해올렸음. 거기 다 있는데 뭇때문에 최고인민회의 언제 소집, 언제 발효 시키겠는가, 사찰 절차방법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말라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115)</p>

우 리 측	북 측
<p>우리쪽 걱정도 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니 우리쪽에서는 총리가 서명하실 때에는 무슨 서한을, 자기 사신을 서명하는 식으로 서명하지 않고 다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완전한 권한을 받아 가지고 서명함.</p> <p>그러니까 그러한 걱정 때문에 이것을 넣었다면 이것은 빼시면 되겠음. 우리는 그런 걱정 하나도 없음.</p> <p>총리가 서명하는 날 발효한다 하면 필요한 절차를 거치니까 빠시는 게 좋겠음.</p>	<p>오히려 나는 이제 우리 말 안 할라고 그랬던 것인데, 임선생이 우리 내부문제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 말하겠음.</p> <p>오히려 나는 남측이 해당한 발효절차를 거쳐야 함.</p> <p>왜 그런가? 미국의 핵무기와 미국의 핵기지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사찰할 수 있도록 공개하자면 이것이 어떠한 발효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리가 데까닥 수포해 버리는 것으로서 되겠느냐 이런 우려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 말 안함.</p> <p>그것은 남측이 거쳐야 될 문제기 때문임.</p>
<p>(핵통위 3차-pp.116~117)</p>	<p>(핵통위 3차-p.116)</p>
<p>이건 뭐 안 넣어도 되고. 주요문건, 글썄 그것도 쓸데없는 것을 집어넣고 있음.</p>	<p>5조.『핵통제공동위원회 합의사항은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물었단 말이야. 그러나 여기까지는 문안이 정리된 것임.</p>
<p>(핵통위 5차-p.164)</p>	<p>그 앞에는 같고 그 다음에 『그러나 주요 합의문건은 쌍방 총리가 서명하고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하는 날로부터 발생한다.』 이걸 놓자고, 우리는 놓자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p>
<p>기본합의서라든가, 비핵화 공동선언 같은 것은 발효에 필요한 기본 문서들은 문제가 없는데 계속 하위적인 문서들은 다 이렇게 어느 시간에 어느 세월에 하겠는가 이것임.</p>	<p>이건 넣어야 됴. 이거야 우리의 주요한 문건이라 하지 않았어. 주요한 문건 넣어야 됴.</p>
<p>(핵통위 5차-p.166)</p>	<p>(핵통위 5차-pp.163~164)</p>

우 리 측	북 측
<p>거기서 『그러나 중요한 합의문건은 쌍방 총리가 서명하고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걸 계속 주장합니까?</p> <p>빼도 상관 없잖아.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임, 사실은.</p> <p>(핵통위 7차-p.67)</p>	<p>사실이야 발효문건은 길을 열어주고 주요문건은 발효절차 거치도록 이렇게 봐야지, 그게 총리가 앞으로 주요한 문건이 채택되었는데 총리가 자기 혼자서 하는 것으로 하면 안되겠다, 이렇게 문제가 제기될 때야. 이것 또 합의를 수정하는 문제가 됨.</p> <p>(핵통위 5차-p.165)</p> <p>분과위원회 문건도 필요한 것은, 주요한 것은 바로 거쳤는데 공동위원회 문건이라고, 공동위원회 문건 가지고 바로 안 거치면 어떻게 하는가? 필요한 것은 거쳐야지, 주요한 것은 물론 대부분은 안 거칠 수 있겠음.</p> <p>(핵통위 5차-p.166)</p> <p>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그래도 간혹 또 발효절차 거치게 생기면 아무래도 귀측도 여론들을 많이 고려한다고 그러지 않는가? 귀측에서도 정치를 하는데 여론을 많이 고려한다.</p> <p>우리는 또 인민정권이니까 또 여론도, 우리는 특히나 고려 안할 수 없으니까, 혹시 발효절차를 거쳐야 될 문건이 생기면, 그러한 중요한 문건이 생기면 발효절차 거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임.</p>

우 리 측	복 측
<p>그럴려면 이렇게 고치지, 이것을.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안에 넣었던 문안을 살리자 이거야.</p> <p>어떻게 돼 있나?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하고, 그 밑에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총리가 서명하고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7차-p.68)</p>	<p>다른 의도 없다고. 그것은 문건 형식을 갖춰야 됨.</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7차-pp.67~68)</p> <p>그럼 넣겠소. 『경우에 따라』 그대로 함.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총리가 서명하고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좋음. 그렇게 함.</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7차-p.68)</p>

3. 기 타

가. 사찰규정 채택시한 부여문제

우 리 측	북 측
<p>귀측이 조속히 그것을 하자 하는 뜻이 있다면 우리측의 안이 1개월 안이라고 제시 했는데, 그것보다 더 빨리 하자면 2주 안이든지 3주 안이든지 열흘 안이든지 그것 받겠음.</p> <p>4조는 「OK」. 그 사찰 규정을 빠른 시일내에 한다는 이야기는, 조속한 시일내에 한다는 것은, 「조속한」이라는 것이 애매함.</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2차-pp.31~40)</p> <p>4조가 차이가 나는 점임.</p> <p>『핵통제공동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후 1개월 이내에 사찰대상의 선정, 사찰절차·방법등 사찰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며』, 1개월 이내에 하는데 우리 역점을 둔 것임.</p> <p>『채택후 20일안에 사찰을 시작한다』하는 것은 귀측의 안을 받아 들인 것임.</p> <p>그런데 귀측은 여기에 두가지 전제를 달고 있는데 하나는 『쌍방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합의서』 이것은 별도의 합의서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찰대상의 선정, 사찰절차·방법등에 관한 규정이 채택된 다음』 그런데 그 규정이 언제, 어느 사항까지 채택돼야 하는가 하는</p>	<p>귀측의 4조를 보면 『사찰단의 선정 및 사찰절차, 방법등에 관한 규정은 핵통제공동위원회 1차 정기회의후 1개월 이내에 정하여야 한다.』이렇게 돼 있음.</p> <p>그러니까 『사찰대상의 선정 및 사찰절차, 방법』 이것을 빨리 좀 하자는 것은 우리의 입장임. 이것을 핵통제공동위원회 나오면 진지하게 협의해서 토의하는데 우리로서는 사찰대상과 절차, 방법을 규정하는데 별다른 문제점 없다고 생각함.</p> <p>귀측이, 우리 입장을 밝혔지만, 미국의 핵무기와 핵기지와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한 사찰대상 선정 그것과 관련한 사찰절차와 방법 이런 것을 규제하는데 난관만 조성 안 하면 별 문제없음.</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2차-p.30)</p> <p>비핵화를 검증하자면 사찰대상도 선정하고 또 사찰절차와 방법을 정해야 하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그것을 핵통제공동위원회의 1차 회의후 1개월내에 해야 한다고 우리 대표들이 이것을 정립해서 조문화해 놓을 필요는 없음.</p> <p>말하자면 귀측안이 왜 부당한가 하는게 여러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는 앞으로 구성될 핵통제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일임. 이것은 우리 대표들이 그 날짜를 정할 문제가 아님.</p>

우 리 측	북 측
<p>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음. (핵통위 3차-pp.93~94)</p> <p>핵통제위원회의 권한을 왜 우리 대표접촉에서 논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권한 밖의 일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는 우리측 정부의 훈령에 의해서, 이 대표접촉에서 합의해서 구성될 앞으로의 핵통제공동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와같은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운영되어야만 이 시급한 핵문제에 관한 비핵화, 동시에 검증에 대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인식하에서 이 시한은 반드시 지켜져야겠음.</p> <p>이 시한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양측이 철야작업을 해서라도 성의만 있으면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우리측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북간에 있어서의 귀중한 핵통제공동위가 공전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함.</p> <p>또한 이 문제가 다른 분과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시한을 정한 것이 없는데 왜 여기서만 꼭 정할려고 하느냐 하는 이 말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핵문제는 우리 남북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p> <p>따라서 이것에 대한 의혹을 상호 씻고 신뢰가 조성되어야만 우리가 모처럼 합의된 이러한 중요한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우리가 여는데 있어서</p>	<p>우리들의 접촉에서는 핵통제공동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그 회의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질서만 규정해주면 우리 사명이 다함. 우리 총리들한테 받은 대표들의 사명이란 말임.</p> <p>이래서 이 문제를 자꾸 귀측에서 고집하면 우리로서는 생각되는게 많음. 하나, 어째서 이치에도 맞지 않는 주장을 내놓고 대표접촉에 난관을 조성하는가. 둘째는, 그렇게 해서 3월 18일전에 핵통제공동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도록 하자는게 아닌가. 또 셋째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의가 북이 없다는 여론을 조성하자는게 아닌가. 그래서 그 여론효과를 모아서 국제적인 압력이 북에 가해지도록 그 어떤 권모술수를 쓰자는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됨.</p> <p>내가 말하는 것이 받아 들일 수 있다면 귀측에서 이 조항은 철회해야 됨. 이것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음. 이것은 명백히 함. (핵통위 3차-pp.94~96)</p> <p>무슨 정부의 훈령을 받고 나와서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우리도 자기 주관적인 욕망이 있음.</p> <p>그러나 우리가 하는 대화는 북남사이 대화임. 대화는 대화로서 자기 순리가 있고 논리가 있음. 대화는 어디까지나 사리있</p>

우 리 측	북 측
<p>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음.</p> <p>또한 이 문제가 우리측에서 난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신데, 아니 이것은 오히려 난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남북간에 원만한 합의가 앞으로도 잘 풀려가도록 난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우리가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재삼 우리는 강조함.</p> <p>이것으로 인해서 남쪽에서 북쪽의 비핵선언의 이행에 성의가 없도록 국제 여론을 조성해 갈려고 하는 저의가 숨어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그것은 그와 같은 참으로 이 비핵화에 성의가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구성될 이 핵공동위원회에서 쌍방 대표들이 열심히 작업을 해서 조속히 핵사찰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그래서 소정의 기간내에 또 가장 빠른 시일내에 핵사찰을 함으로써 남북간에 가로놓인 검은 구름을 우리가 씻어낼 수 있다 하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음.</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p.96~98)</p> <p>대표접촉에서 우리가 부여 받은 임무라는 것은 핵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 합의서를 만들라는 권능을 우리가 받고 있음.</p> <p>따라서 이 운영을 우리가 잘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같은 문제가 해결이 돼야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정당한 권한속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함.</p> <p>내가 하나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p>	<p>는 주장, 논리적인 주장을 가지고 호상 납득되는 합의점을 찾는 가장 고급한 형태의 회담.</p> <p>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것을 상대방한테 먹이자면 벌써 대화가 안 됨.</p> <p>그런데 귀측은 합의된 공동선언 요구에도 맞지않은 또 고위급 테두리 안에서 지금 창조된 모든 좋은 선례에도 맞지 않는 것을 넣자고 하니 문제가 되는 것임.</p> <p>자기 정부의 주관적인 훈령이 있다고 해서 이 문제를 여기다 거론시키는데 아님.</p> <p>오늘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할 문제는 이미 쌍방 총리들에서 이행된 사항을 지키는 방향에서 합의점을 모색해야 됨.</p> <p>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움. 어떤 의미에서는 실망스러움.</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p.98~99)</p> <p>권한 문제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귀측에서는 권한을 받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권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북남고위급회담 대표 접촉임. 그렇기 때문에 북남고위급회담에서 토의되고 합의된 거기에 기초해서 대표접촉 해야 됨.</p> <p>이미 합의된 것을 벗어나 가지고 일방이 그 어떤 권한을 받았다, 귀 당국에</p>

우 리 측	북 측
<p>관한 합의서』에 대해서 누가 서명 발효시키는가? 양 총리 아닌가?</p> <p>양 총리들이 핵통제공동위원회가 앞으로 잘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좋은 합의서를 만들어 오라는 지시를 우리 대표들에게 각각 다 주었을 것임.</p> <p>무슨 권한이 없고 있다가 그게 무슨 얘기인가? 권한이 왜 없는가.</p> <p>핵통제공동위원회가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다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임.</p> <p>이것을 다 수행 못하면 대표가 자기의 할 일을 다 못하는 것임.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하는가 이것임.</p> <p>두번째로는 참 아주 재미있는 것이, 귀측의 안에 보면 사찰규정이 채택된 다음 20일 안에 사찰을 시작한다. 사찰규정 만드는 것은 한달내로 하자 하는 것은 권한 밖이고 사찰규정 채택한 후 20일 안에 사찰한다는 것은 권한내인가?</p> <p>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기 바람.</p> <p>여기에 20일 안에 하자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속임수와 같은 표현에 불과한 것임.</p> <p>사찰규정이 먼저 돼야 되지 않는가? 빠른 시일내에, 그리고 온 세계가 사찰규정이 빨리 돼서 사찰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한달내가 길다면 3주고 2주내로 박자는 것임.</p> <p>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은 시간 끌기다, 지연 전술이다로 밖에, 오히려 귀측</p>	<p>서.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여기에다 제기하고 안을 내놓고 합의하자면 안 됨.</p> <p>우리의 권한은 북남고위급회담에서 합의돼서 우리에게 위임된 사항의 권한임.</p> <p>이 권한문제에서 말씀하면 일방적으로 자기측에서 뭐인가. 해놓은게 권한이 아님.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핵통제위원회에서 해야 될 문제를 대표접촉에서 대행할 수 없고 월권할 수 없음.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사찰문제와 관련한 규정 만드는 것을 안 하자는 건가? 하자는 것임. 명백히 말씀할 것은 핵통제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핵통제위원회 권한에 부여된대로, 기능에 부여된대로 빨리 대상 설정하고 절차, 방법 규정대로 하게끔 절차와 규제하도록 하자, 이것임.</p> <p>여기다가 핵통제위원회가 조직돼 가지고 하게 되면 한달이 걸리겠는지, 20일이 걸리든지 두달이 걸리든지 거기서 해야 될 사업을 여기서 어떻게 하자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음.</p> <p>우리가 『북과 남 사이에 화해와 불가침,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에 얼마나 절박한 문제들도 시간적으로 긴급하면 긴급하다는 사항들도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가? 또 귀측에서는 이산가족문제에 대해서 매우 중요시 하면서 인도적 문제로서 제기한 것 있지 않는가? 그러나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언제부터 어떻게 하자는 것을 분과위원회면 분과위원회에서 하자는 것</p>

우 리 측	북 측
<p>에 대한 의심이란 말임. 귀측이 그렇지 않다면 귀측에 대한 오해를 더 증폭시키는 이런 결과만 초래함.</p> <p>그렇게 안 되는 게 좋지 않은가? 이게 빨리 되어야 남북관계도 잘 되고 귀측의 대외관계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릴텐데, 이것을 왜 한달내로 하자는 것을 그토록 반대하는가. 이것이 핵심문제임.</p> <p>그런데 핵무기도 개발하지도 않고 그럴 능력도 없다고 한다면 왜 이것을 끌어야 되는가? 끌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음.</p> <p>왜 말로만 떠들고 실제적인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가. 일을 되게 해가지고 빨리 남북기본합의서도 시행에 들어가고 나는 귀측이 대외관계도 잘 되고 국제사회에서 이러 저러한 말도 안 듣게 되기를 바라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3차—pp.103~105)</p> <p>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미리 연구를 해 왔음. 그건 연구할 것도 없음. 그건 받을 수 없음.</p> <p>「빠른 시일」이라는 것이 두주일이면 더 좋지만 20일이라도 좋고, 날짜를 박자는 것임. 그래서 또 우리 최대표께서 이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구성, 기능 이런거를 말씀하셨는데, 그외에 이 핵통제위원회가 빈 공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빨리 사찰규정을 만들어야만 핵공동위원회 본래의 기능이 발휘가 됨.</p>	<p>우리가 규제해 놓은 것 없음.</p> <p>그것은 앞으로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토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를 매우 절박하고 긴박한 것으로 인정함.</p> <p>그렇지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대표접촉에서 정할 때 아무리 시간이 절박하고 긴박하다고 해도 시한부를 정하지 못했던 말임.</p> <p>또 제기도 안 했고, 그것은 분과위원회와 앞으로 공동위원회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순리와 원리를 아셔야 됨.</p> <p>이것을 뛰어 넘어서 하자는 것은 도저히 통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문제임. 그것을 알아야 됨.</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8차—pp.101~103)</p> <p>우리 4조를, 귀측의 우리 의심을 덜어주고. 또 우리는 전향적으로 문제를 빨리 절충해 타결하기 위한 이와같은 획기적인 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할 결 제기를 함.</p> <p>우리 4조임. 『제4조, 쌍방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행을 위한 합의서와 사찰대상의 선정 및 사찰절차·방법등에 관한 규정을 빠른시일 안에 채택하고 20일 안에 사찰을 실시한다』, 자 이거 아주 타결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전향적인 안임. 연구를 해 보기 바람.</p>

우 리 측	북 측
<p>그래서 핵사찰규정을 우리가 「조속히」 만들어야 됨. 그런데 조속히란 말은 1년도 조속히 될 수가 있고 2년도 조속히 될 수가 있음.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는단 말임.</p> <p>그러니까 지금 아주 훌륭한 안을 내셨다고 말씀하셨지만 「빠른 시일」이라는게 며칠입니까? 하루도 빠른 시일이고, 닷새도 빠른 시일이고, 한달도 빠른 시일이고 그러니까 충분히 실무적인 작업, 이걸 보셔가지고 뭐 지금 대충 우리 안하고 북측 안 하고 보면 50일을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데. 50일안에서 가령 사찰규정을 만드는 것을 30일이 모자라면 1주일 더 보태서 35일도 좋고, 그러나 시한을 꼭 정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4차-pp.115~116)</p> <p>시한을 꼭 정해야만 우리는 이 핵통제공동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봄. 핵사찰규정 없이는 핵사찰이 불가능하고 핵사찰없이는 남북사이에 가로놓인 핵문제가 해결이 안 됨.</p> <p>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당함. 이것은 우리 남쪽의 여론을 자세히 지켜보시면 귀측의 관계당국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임.</p> <p>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북쪽의 공동선언 이행의 척도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 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핵사찰을 상호 하는데 얼마만큼 적극적으로</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4차-p.114)</p> <p>최근까지 북남사이에 합의된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보건대는 모든 것이 합의된대로 하나 하나 제대로 진척됨.</p> <p>어느날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그날에 구성되고 분과위원회에서 부속합의서를 만든다면 꼭 만들것이며 부속합의서에 따라서 공동위원회가 나온다면 꼭 그날에 나옴. 공동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토의한다면 토론됨.</p> <p>지금 북남사이에서는 합의서의 정신에 따라서 일이 착착 잘 진행됨. 그런데 어째서 잘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 그토록 의심을 하는가?</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4차-pp.121~122)</p> <p>우리가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사찰 절차와 방법 이것 토의하는 것을 핵통제위원회가 해서 좋기는 가장 빠른 시일에 하면 좋다. 우리는 하자는 의견임.</p> <p>그러나 며칠로 날짜 찍는 것은, 이것은 핵통제위원회 사업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됨. 귀측이 1개월내에 하고 그리고 그다음 20일내에 합쳐가지고 제기한 것이나, 이제 합쳐가지고 50일 만든거나 이미 제기한 1개월하고 20일 합친 것이나 같은 건데 무슨 그게 절충안이나 말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4차-pp.141~142)</p>

우 리 측	복 측
<p>로 나오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척도를 두고 있음.</p> <p>따라서 시한문제를 거듭 말씀드리면 한달이 너무 빠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은가. 50일 범위내에서 우리 조정할 수 있음. 그리고 우리는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5월 내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음.</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4차-p.138)</p> <p>30일 안에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대신에, 50일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규정을 만들고 사찰을 시작한다 하는 여유를, 융통성을 좀 둔 것임.</p> <p>그러니까 30일이내에 사찰규정을 만들어야 할텐데 25일 될 수도 있음. 이런 얘기임. 그러면 5일이내에 그 다음엔 사찰이 실시 되지 않겠는가?</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4차-p.141)</p> <p>4조의 핵심은 뭔가? 양 총리들이 사찰규정을 한달내에 만들어서 빨리 사찰에 들어가자 하는 것을 정하는 규정임. 기능과 관련 있는게 아님. 사찰규정을 언제까지 만들어서 사찰을 실시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명시하자는 규정임.</p> <p>그 「빠른 시일안에」 까지도 안 내놓고 그러다가 지난번에 「빠른 시일안에」라는 시간개념을 넣은데 대해서 평가함.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넣었는데, 이 「빠른 시일내를, 빠른 시일안에」를 추상적인 이런 숫자 개념이 없는 표현 해가지고는 이견 안되겠음.</p>	<p>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그것을 봐가면서 정하게 될 것임. 사찰절차가 완성된 다음에 어떤 때는 10일내에 할 수도 있고, 20일내에 할 수도 있고, 한달내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핵통제공동위원회가 다 할 일이라 이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4차-p.148)</p> <p>우리 입장을 명백히 이야기함. 만약에 4조를 살린다면, 살리겠다면 우리는 「빠른 시일안에」라고 넣어가지고 핵통제위원회에다가, 핵통제위원회가 빠른 시일안에 문제를 타결하도록 이렇게 핵통제위원회에다가 위임해야한다는 것임.</p> <p>왜 대표접촉에서 무슨 한달이다, 며칠이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해 놓는게 우리 대표들의 권능박임. 핵통제위원회에 맡겨야 됨. 모든 이런, 모든 다른 조항들을 다 핵통제위원회가 이런거 하라, 이런거 하라 다 맡겨 놓지 않는가? 지금 핵통제위원회에 뭐 여러가지 할 기능들을 다 맡겨 놓는건데 이것도 맡기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정 놓자면 우리로서는 4조가 필요없어도 되겠음.</p> <p>없어야 되는데 굳이 넣는다면, 넣는다면 기한을 넣겠으면 「빠른 시일안에」 넣어가지고 핵통제위원회가 빠른 시일안에 하도록 위임하자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77)</p> <p>귀측이 「빠른 시일안에」를 한달내로 염두에 둔다면 「빠른 시일안에」 표현</p>

우 리 측	북 측
<p>이것을 좀더 구체화해서 일개월내라든가 언제내라든가 하는 것으로 명시하자 하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p.76~77)</p> <p>일반적으로 그쪽에서 쓸 때 「빠른 시일안에」라는 말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할 때 「빠른 시일안에」라는 걸 얘기하는가? 그게 「빠른 시일안에」를 어떻게 좀 명백히 우리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임.</p> <p>우리는 빠른 시일안에 하면 한달이내를 말하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78)</p> <p>이 조항 왜 넣었느냐? 작년 12월 31일 우리 대표간에 도장 찍은 것을 안 지키기 때문에 또는 거기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넣은 것임.</p> <p>『가장 빠른 시일안에 핵안전조치협정에 법적절차를 밟아 비준한다』 해 놔는데, 그 「가장 빠른 시일안」이 한달이 지나도 두달이 지나도 석달이 되어와도 소식이 없어.</p> <p>그리고 이제 한다는 얘기가 4월달에 최고인민회의 소집해서 심의한다. 그러니 「가장 빠른 시일내」가 그때 된다 하더라도 녁달이야.</p> <p>그러면 「가장」도 안붙은 빠른 시일 그냥 보통 「빠른 시일내」는 몇달이 겠는가, 이것임.</p>	<p>을 넣자. 뭐 귀측의 해석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간 「빠른 시일안에」 넣겠다.</p> <p>왜 한달내로 된다는 데 그걸 넣자말야. 왜 그것 못 넣는가?</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79)</p> <p>「빠른 시일」이러는데 핵통제위원회가, 핵통제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쌍방이 토론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까지 다그쳐 가지고, 빨리 대상선정, 절차, 방법을 규정해야 한다는 말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80)</p> <p>합의 사항을 왜곡하지 말기 바람. 합의서는 어떻게 됐는가.</p> <p>『담보협정에 서명하며 법적절차를 거쳐 비준하고, 법적절차 비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 합의하는 시기에 사찰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음.</p> <p>그래서 우리는 1월 30일 약속한대로 1월 30일에 우리 서명했음. 우리 현재 법적 절차를 밟고 있음. 이미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도 이미 토의했고 이것을 최고회의 심의에 붙였음.</p> <p>원래 최고회의 심의에는 혹시 안넘어 갈 수도 있었음. 너무 남쪽이랑 미국이랑 담보협정 가지고 너무 떠들어대니까, 우리 대의원들이,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지금 사방에 제기했음.</p>

우 리 측	북 측
<p>그래서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한번 이런 쓰라린 경험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풀이해서 사실 넣은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92)</p> <p>타결방도를 제가 제기함.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얘기를 좀 호도하시는데, 우리가 얘기한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보전대는 귀측이 자꾸만 질질 끌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 앞으로도 그렇게 공동위원회를 맡겨 놓아선 이게 사찰이 안된다 이런 얘기임.</p> <p>그러니까 이 공동위원회가 사찰규정을 만드는 시한을 정해줘서 그때까지 열심히 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가장 중요한 이 사찰문제가 검증이 되도록 비핵선언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이 검증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해 줘야겠다 하는 뜻에서 우리가 이 시한을 넣자고 하는 얘기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p.203~204)</p>	<p>『도대체 담보협정이 뭐요? 어떻게 된건데 미국사람들, 남쪽사람들 자꾸 떠들어』 그러니까, 그러면 집체심의해보자 그래서 최고회의 심의에 넘어갔음. 그 심의회의에 넘어간 책임도 사실은 남쪽에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p.92~93)</p> <p>『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다섯번째 항 『북과 남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1개월 안에』, 1개월이란 3월 18일 말이다, 『1개월안에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이것은 우리도 그렇구 귀측도 어길 권한이 없음. 이걸 어떻게 타결하겠는가?</p> <p>그러니까 4조에 대해서 말하면, 귀측도 양보할게 없음. 우리측도 현재에서는 양보할 게 없고.</p> <p>이러니까 방도는 “몽기자”. 이거 타결방도를 이제부터 타결방도를 제기하라 이거야, 공동위원회를 한달내에 내올 수 있는 타결방도를 말씀하시라요.</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p.202~203)</p>
<p>이 시한을 정하는 것을 우리가 논의 하기 바람. 가령 30일이 너무나 짧다, 도저히 그때까지 안된다면 50일을 뒤 가지고 사찰규정 만드는 거는 뭐 45일 하든지, 40일 해가지고 나머지 사찰을 빨리해서 한 닷새 이내라도 시행을 하며는 50일이라는 시한이 지켜지고, 그 50일이 좀 비현실적이라면 뭔가 우</p>	<p>우리는 털어놓고 말해서 핵통제공동위원회가 쉽게 탄생하리라고 생각했음.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도 쉽게 나오리라고 생각했음.</p> <p>왜 그런가 하니까 어떤 사항들을 만든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질서는 그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면 회의는 쉽게 한다고 생</p>

우 리 측	북 측
<p>리 서로 그 숫자속에서 우리 양보점을 찾아내자 이런 얘기임.</p> <p>(핵통위 5차—pp.205~206)</p> <p>팽팽히 맞서 있는 대목이 제4조임. 4조문제 진전이 없는 한 여기서 합의가 더 될 수 없게 되어 있음.</p> <p>그렇다면 귀측에서 핵통제공동위원회 발족시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도 발족시키자는 것은 귀측 이상으로 우리가 언제부터 이것을 빨리 끝내고 3월 16일이나 17일에 발족시키자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열렬히 주장해 온 바인가?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음.</p> <p>(핵통위 5차—p.231)</p> <p>4조 귀측안 제시할 때도 사찰규정은 언제까지 제시하는 건 합의 안하고, 그 다음 그것이 된 다음에 20일 안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번도 합의서를</p>	<p>각했음.</p> <p>그런데 이리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이상은 우리가 지금 해 내놓은 가장 전향적인 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대답하기 바람. 3월 18일전에 핵통제공동위원회 1차회의를 열자, 그리고 구성도 발표하자, 그리고 쌍방간에 가장 격론을 벌인 우리 4조, 귀측의 4조는 거기서 털어놓도록 함.</p> <p>(핵통위 5차—p.206)</p> <p>4조를 핵통제위원회에 결국은 쌍방사이의 견해가 상당히 팽팽하거든. 팽팽하기 때문에 핵통제위원회 기능에 속하는 문제니까, 귀측에서는 사찰절차 규정을 만드는 것을 시한부를 찍자는 것이니까. 그 시한부는 핵통제위원회에서 그것을 토론하면서 낙찰지을 수 있는 문제니까, 그건 핵통제위원회에 넘기자는 우리의 주장이고. 귀측에서는 거기다 넘길 수 없고 이게 타결되어 가지고 넘어가자 이런 주장인데, 우리로서는 핵통제위원회에 넘기자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 타결 안되면 귀측은 핵통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언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하는가?</p> <p>(핵통위 5차—pp.231~232)</p> <p>우리가 20일이라는 날짜를 넣게 된 것은 대표접촉을 하는 과정에 귀측에서는 누누이 우리가 사찰을 자꾸 연장한다고 했음. 그래서 우리로서는 사찰규</p>

우 리 측	북 측
<p>언제까지 합의한다 하는 얘기는 자꾸 지연시키면서 그 다음 것은 자꾸 합리화라고 그러는가?</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233)</p> <p>귀측이 우리측이 제시한 『1개월 이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귀측이 말하는 『가장 빠른 시일』이 1개월보다 짧아서 인가? 길어서 인가?</p> <p>또한 귀측은 국제원자력기구 정기이사회에 참가한 대표를 통해 6월초에는 국제핵사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명하였는데, 그렇다면 민족주체성을 살려 남북간의 사찰은 그 이전에 실시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p> <p>귀측은 그 시한을 규정하는 것이 대표접촉의 임무가 아니고 핵통제공동위원회의 소관사항이라 하지만,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쌍방 총리가 서명 당사자이며 쌍방 총리는 『비핵화 공동선언』이 차질없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핵통제공동위원회의 임무와 기능을 명확히 규정해 줄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6차-pp.26~27)</p>	<p>정이 완성된 다음에 인차 사찰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귀측에 알리기 위해서 20일이라는 날짜를 박아 넣었음. 다른 의미는 없음.</p> <p>특히 우리 4조는 귀측에서 우리 대표접촉 권한과는 관계가 없는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할 내용을 4조와 6조에 담았지만 그것을 좀 절충해 보자고 해서 우리 4조를 말하자면 만들어 넣으면서 20일이라는 날짜를 넣었음. 그 20일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어제도 명백히 말했지만 20일이라는 날짜는 제외한다는 용의가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5차-p.233)</p> <p>제4조 『쌍방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리행을 위한 합의서와 사찰대상의 선정 및 사찰절차 방법들에 관한 규정을 가장 빠른 시일안에 채택하고 20일 안에 사찰을 시작한다』고 한 조항을 삭제하였음.</p> <p>우리는 우리의 이 4조와 귀측의 4조를 곧 구성·운영하게 될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토의되기를 기대함.</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6차-p.19)</p> <p>귀측이 내놓은 제4조에 대한 것은 못 마땅하다는 것, 이것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 군더더기라는 것, 이 공동선언 요구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 이거 핵통제위원회의 기능에 속한다는 것, 명백히 지적했는데 무엇때문에 거기</p>

우 리 측	북 측
<p>우리가 시한을 박자고 하는 것은, 아까 무슨 그러한 『국제적인 조약에 선택이 없다』등등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귀측이 지금 4월 8일에 비준, 심의한다고 하는 원자력기구의 핵안전협정 자체를 보더라도, 또 우리가 다같이 당사국이 되어 있는 핵비확산조약에 보더라도 이 조약에 가맹한 국가들은 1년 6개월 이내에 핵안전협정을 서명하고 그것에 따라서 사찰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음.</p> <p>또 핵안전사찰협정을 보더라도 『핵사찰 협정을 비준하고 기탁을 한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내라.』 또 『비준, 발효된 90일내에 부속약정을 체결하라.』 또 『아무리 늦어도 그 부속약정이 체결돼서 사찰단이 지명된 1개월 이내에는 사찰단을 수락을 해서 사찰받도록』 이런 모든 시한을 정하고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6차-p.39)</p> <p>문제 조항은, 가장 중요한 의견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는 조항은 역시 우리가 제시했던 4조 아닌가 싶은데, 사찰규정 채택시한을 명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논쟁을 벌여왔던 것 같음.</p> <p>우리는 1개월안이라는, 1개월 내라는 것을 놓자 하는 입장을 취해왔고,</p>	<p>에 걸고 전체 종합해서 우리한테 책임을 씌우는 식으로 나오는가 말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6차-p.32)</p> <p>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들의 호상관계에서 뭘 토의하는 것도 봐도, 물론 북남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님. 그걸 또 받아 들여야 한다는 문제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뭘 할 때도 조약을 하나,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토의한다 해도 요거는 다음달 한달내가 돼야 한다. 이렇게 정해 놓고 조약, 협의를 한데가 없음.</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6차-p.33)</p> <p>어차피 핵통제위원회가 나오면 사찰대상도 정하고 절차와 방법도 규정하고 그렇게 되면 사찰 언제 하는가 하는 문제들은 빨리 결속이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 대표접촉에서 시한부를 반드시 짚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것은 핵통제공동위원회에다가 넘겨 가지고 해야될 성격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우리 입장도 여러차례 설명을 해왔음.</p> <p>우리 지금 북남관계에서 놓고 보면 이번에 핵통제공동위원회를 비핵화 공동선언이 발효된 다음에 한달내 내오자 이렇게 해 놔가지고 발효시켰는데, 이것도 날짜를 이렇게 정해놓다 보니까, 우리 대표들 사이에 조금씩 현재 토론을 하면서, 언성도 높아지기도 하고 회담이 좀 거칠어지기도 함.</p>

우 리 측	북 측
<p>귀측은 『가장 가까운 시일내로 하자』하다가 나중에는 그 조항을 다 철회하면 좋겠다 하는 의사를 지난 접촉때 표명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음.</p> <p>우리는 『1개월 내로 하자』하는 것은 꼭 1개월이라기 보다도 아주 상징적으로 표시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하자」는 것은 우리가 어떻든 우리가 통할 수 있는 것인데, 기간은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 해서 지난번에 「60일 이내」라는 안을 제시했음.</p> <p>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기간으로 표시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그것을 받아 들이지 않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그런 시한을 표시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7차—pp.11~12)</p> <p>제가 지금 최대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음.</p> <p>핵사찰규정을 정하는 문제는 합의서에는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이 잘 노력하면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한 60일 이내에는 그것은 규정이 채택될 수 있다고 봄. 그렇지요. 한 60일 정도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핵통제공동위원회에 넘겨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자 하는 뜻으로 보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7차—pp.16~17)</p>	<p>왜 그러나 하면 시간이 지금 촉박하니까, 서로 긴박성을 서로 호상 다 느끼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이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생각을 해봤음. 왜그러나 하면 우리는 물론이고 남측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자는 것이 자기 의지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 함.</p> <p>이제 임대표 선생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지키고, 합의된 기간 내에 핵통제공동위원회를 꼭 발효시키고 하자는데 확고한 입장임, 이렇게 서두에 말씀했는데. 이게 난 상당한 정도로 마음에 듬. 우리 역시 같은 견해란 말임. 그래서 우리는 핵통제공동위원회에다가 넘기는 문제로서 제기한 것임.</p> <p>물론 핵통제위원회에 넘기면 한달 이내에 될 수 있고 또 귀측이 제기한 대로 60일 좌우해서, 60일 정도 기간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도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한달은 바쁘겠지만 60일 정도로 이런 문제는 핵통제위원회가 잘 노력을 하게 되면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 함.</p> <p>왜 그러나 하면 한달은, 또 우리로서는 4월달이 여러가지 행사들이 있음. 여러가지 중요한 행사들도 있고 이렇게 되게 되면 핵통제공동위원회를 자주 못할 형편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p> <p>다른 한 측면은 또 여러 분과위원회들이 동시 운영되니까, 이 분과위원회와 또 우리 핵통제위원회 날짜도 조절이 되면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면 한달내라는 것은 빠르단 말임.</p>

우 리 측	북 측
	<p>이래서 우리는 60일 이후 이렇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여간 60일 정도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혼자 생각을 가지고 있음.</p> <p>(핵동위 7차-pp.12~14)</p>

나. 공동발표문제

우 리 측	북 측
<p>우리는 꼭 그것을 30일 이내로 고집하겠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신축성이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먼저 드렸고, 또 지난번 회의때도 대개 그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60일 정도에 가능할 수 있다 하는 우리의 의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합의서에는 아니라도 표시하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겠는가?</p> <p>예를 들어서 어차피 우리가 언제 제1차 핵통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든가, 어디서 한다든가, 언제 물건을 교환한다든가 하는 것을 발표해야 될테니까, 공동발표문을 통해서, 과거의 관례로 볼 때. 그런데에 그렇다는 사실을 포함시켜서 발표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아마 고려하면서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가?</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7차-p.17)</p> <p>문안은 하여튼 어떻든 그것은 논의해야 되고. 권고나 무엇이냐 하는 것도 논의를 해보고, 핵기지나 뭐 또 핵무기를 또 거기에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 하는 것도 논의해봐야 될 문제고.</p> <p>우리는 지금 4조, 우리가 제의했던 4조하고 6조와 관련해서 지금 얘기하고 다른 조항들은 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보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임. 다른 것 자꾸 거기다</p>	<p>우리가 개별적으로 생각은 해봤지만 그것을 공식 합의서에다가 그런 문건을 표기한다면 또다른 이번처럼 시간에 촉박을 받고 해서 다른 무슨 논란이 또 있을 것 같음. 그래서 그런 표기하는 방법은 우리가 삼가하자는 그런 의견임.</p> <p>그렇지만 내 개별적인 생각으로서는 앞으로 핵통제공동위원회가 이렇게 하도록 우리가 권고하는 식으로는 아마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제가 가져보고 있음.</p> <p>합의서에다가 이렇게 딱 넣는다는 것은 좀 고려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해 왔는데, 타결책이 무엇인가?</p> <p>3안으로서 공동보도 형식, 다른 것은 아마도 공동보도는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 가서명하고서는 언제 문안을, 총리들 수표한 것을 교환한다든가, 또 언제 1차 공동위원회 회의를 해야 되겠다든가 공동보도를 어차피 발표해야 되겠으니까. 그러면 공동보도에다가 필요하면 한 조항 넣도록함.</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7차-pp.18~19)</p> <p>그 문장을 만들어 보잔 말이야. 두달 정도 기간에, 우리가 핵통제공동위원회가 1차 회의를 한 다음에, 1차 이후 한두달정도 기간 있지</p>

우 리 측	북 측
<p>불일 필요는 없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7차-p.20)</p> <p>공동보도, 공동발표문에다가 처리하는 방식을, 생각을 하신다는 건 참 어떤 진일보하신 것 같음. 날짜를 어느 정도 찍어가지고, 그건 우리가 환영함.</p> <p>그런데 그 동안에 다 얘기된, 거기다 뭐 판거를 넣게 되면 자꾸만 뭐가 붙음. 살이 자꾸만 붙고 또 이제 비계도 붙고 이러니까 지금 문제는 우선 그 사찰규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제4조. 그거에만 한정을 해서 우선 얘기함.</p> <p>그래서 한번 북측에서 문안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신 것 같으니까 문안을 한번 받아보고 검토를 하기로 함.</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7차-p.21)</p>	<p>않은가? 기간에 우리가 이쪽의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이런 문건을 채택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우리는 비핵화 검증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로서는 핵무기와 핵기지에 대한 것을 비핵화 검증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표기해 넣고, 그래서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이와같은 문건, 어떤 합의문건, 기본합의문건하면 사찰규정에 다 포함됨. 이렇게 잘 문안하나 만들어서 공동보도에다가, 두달정도의 기간에 이와같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문건을 만드는데 우리로서는 아무래도 핵무기와, 핵기지 문제, 또 핵물질과 핵시설문제 이렇게 해서 그것을 검증하는 이런 것을 잘 찍어서 문장을 어떻게 만들자.</p> <p>하나 좀 만들어서 다른 조항에 대한 것을 공동보도를 하면서 그 조항에다가 하나 잘 박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임대표가 신축성있게 응할 수 있고 이런 문제 말씀하셨는데, 나도 그것도 하나의 좋은 타결책이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함.</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7차-pp.19~20)</p> <p>우선 공동보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우선 그것을 합의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 딱 넘어가면 어드래. 그러면 그렇게 하고. 우리는 빨리 해야</p>

우 리 측	북 측
<p>「공동발표문안」 아마 최선생 안을 하나 만들었다는건데 우리측도 하나 만들어 봤음.</p> <p>서문은 같은 내용이에요, 표현이 다르다 뿐이고.</p> <p>『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제5항에 따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대표접촉이 1992년 2월 19일 부터 3월 14일까지 판문점에서 7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쌍방 대표들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문안 정리를 끝내고 이에 가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다』 뭐 같은 내용임.</p> <p>그 다음에 뭐 1, 2, 3, 4 순서가 거기고 같지 않지만, 먼저 우리는 뭘 내세웠는가 하면 『쌍방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3월 일 시 판문점 어디 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이거 하나 들어가 고.</p>	<p>되겠으니 좋은 안을 제기했다고, 공동보도로 처리하면 어떤가?</p> <p>문안은 앞으로 하는거고, 그 4조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는 본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발표문안, 앞으로 공동보도 단계에서 문안 정리를 하도록 함.</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7차-p.21)</p> <p>조항은 넣지 않고 이걸 하나 준비한건데 그 조항은 넣지 않았음. 넣지 않았는데 보시기 바람.</p> <p>『북남핵통제 구성·운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북남대표접촉에 관한 공동보도』 이렇게 하고,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문제를 협의 하기 위한 북남대표접촉이 1992년 2월 19일부터 3월 일까지 차례 진행됐다.</p> <p>쌍방 대표들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따라 북남핵 통제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초안에 대한 진지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문안 정리를 끝내고 이에 가서명하였다.</p> <p>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다.</p> <p>1. 북과 남은 1992년 3월 일과 일 두 차례에 걸쳐 쌍방 총리가 서명한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문본을 판문 점에서 교환한다.</p>

우 리 측	북 측
<p>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쌍방 총리가 3월 일 서명하고 이를 3월 일과 일 두차례에 걸쳐서 판문점에서 교환하기로 하였다』같은 내용이고.</p> <p>그 다음에 『쌍방은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원 명단을 3월 일에 상호 통보하기로 하였다』이것들은 지금 같음.</p> <p>문안만 정리하면 똑같은 내용임.</p> <p>『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문안에 합의함에 있어서 쌍방은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상호 사찰규정 채택문제를 처리하고』 여기 뭐 하나 들어가야 되겠지만,</p> <p>『핵통제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이후 2개월안에 상호사찰을 시작하기로 양해하였다. 이와 함께』 그건 조금 김. 그건 빼도 되겠음.</p> <p>『이와 함께 쌍방은 시범사찰 실시 문제에 대해서도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시급히 다루어 나가기로 하였다』 대개 현재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7차—pp.26~28)</p> <p>지금 귀측이 제시한 안을 보면서 우선 느낀 것이 핵무기와 핵기지를 포함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합의문건」 지금 이것이 우리하고 좀 다른 대목임.</p>	<p>2.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1992년 3월 일 합의서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 <p>3. 북과 남은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의 명단을 1992년 월 일에 발표한다. 혹은 교환한다.</p> <p>4.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는 1992년 3월 월 일 판문점 어디 어디서 개최한다』.</p> <p>그리고 네번째까지 해냈는데, 하면 여기다 다섯번째 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이제 토론한거는 영철대표도 말씀한 것처럼, 예를 들면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는 핵무기, 핵기지를 포함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합의문건을 두달정도의 기간에 채택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권고하였다든가 혹은 노력하기로 하였다든가, 하여간 이런거 하겠는데 문안으로, 물론 귀측의 의견 들어가지고 또 조정작업이 될 것임.</p> <p>내 현재 토론하며 생각난건 그런 생각임. 그것은 여기다 한다면 다섯번째 한다든가 가운데 들어간다는가 관계없이 우리는 그건 예전 안하고 오늘 문안정리 끝날거 타산해서 하나 만들었던거죠, 초안을.</p> <p>그런건데 「공동보도」를 우선 하는걸로 하고 그러면 그 문안을 어떻게 만들겠는가 쌍방이 만들어 가지고 조정작업을 하는게 어떠냐 이런 생각임.</p>

우 리 측	북 측
<p>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핵화공동선언 제4항을 한번 다시 봐주기 바람.</p> <p>4항에서 이렇게 되어 있음.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러 이러한 대상들에 대하여 핵통제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검증하기 위해서 사찰을 실시한다』는 내용임.</p> <p>그런데 『이런 사찰규정에 따라서 사찰을 실시한다』이렇게 되어 있음. 규정하는 방법과 절차가 사찰규정임.</p> <p>우리 이 4항에 충실하게 표현을 하자 하면, 뭐 뜻은 난 같으리라고 봄. 뜻은 같기 때문에 거기에 핵무기와 핵기지를 포함한 이런 합의서 안에 들어가 있는데 뭘 또 여기 쓸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이걸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는 것』 뭐 그것 좋아요, 그런 용어는 여기에 들어가 있고.</p> <p>그래서 무슨 「합의문건을 채택하기 위하여」하는 것보다도 비핵화 공동선언 4항에서 합의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 사찰규정을 만들어서 사찰을 한다』 했으니까 이 표현에 유의하면서 표현하자 하는 것을 먼저 제의함.</p> <p>두번째로, 두안에 어떤 또 중요한 차이가 있는가 하면 귀측이 제시한 것을 그러한 합의문건 또는 무슨 사찰규정을 채택하는데 한 두달</p>	<p>쌍방이 만들어서 조정작업을 하고, 우리가 말하면, 내 개별적인 생각이 우리 이런 것이고 귀측에서 「공동보도」를 넣은 때는 어떤 식으로 넣는게 좋겠는가, 나도 만들어서 이제 조정작업을 하자 그런 생각임.</p> <p>(핵통위 7차—pp.22~23)</p> <p>「공동보도」 다섯번째.</p> <p>『북과 남은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이후 두달 정도의 기간에 핵무기와 핵기지를 포함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합의문건을 채택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래도 되고 「하기로 하였다」해도 되고 이렇게 제기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제기를 하는 것은 우선 문건을 어떤 문건을 만들겠는가?</p> <p>우리는 현재 핵통제위원회의 기본사명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것이 핵통제위원회의 기본사명과 목적임.</p> <p>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핵통제위원회의 기본사명과 목적은 이미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공동선언에 이미 명기돼 있음. 그렇기 때문에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합의 문건, 이것을 합의라고 다룬거는 사찰세칙도 쌍방이 합의하여야 되니까 그 총칭해서 합의문건 했음.</p>

우 리 측	북 측
<p>정도를 생각했고.</p> <p>우리측의 표현에 의하면 사찰규정을 채택하고 사찰을 개시하는 것을 두달로 표현을 했음.</p> <p>이것은 만일 이렇게 우리가 수정해서 대안을 낼 수도 있음.</p> <p>개념만 얘기하겠음. 두달내로 귀측이 얘기하는대로 두달정도로 사찰규정을 만드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하여 귀측이 그 전에 제시했던 좋은 안이 있는데 그후에 『20일 이내에 사찰을 시작한다』 하는 안이 있었잖아요? 규정을 만든 후에 20일 이내.</p> <p>제1차,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게 표현해도 좋겠음.</p> <p>그러니까 더 시간이 길어지는 개념임. 60 더하기 20개념이 됨.</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7차-pp.33~35)</p>	<p>합의문건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조선 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합의문건』, 문건 제목을 요렇게 해놨음.</p> <p>그 다음에 우리 초안에는 두달 정도의 기간에 이렇게 명시한 것은 핵통제위원회가 두달 안팎으로 우리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합의문건을 쌍방이 잘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달정도의 기간에 하자고 우리는 명기해 넣었음.</p> <p>그 다음에 여기다 마지막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넣게 된 것은 우리가 핵통제위원회에서 사찰을 언제부터 하고 무슨 문건을 언제까지 채택하는가 하는 문제는 핵통제위원회의 소관에 관한 문제라고 여러차례 우리가 설명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두달정도 기간에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찍지 않고 우리는 권고하는 형식으로 해서 「노력하기로 하였다」.</p> <p>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기간상에서는 다른, 우리가 지적한 기간상에서의 차질은 다른게 없는 것으로, 단지 우리 대표들이 핵통제위원회에다가 이렇게까지 하라 이런 표현을 피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런 표현으로 쓸 것을 예견했음.</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7차-pp.28~29)</p>

우 리 측	북 측
<p>『남과 북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후 2개월 안에』, 두 달, 그것은 아까 『두달정도의 기간에』 하는 것하고 같은 표현인데, 『2개월 안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거기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는데 필요한』하는 것하고 같은 표현임.</p> <p>『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규정을 채택하고 그 후, 20일 안에 사찰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합의하였다』 그래도 되고, 『합의하였다』라는 말이 맨 처음에 나오니까 그냥 『하기로 하였다』이래도 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수정안으로서 제시함.</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7차-p.56)</p> <p>신축성을 두자는데 대해서는 고려할 수 있는데 맨 처음에 제기했던 것은, 「두달 정도의 기간에」 그랬거든. 또 말씀하신 때는 「60일 정도의 기간에」 이러기도 했던 말이야. 대개 그정도를 얘기한 것 같음. 이것 뒤에 20일안에 사찰을 시작한다 하는 것과 연계시켜서 60일 정도의 기간에 그래도 되겠음. 그후 20일 안에 사찰을 실시한다. 그러면 같은 날짜 형식으로 그냥 60일 정도의 기간, 하고 20일안에, 이렇게 날짜를 표시하면 어떤가?</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7차-pp.58~59)</p>	<p>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이제 우리 것을 다시 이야기 했는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합의 문건을, 사찰 규정을 하지 말고, 합의문건을 이렇게, 이런 문제 좀 합의하도록 함.</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7차-pp.56~57)</p> <p>제1차 회의 이후 2개월 안에 시한부를 미리부터 이야기 하는 것은 핵통제공동위원회가 할 사업인데 이것 딱 짚어주는 것, 두달을 찍건 석달을 찍건, 이것은 우리 대표접촉에서 바람직한게 못 됨.</p> <p>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권고하는 형식. 그래서 두달내에 앞으로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이렇게 통제위원회의 자립성, 통제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기다 말기는, 다른 의도는 없고, 말기는 것으로 되게끔 그래서 가능한 한 두 달, 그럼 두 달 안팎에.</p> <p style="text-align: right;">(핵통위 7차-pp.57~58)</p>

우 리 측	북 측
<p>「가능한 한」은 뭐, 빼지. (핵통위 7차-p.61)</p> <p>『필요한 합의 문건을 채택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합의 문건이 채택된 이후 20일 안에 사찰을 시작하기로』, 『권고』는 아까 날 아간 것이고, 『권고』는 빼고, 『합의하였다』, (핵통위 7차-pp.61~62)</p> <p>「권고하였다」는 것은 맨 처음 최대표가 얘기한대로 그것은 권고였다는 것보다는,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검토하겠지만, 맨 처음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것이 좋음. (핵통위 7차-p.63)</p>	<p>1차 회의 후, 『가능한 한 2개월 정도의 기간에』. 그럼 빼지 뭐 그럼, 그것은 빼자요. 『2개월 정도의 기간에』. 그렇게 하고 『2개월 정도의 기간에』, 이것 미국의 핵무기, 핵기지 문제 이것 미결로 남겨 놔음.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합의문건』 이렇게 하자는 말임.</p> <p>『합의 문건을 채택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합의 문건이 채택된 이후, 20일 안으로 사찰을 시작한다』. 합의문건이, 밑에 것 먼저 정리 하자요. 『합의문건이 채택된 이후』……. (핵통위 7차-pp.61~62)</p> <p>『합의 문건이 채택된 이후, 20일 안으로 사찰을 시작하도록 권고하였다』. 말하자면 우리 대표접촉에서 이렇게 권고하였다 이것임.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까, 우리가 마치도 그렇게 하기로 우리가 다 결정한 것처럼 된다 말임. 핵통제공동위원회가 할 일을 우리가 결정한 것처럼 된다 말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들은 앞으로 구성·운영될 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그렇게 하라』하는 것을 권고 했던 말임.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음. (핵통위 7차-pp.63~64)</p>

우 리 측	북 측
<p>그 다음에는 뭐 표현 문제니까 조금 두고 해도 될거고, 『그 하는데 필요한 합의문건』, 『검증하기에 필요한 문건』 사실은 사찰규정임.</p> <p>(핵통위 7차-p.65)</p> <p>귀측안 가운데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합의문건을 채택하기 위하여』 하는 그것이 인제 아까부터 걸린다 그랬는데.</p> <p>그러면 그동안의 토의경위를 봐서, 이것을 제4조를 처리하기 위한 조항이기 때문에 요것을 이제 우리 김영철 대표 얘기한 것을 우리가 참작을 해가지고 요렇게 만들어 볼까함.</p> <p>『남과 북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 이후』 고까지는 뭐 같은 내용이구요, 「2개월 정도의 기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간안에」, 「정도」라는 말을 넣었으니까 「기간안에」. 그건 우리 수석 어하고 조금 달라서, 「기간안에」 그 분명히 하자 하는 것임. 『기간안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그쪽에서는 「비핵화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이랬는데. 『검증하기 위한 정보교환과 사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안에 『필요한 문건이 채택된 이후 20일 이내에 사찰을 시작하기로 하였다』.</p> <p>(핵통위 7차-pp.82~83)</p>	<p>그럼 『필요한 문건』하든지. 우리 여기다 무슨 그저 「세칙」 이렇게 넣지 않고. 왜 그러나 하면 우리가 주장하던게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6차에 걸쳐서?</p> <p>그렇다면 『합의문건』 안해도 그저 『문건』해도 좋음. 『필요한 문건』, 나는 그저 일반화해 넣자는 것임.</p> <p>(핵통위 7차-p.65)</p> <p>마지막에, 「공동보도」 마지막 조항.</p> <p>『안에』나 『기간』은 그 말이 그 말일 것임.</p> <p>(핵통위 7차-pp.82~83)</p> <p>「정보교환과 사찰」, 그렇게 찍지마. 그거 찍으면 복잡해. 우리는 일관하게 이렇게 놓고 결국 핵통제위원회에서 그거는 토의함.</p> <p>무슨 정보교환과 관련한 문건도 있을거고. 기타 등등 핵통제위에 맡기잔 말임.</p> <p>(핵통위 7차-p.84)</p>

우 리 측	북 측
<p>아니 대표들이 무슨 권고하고 말고가 있는가? (핵통위 7차-p.85)</p> <p>제1차 회의후 2개월 정도의 기간안에, 거기까지는 문제없죠?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필요한」 이러니까, 이건 또 다르게들 해석해가지고 좀.</p> <p>이행합의서 이걸 난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없어진건데, 이 짐을 너무나 무겁게 줄 필요가 없음. 귀측에서 얘기하는 것이 30일 이내에 거기서 할 수 없다, 그 걱정이 돼서 지금 그게 60일로 넘어온 것임.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지금 정하자. 그러니까 요 부분을 좀 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음. (핵통위 7차-p.87)</p>	<p>『검증하는데 필요한 문건을 채택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문건이 채택된 이후 20일 안으로 사찰을 시작하기로 권고하였다』로 함.</p> <p>이렇게 한다면 대표들한테 막중한 책임을 건 그 핵통제공동위원회 위원들한테 우리가 믿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건데 그게 나쁜가? (핵통위 7차-pp.83~85)</p> <p>자기가 짊어질 짐을 지금 적게하자고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음. 그러니까 내 한번 써 봤는데.</p> <p>『북과 남은 북남』, 근데 거 아무래도 이거 우리 양보 하자고. 그 권고하는 거 싫다는데, 『북과 남은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 제1차회의 이후 2개월 정도의 기간안에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문건을 채택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문건이 채택된 이후 20일 안으로 사찰을 시작하기로 하였다』.</p> <p>그렇게 하고 내 여기서 강조할게 뭐인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한다는 거는 이미 여기 다 우리 합의서에 반영된대로 우리 「협약에 있는 핵무기와 핵기지」를 이런 것도 포함되고 핵시설·핵물질이 포함 된다는 것, 이런 걸 다 이미 양해돼 있고 합의서에 있기 때문에 여기 다 「우리 미국 핵기지·핵무기」 뭐 이런 핵기지·핵무기 문제 넣었든것</p>

우 리 측	북 측
<p>그렇게 정리함.</p> <p>(핵통위 7차-p.90)</p>	<p>이걸 그저 뺐다 말임.</p> <p>그건 이미 우리 합의서에 있으니까.</p> <p>(핵통위 7차-pp.87~88)</p> <p>「권고하기로 하였다」, 그거 한 거, 아까 「양해」 뭐 그렇게 표현스 게 있죠? 그것도 괜찮고. 「20일 안으로 핵사찰을 시작하기로 양해하 였다」. 그렇게 해놓으면 「권고」하는 거 하고 절충이 됨. 이렇게 하면, 이게 아주 절충이 돼, 쌍방 의견이.</p> <p>그 문장도 좋음. 『공동으로 노력하여 문건이 채택된 후 20일 안으 로 사찰을 시작하기로 양해하였다.』 무리가 없음.</p> <p>『북과 남은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 제1차회의 이후 2개월 정도의 기 간 안에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문건을 채택하기 위 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문건이 채택된 이후 20일 안으로 사찰을 시 작하기로 양해하였다.』</p> <p>(핵통위 7차-pp.88~90)</p>

부

부

1.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 20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목

2.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이하 「핵통제공동위원회」라 함)를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핵통제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 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그중 1~2명은 현역군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차관 (부부장) 급으로 한다.
- ② 쌍방은 핵통제공동위원회의 구성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 ③ 핵통제공동위원회 수행원은 6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2 조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추진한다.

- ①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문제를 토의한데 따라 부속문건들을 채택·처리하는 문제와 기타 관련 사항

- ②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정보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협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와 핵기지 포함) 교환에 관한 사항
- ③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④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대상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협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와 핵기지 포함) 의 선정, 사찰절차·방법에 관한 사항
- ⑤ 핵사찰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에 관한 사항
- ⑥ 핵사찰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 ⑦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과 사찰활동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제 3 조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2개월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과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번갈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 ③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해 상대측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⑤ 핵통제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 4 조 핵통제공동위원회의 합의사항은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총리가 서명하고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5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 6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3월 18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 측 대표 단 수 석 대 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북

3.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대표접촉에 관한 남북공동발표문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대표접촉이 1991년 12월 26일 부터 31일까지 판문점에서 세차례 진행되었다.

쌍방대표들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하여 핵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조국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려는 공동의 사명감으로부터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초안에 대한 진지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문안정리를 끝내고 이에 가서명하였다.

그리고 이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1992년 2월 19일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발효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이를 위한 사전조치로서 1992년 1월 14일과 1월 21일 두차례에 걸쳐 쌍방 총리가 서명한 공동선언문을 판문점에서 교환한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는데 합의하였다.

1991년 12월 31일, 판문점

4.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대표접촉에 관한 공동발표문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따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대표접촉이 1992년 2월 19일부터 3월 14일까지 7차례 진행되었다.

쌍방 대표들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에 대한 진지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문안정리를 끝내고 이에 가서명하였다. 이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1992년 3월 17일과 3월 19일 두차례에 걸쳐 쌍방 총리가 서명한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판문점에서 교환한다.
2. 남과 북의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원 명단을 1992년 3월 18일에 상호 통보한다.
3.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1992년 3월 19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한다.
4. 남과 북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이후 2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 한반도 비핵화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문건을 채택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문건이 채택된 이후 20일 안으로 사찰을 시작하기로 양해하였다.

1992년 3월 14일 판문점